

# 도시녹지보전법제 정비방안연구

2001 · 12

연구자 : 전재경(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목 차

연구 개요 .....	7
1. 연구의의 .....	7
2. 연구배경 .....	7
3. 연구의 목적·범위·방법 .....	8
제 1 장 현행법제의 구조 .....	11
제 1 절 국토·환경법체계 .....	11
1. 국토법체계 .....	11
2. 환경법체계 .....	12
제 2 절 도시녹지법체계 .....	12
1. 녹지 .....	12
2. 녹지지역 .....	20
3. 유사녹지 .....	21
제 3 절 분석틀 .....	23
1. 체계화 .....	23
2. 도시녹지의 범주 .....	24
제 2 장 녹지실태 .....	27
제 1 절 국토이용실태와 도시녹지현황 .....	27
1. 국토이용실태 .....	27
2. 도시녹지실태 .....	29
제 2 절 녹지관리기법 .....	32
1. 광역녹지축의 조성 .....	32

2.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의 수립 .....	34
3. 단계별 녹지관리 .....	35
4. 녹화사업 .....	37
제 3 장 법제분석 .....	43
제 1 절 체계분석 .....	43
1. 환경법의 한계 .....	43
2. 국토법의 과제 .....	44
제 2 절 연관분석 .....	46
1. 녹지법제 .....	46
2. 전용법제 .....	59
3. 형질변경법제 .....	63
제 3 절 조례분석 .....	71
1. 상위법령과의 관계 .....	72
2. 조례관계 .....	75
제 4 장 외국의 녹지관리 사례 .....	79
제 1 절 일 본 .....	79
1. 토지이용체계 .....	79
2. 환경계획체계 .....	80
3. 도시환경계획 .....	82
4. 녹(綠)의 정책대강과 녹(綠)의 기본계획 .....	82
5. 녹화사업 .....	87
제 2 절 미 국 .....	89
1. 토지이용체계 .....	89

2. 도시녹화 .....	90
제 3 절 영 국 .....	104
1. 토지이용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 .....	104
2. 도시녹화 .....	105
제 4 절 독 일 .....	110
1. 토지이용계획 .....	110
2. 경관보호·자연보호 .....	112
3. 도시녹화 .....	114
제 5 절 브라질 : 꾸리찌바市 .....	121
1. 하드웨어 .....	121
2. 소프트웨어 .....	125
제 6 절 뉴질랜드·싱가포르 .....	129
1. 뉴질랜드 .....	129
2. 싱가포르 .....	131
제 5 장 법제정비방향 .....	133
제 1 절 법체계의 조정 .....	133
1. 녹지보전법(안)의 제정 .....	133
2. 국토법과 환경법의 정비 .....	135
3. 녹지조성법제의 정비 .....	136
4. 조례의 정비 .....	139
제 2 절 녹지체계의 조성 .....	140
1. 녹지(축)의 복원 .....	140
2. 녹지공간의 확대와 보전 .....	141

〈부 록〉

1. 日本國 都市綠地保全法 .....	143
2. 日本國 都市綠地保全法施行令 .....	164
3. 日本國 都市綠地保全法施行規則 .....	171
4. 日本國 首都圈近郊綠地保全法 .....	175
5. 日本國 首都圈近郊綠地保全法施行令 .....	184
6. 日本 金澤市 綠化協定事業取扱要望 .....	190
7. 日本 金澤市 斜面綠地保全條例 .....	194
〈참고문헌〉 .....	199

## 연구개요

### 1. 연구의의

녹지는 산림·공원·하천·조경등 생물서식 공간을 지칭한다. 도시내 녹지는 도시민들의 휴식·여가공간 제공, 도시경관 향상, 자연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도시기후 조절 등을 통하여 도시환경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녹지의 기능을 감안할 때 녹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생태계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비난도 실은 녹지의 감소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에서의 녹지계획은 도시계획의 중핵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녹지보전에 관한 문제는 종래 녹지이외의 관점에서 이미 목적으로 접근되어 왔다. 도로변의 에코브리지(eco-bridge)로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생태(이동)통로는 실제 (소)생태계와 (소)생태계를 잇는 녹지축이다.

최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환경단체 등에서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백두대간’ 보존사업이나 연안보전네트워크(社)등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어도(魚道)는 한반도의 산길(육상생태계)과 물길(수상생태계)을 잇겠다는 야심찬 “광역 녹지축” 복원 계획의 일환이다.

전원구역의 녹지 또는 시가지외 녹지가 자연보전과 야생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도시지역 내지 시가화 구역내의 녹지는 인간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서구의 환경선진 국가들은 종래 속도와 편익 중심의 도시공간을 순환과 여유 중심의 녹지체계로 재편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도시녹지관리는 아직 자투리 공간의 활용 내지 환경미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녹지관련 법제는 자발적·체계적인 도시녹지를 조성·보전하기에는 너무 규제적·비체계적이다.

### 2. 연구배경

자연환경보전법은 정적인 차원에서 ‘소생태계’를 그리고 동적인 차원에서 ‘생태통로’를 규율하고 있다. 강학상 생물서식공간으로서 ‘비오톱’의 중요성

이 자주 강조되고 있다. 또한 공해방지 차원에서 완충녹지가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의 측면에서 경관녹지가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환경보전 내지 토지이용을 통하여 녹지를 보전하려는 간접적 우회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생과 인간의 정주를 위한 녹지를 벗어나 자연과 도시의 일부로서 녹지를 바라보는 가치중립적 녹지개념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녹지축과 녹지공간을 적극적·직접적으로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쉽다. 현행법상 “도시녹지” 또는 “도시내녹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형식적 녹지의 개념과 실질적 녹지의 개념이 충돌한다. 도시계획법상 ‘녹지’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실상 녹지”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들의 “도시내 녹지”를 포괄할 수 있는 녹지체계가 결여되어 있다.

도시지역의 약 4분의3(74.5%)이 녹지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풍요 속에 빈곤을 느낀다. 이는 녹지관련 정보와 통계관리의 불합리성 때문이다. 국토이용관리 당국은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국토이용계획등을 수립할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 그리고 준농림지역을 녹지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 실정법상 녹지지역 개념과 상충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의 보전에 있어 ‘녹지’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다. 즉 자연환경보전법은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47조제2항).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녹지’등급을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한다(제29조제1항). 그러나 녹지의 개념이나 설정 또는 기준에 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 3. 연구의 목적·범위·방법

#### ■ 연구목적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조정(해제) 이후의 대안을 찾는다.
- 전체 도시계획을 통하여 녹지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발적인 녹지보전과 중앙정부의 법체계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생태도시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가늠한다.

■ 연구범위

- 녹지중 도시녹지에 특히 시가화구역내의 녹지에 초점을 맞춘다.
- 행위규제를 넘어 녹지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 내지 인센티브방식을 고찰한다.
- 형식적·법률적 개념의 도시녹지보다 실질적인 도시내 녹지의 확충방법에 주력한다.

■ 연구방법

- 녹지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국법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체계를 유기적으로 접목시킨다.
- 선진 외국의 입법례와 녹지보전시책을 비교분석한다.
- 공학적·기능적 도시계획론보다 사회적·이론적 도시계획론을 원용한다.



## 제 1 장 현행법제의 구조

### 제 1 절 국토·환경법체계

도시녹지는 국토이용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일환으로 규율된다. 국토이용계획의 적용을 받는 도시녹지체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림법 등의 영향을 받는다. 환경보전계획의 적용을 받는 도시녹지체계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및 습지보전법 등의 영향을 받는다.

#### 1. 국토법체계

우리 나라의 국토이용관련 법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으로 구성되는 국토이용의 기본 법령체계 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계획법 등의 특별법들이 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최상위의 법이며,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상위계획기능을 담당하고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직접규제기능을 담당한다<sup>1)</sup>.

특히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이용관리법은 전 국토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가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거나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등의 환경법이 출현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용도지역제로 인하여 환경계획(보전계획)과 국토계획(개발계획)이 대립할 경우 후자가 우선하는 법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

1) 변병설 외, 2001.

## 2. 환경법 체계

현행 환경법들은 연혁적으로 개발법들을 적대시한 나머지 환경친화적인 개발 즉 친환경적 국토관리가 종래 개발당국에 일임되어 있었다. 환경법률들 상호간의 역할분담이 불분명하다. 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축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을 환경“보전법”으로 특화시키고 환경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용법”을 보강하여 실질적인 환경보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점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은 다른 환경법을 지도하고 개발법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법은 기본개념·환경정의·환경기준·환경조사·환경계획·자원배분·관리기구 등에 적용될 것을 상정한다. 기본법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전에 환경계획을 고시하는 등 규범력을 강화하고 환경계획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개발계획을 위법으로 선언하는 등의 계획(환경계획과 개발계획) 상호간의 통합을 지향하여야 한다.

보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자연환경보전법은 감시자지원·생태계보전·종다양성유지·미래세대수요확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법은 환경계획 내지 개발계획상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구역·해역에 적용된다. 자연환경보전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생태계별 환경용량이 계산되고 이를 토대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한편 일정행위 등의 금지와 제한을 넘어 특정지역의 자연생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구현하여야 한다. 녹지에 관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은 간접적인 접근방법을 취한다. 이는 자연환경보전법이 국토 전체를 면(面)으로 재단하지 못하고 점(点)과 선(線)으로 재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제 2 절 도시녹지법체계

### 1. 녹 지

#### 1) 정 의

녹지는 도시공원법상의 개념이다.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는 “녹지”라 함

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

## 2) 구 분

도시공원법은 ‘공해’와 ‘경관’ 개념을 중심으로 녹지를 구분한다. 완충녹지와 경관녹지가 그것이다. ①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도시공원법 제10조제1호/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 ②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도시공원법 제10조제2호/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

## 3) 지 위

녹지는 도시계획법상 도로·철도·광장·공원 등과 함께 ‘도시기반시설’ [제3조제6호: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이 정하는 시설]과 ‘공공시설’ [제3조제15호: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도시계획법시행령 제4조제7호)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에 속한다.

## 4) 녹지의 설치 및 관리

### (1) 설 치

녹지는 당해 녹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및 관리한다(도시공원법 제11조제1항). 녹지의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동조제2항). 시장 또는 군수는 특정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등을 위하여 녹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녹지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인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관리하게 할 수 있다(제12조). 녹지는 도시공원법(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호에 계기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개정 93·12·30〉

〈 사업장 주변의 완충녹지 〉

주로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과 악취등의 제반공해의 차단 및 완화의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풍향과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설치면적의 규모는 당해 공해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규칙 제1항제1호).

-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등 특히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성목시의 수고가 4미터이상일 수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식등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며, 그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등의 지엽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이상일 되도록 할 것
-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등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이상일 되도록 할 것
-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책 또는 인마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이상일 되도록 할 것

〈 교통시설 주변의 완충녹지 〉

주로 철도·고속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과 진동등의 제반공해의 차단 및 완화와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규칙 제1항제2호).

- 가. 당해 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명암순응·시선유도·지표제공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등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이상인 되도록 할 것
-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당해 원인시설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할 것
-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구 및 건축제한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 경 관 녹 지 〉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녹지는 당해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동항제3호).

- 가. 주로 도시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이내로 할 것
-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당해 ★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이내로 할 것
-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녹지경계·설치면제 〉

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 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 제 1 장 현행법제의 구조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제9조제2항).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제9조제3항).〈신설 99·4·2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9조제4항)〈개정 93·6·19, 93·12·30〉 :

- 원인시설이 도로·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등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동항제1호)
-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구 및 건축제한지구로 지정된 철도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중 방음벽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동항제2호)
-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동항제3호)

### (2) 판 리

#### 〈 점 용 허 가 〉

녹지 안에서 녹지의 구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녹지관리청"이라 한다)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2조의2제1항제1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동항제2문). 녹지관리청은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에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동조제2항).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조제3항).

## 〈 원 상 회 복 〉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원상회복 규정이 준용된다. 즉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제9조분문). 다만,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단서).

## 〈 매 수 청 구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도시계획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垓)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녹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관리청을 말한다)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도시계획법 제40조제1항).

## 〈 비매수토지에 대한 건축등 〉

녹지관리청이 도시계획법(제40조제1항)상의 매수청구가 있는 지목이 '대'(垓)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5항). 이 경우 허가대상 및 점용기준에 관한 도시공원법의 규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2·1·1 시행).

## 5) 비용부담

(1) 설치관리비 : 녹지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녹지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제13조제1항). 특정원인(제12조)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의 부담으로 한다(제4항).

(2) 점용료 : 녹지관리청은 이 법(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15조제1항본문).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항단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녹지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15조제2항).

(3) 부담금등의 징수와 귀속 : 녹지에 관한 점용료·사용료 기타 녹지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제17조본문).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제18조).

## 6) 감 독

(1)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 녹지관리청은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또는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20조).

(2)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 녹지관리청은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에 관한 사업의 계속시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도시공원에 관한 사업 이외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또는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처분(제20조)을 할 수 있다(제21조).

(3) 청문 및 관리청에 대한 감독처분 : 녹지관리청은 이 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야 한다(제23조의2). 건설교통부장관은 녹지관리청이 행한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녹지관리청이 행한 처분을 취소·변경 또는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22조).

### 7) 특례 및 손실보상등

(1) 문화재등에 대한 특례 : 건설교통부장관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명승·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지역안에 녹지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23조제1항). 이 협의를 거쳐 결정된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동조제2항).

(2) 손실보상 : 이 법(제21조·제22조 및 제25조)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으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녹지관리청이 행한 처분으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녹지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제24조제1항).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녹지관리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제3항).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녹지관리청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4항). 재결이 있을 때에는 협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5항).

(3)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 녹지안에 있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당해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도시계획으로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제28조).

(4) 다른 국가사업에 대한 특례 : 이 법에 의하여 녹지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녹지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이가 성립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29조).

(5) 조례에의 위임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30조).

## 2. 녹지지역

### 1) 정 의

녹지지역은 도시계획법상의 개념이다.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

### 2) 구 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을 도시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도시계획법 제32조).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녹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4호) : ①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제4호 가목) ②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제4호 나목) ③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제4호 다목)

### 3) 지 위

녹지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제6조)의 적용을 받는다. 즉 국토이용계획의 내용(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및 용도지역의 세분등(국토이용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를 감안할 경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내에서 설정된다. 아울러 녹지지역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제30조)의 적용을 받는다. 즉 시나 읍의 관할구역내에서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외·읍외 구역에서 녹지지역이 설정된다. 한편 특별시 이외의 녹지지역은 농림지역·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함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다(농지법 제31조).

#### 4) 결정효과

녹지지역 안에서는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제5호). 녹지지역안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즉 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도시계획법 제49조제2항). 또한 녹지지역 안에서는 건축제한등의 행위제한을 받는다(도시계획법 제53조). 녹지지역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건폐율(20%이하)이 적용된다(도시계획법 제54조제1항). 그리고 녹지지역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율(200%이하)이 적용된다(도시계획법 제55조제1항).

### 3. 유사녹지

#### 1) 공 원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상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은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상의 경관녹지(제10조제2호)에 가깝다. 또한 현행 국립공원내 자연보존지구(제16조)들의 대부분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서의 실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도시공원법상의 도시공원(제2조)은 공원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녹지가 공원의 주축을 이룬다. 특히 자연경관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자연공원(제3조제3호)이나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제3조제2호)은 그 실질이나 법적지위가 녹지와 흡사하다.

#### 2) 생태계보전지역·보전임지

자연환경보전법은 녹지에 관한 적극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실

질적으로 녹지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제18조) 또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제23조)은 도시계획법(제29조제4호)상의 '보전녹지지역' 또는 도시공원법(제10조제2호)상의 '경관녹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자연환경보전법(제29조)상의 '완충지역'은 도시공원법(제10조제1호)상의 '완충녹지'와 실질을 같이 한다.

녹지는 대부분 나무(林地)와 풀(草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림의 대부분은 녹지에 해당한다. 특히 산림법상 보전임지(제16조제1항)중 '생산임지'는 도시계획법상의 '생산녹지지역'(제29조제4호)과 같은 구조를 취한다. 또한 보전녹지지역과 생태계보전지역등을 포함하는 '공익임지'는 도시공원법(제10조제2호)상의 경관녹지나 도시계획법(제29조제4호)상의 보전녹지지역과 유사하다.

### 3) 생물서식공간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상의 "소생태계"는 강학상 생물서식공간 내지 비오톱으로 논의된다. "비오톱"(biotope)이란 그리스어원의 bios(생명)과 topos(장소)가 합쳐진 독일어로서 분석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Schaefer(1992)에 의하면, 비오톱은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특정생물군집의 서식지로 정의되며 Leser(1991)에 의하면, 식물과 동물로 구성된 생물군집의 3차원 공간 서식지로 정의된다. 그리고 Dahl(1908)에 의하면, 식물과 동물이 살 수 있는 모든 경계지워진 공간으로 정의된다.(이인성 외,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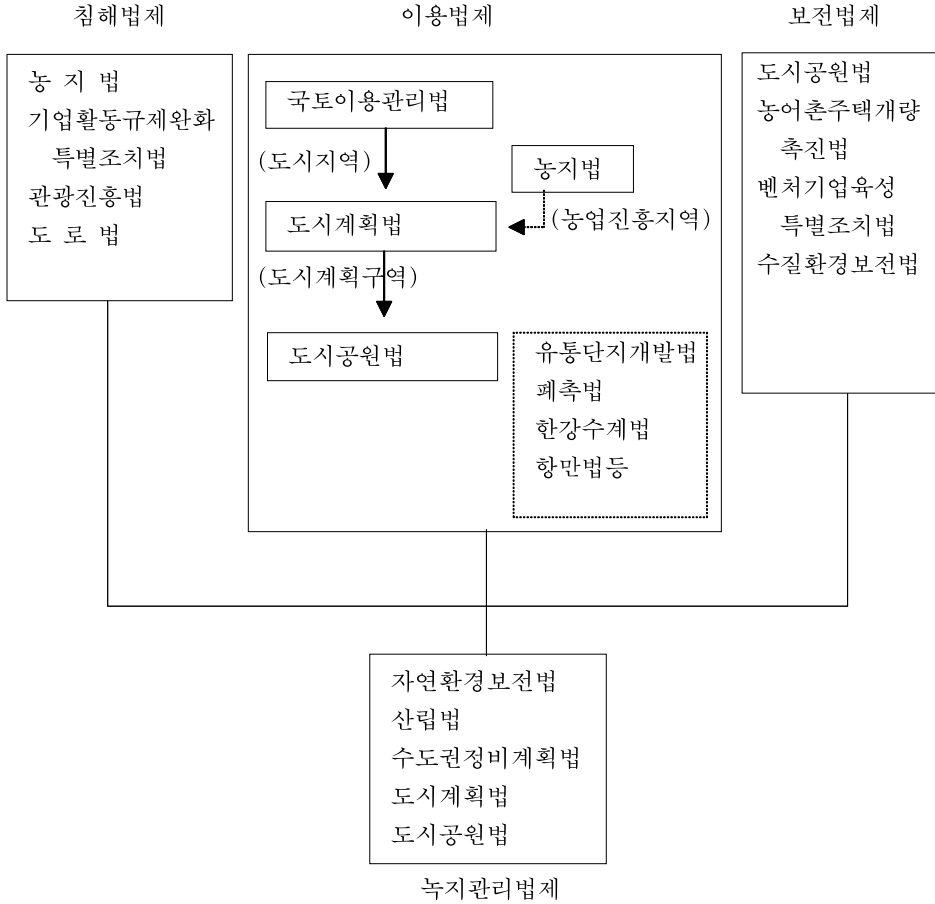
각각의 비오톱은 고유한 환경속성을 가지지만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다. 즉 특별한 가치가 있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서식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오톱유형 평가와 개별 비오톱 평가는 도시에서 생물다양성의 유지와 도시공간의 다양성과 도시의 정체성 확보 측면에서 다양한 기준을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식생상태에 국한된 생태환경평가보다 진일보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 제 3 절 분석틀

### 1. 체 계 화

도시녹지 법제의 분석틀을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관련법제들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화가 필요하다. 녹지와 관련된 법령들은 하나의 법령내에 녹지를 침해하는 장치와 더불어 다른 한편 녹지를 보전하거나 이용하는 장치도 갖춘 복합적 구조를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법의 성격에 따라 녹지를 보전하거나 이용하는 등 어느 한 쪽의 경향을 보인다. 도시녹지와 관련된 법령들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해당 법제를 재구성한다면 도시녹지법제는 크게 보전법제, 이용법제, 침해법제 및 관리법제로 구분할 수 있다. (1) 침해법제는 농지법,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및 도로법 등과 같이 녹지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지닌 법령체계를 말한다. (2) 보전법제는 도시공원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및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과 같이 녹지를 조성하거나 침해를 금지함으로써 녹지를 보전하는 기능을 지닌 법령체계를 말한다. (3) 이용법제는 침해기능과 보전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법령체계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이용법제는 도시지역을 규율하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구역을 규율하는 도시계획법(일부) 그리고 도시녹지를 규율하는 도시공원법(일부)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이용법제는 농지법, 유통단지개발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廢促法], 한강수계법 또는 향만법과 같이 한편으로는 자연적인 도시녹지를 감소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인공적인 도시녹지를 조성하거나 보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중적 구조의 법령체계를 말한다. (4) 관리법제는 도시녹지의 결정, 유지 또는 복원 등과 관련된 절차법적 성격의 법령체계를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일부),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일부) 및 도시공원법(일부) 등이 이에 속한다.

제 1 장 현행법제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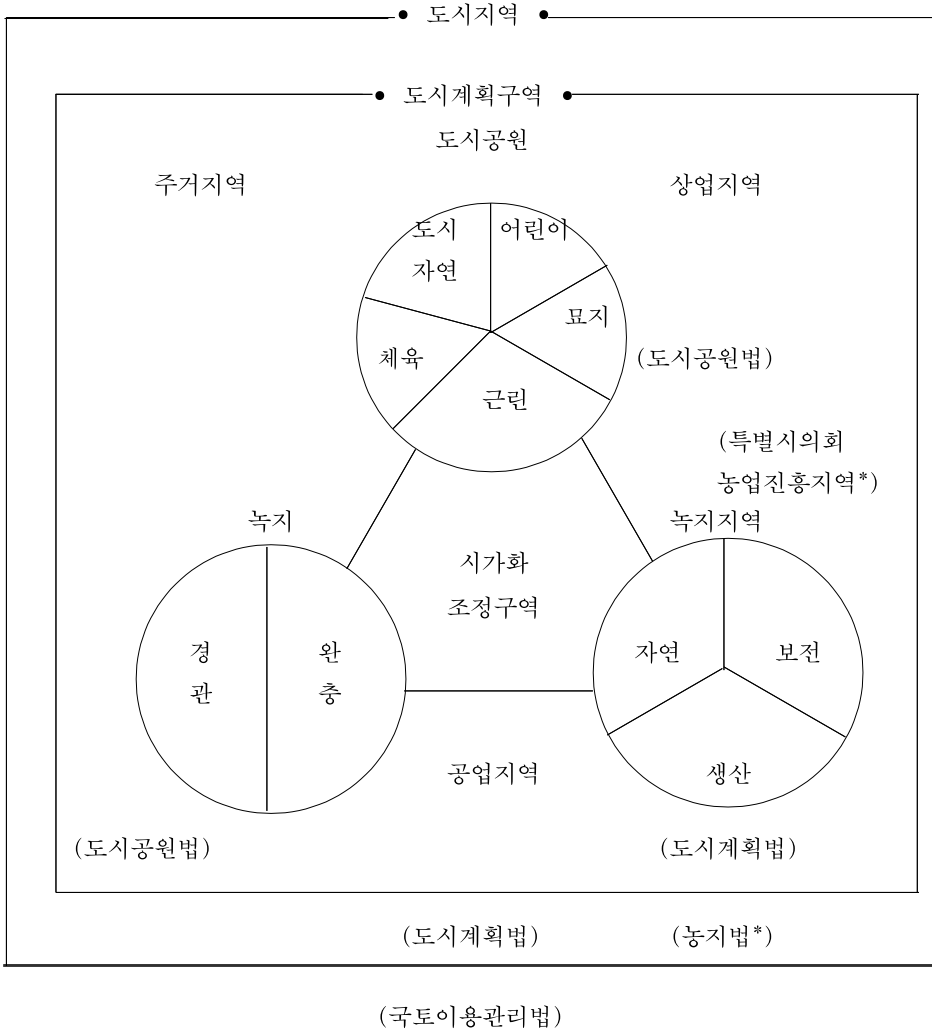
2. 도시녹지의 범주

실정법(도시공원법 제2조)이 도시녹지에 관한 개념을 도시계획법(제24조)을 원용하여 형식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녹지의 범주를 설정하기가 쉽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실정법상 “도시녹지”란 존재하지 아니한다. 도시공원법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한 “녹지”(경관녹지와 완충녹지)를 도시녹지로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구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녹지이다. 그런가 하면 지적법시행령(제6조)은 지목의 구분에서 ‘녹지

로 지정된 토지를 “공원”으로 분류한다. 또한 도시공원중 도시자연공원과 묘지등은 녹지로서의 실질을 보유하고 있다. 관할 행정청들은 통계관행상 (공공)녹지와 도시공원을 합산한 면적을 도시녹지면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녹지와 녹지지역 그리고 도시공원은 녹지로서의 실질을 공유하지만 유기적 연관성이 결여된 법적 근거와 목적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3개의 녹지체계가 서로 분리되어 계획되고 운영된다. 이렇게 서로 분리된 녹지체계는 (광역)녹지축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녹지지역 외에서 또는 시가화된 도시지역내에서 실질적 녹지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즉 도시공원법에 근거하는 도시공원과 녹지는 서로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관리에 어려움이 없지만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녹지지역은 도시공원법상의 도시공원 및 녹지와 중첩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도 도시녹지가 설치될 수 있다. 녹지화가 추진되어야 할 지역은 오히려 녹지지역 이외의 곳들이다.

제 1 장 현행법제의 구조





## 제 2 장 녹지실태

### 제 1 절 국토이용실태와 도시녹지현황

#### 1. 국토이용실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지정현황과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토이용현황을 개관할 수 있다.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의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지역이 약 51,299km<sup>2</sup>로서 전체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48.6%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넓고, 다음으로 준농림지역 24.5%, 도시지역 14.6%, 자연환경보전지역 11.3%, 그리고 준도시지역이 1.0% 순으로 지정되어 있다.(변병설외, 2001)

〈표〉 국토이용현황

구 분	면적(km <sup>2</sup> )	비율(%)
합 계	105,603	100.0
도 시 지 역	15,374	14.6
준 도 시 지 역	1,104	1.0
준 농 림 지 역	25,890	24.5
농 림 지 역	51,299	48.6
자연환경보전지역	11,936	11.3

자료: 건설교통부(1999)

1998년 현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지가 65,274km<sup>2</sup>로 전체면적의 65.7%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넓게 지정되어 있다. 농경지는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적 용지인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는 전국토의 5.3%로 지정되어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구의 도시권 유입이 가속화되고 경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농경지와 산림지가 점차 도시적 용지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sup>2)</sup>.

2) 변병설외, 2001.

〈표〉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km<sup>2</sup>, %)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합계	99,394(100)	99,268(100)	99,313(100)	99,373(100)	99,408(100)
농경지	22,025(22.1)	21,971(22.0)	21,925(22.1)	21,851(22.0)	21,748(21.9)
산림지	65,665(66.1)	65,506(65.8)	65,396(65.8)	65,325(65.7)	65,274(65.7)
대지	2,076(2.1)	2,124(2.1)	2,177(2.2)	2,218(2.2)	2,265(2.3)
공장용지	346(0.3)	386(0.4)	413(0.4)	444(0.5)	468(0.5)
공공용지	2,280(2.3)	2,339(2.3)	2,397(2.4)	2,455(2.5)	2,526(2.5)
하천	2,861(2.9)	2,840(2.9)	2,822(2.8)	2,819(2.8)	2,810(2.8)
기타	4,141(4.2)	4,102(4.5)	4,183(4.3)	4,261(4.3)	4,317(4.3)

자료: 건설교통부(1999)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구역 내 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지정현황

구분	지정목적	지정면적
주거지역	전 용: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1,839km <sup>2</sup> (12.0%)
	일 반: 일상의 주거기능 보호	
	준주거: 주거기능 위주, 상업기능 보완	
상업지역	중 심: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	236km <sup>2</sup> (1.5%)
	일 반: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근 린: 근린지역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유통: 도시안 및 지역간 유통기능 증진	
공업지역	전 용: 주로 중화학 및 공해성 공업 수용	698km <sup>2</sup> (4.6%)
	일 반: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준공업: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보완	
녹지지역	보 전: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립 및 녹지보전	11,8403km <sup>2</sup> (74.5%)
	생 산: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유보	
	자 연: 녹지공간 보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	

## 2. 도시녹지실태

통계 관행은 도시녹지를 넓은 의미로 파악한다. 즉 도시녹지는 실정법상 좁은 의미의 도시녹지(지역)과 도시공원을 포함한다. 좁은 의미의 도시녹지(공공녹지)는 절대면적이 작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에 비하여서도 대단히 협소하다.

〈표〉 도시녹지면적

(단위 : 천㎡)

구 분	공공녹지			도시공원		도시녹지면적	
	①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②도시공원 (5개시)	③일상권도 시공원(3개)	1) ①+②	2) ①+③
전국(79개시)	58,959	53,814	5,145	763,623	289,262	822,582	348,221
특·광역시	20,845	18,686	2,159	315,507	118,299	336,353	139,540
○ 서울	20,74	1,954	120	105,157	35,466	107,231	37,540
○ 부산	5,804	5,272	532	52,773	26,402	58,577	32,206
○ 대구	4,081	3,104	977	47,659	11,579	51,734	15,657
○ 인천	2,182	2,056	126	33,461	10,300	35,643	12,482
○ 광주	2,232	2,092	140	14,227	13,456	16,459	15,688
○ 대전	2,005	1,941	64	38,050	9,372	40,056	11,377
○ 울산	2,467	2,267	200	24,186	11,727	26,653	14,194
경기(23개시)	10,529	93,306	11,984	146,232	55,378	156,761	65,907
강원(7개시)	4,117	3,996	121	29,663	11,025	33,780	15,142
충북(3개시)	1,571	1,533	38	30,957	8,338	32,528	9,909
충남(6개시)	1,870	1,786	84	20,488	6,051	22,358	7,921
전북(6개시)	4,247	4,201	46	33,523	17,772	37,770	22,019
전남(6개시)	3,853	3,108	745	33,001	11,974	36,854	15,827
경북(10개시)	6,089	5,990	99	41,611	21,980	47,700	28,069
경남(10개시)	5,393	4,789	604	101,776	32,881	107,169	38,274
제주(2개시)	445	394	51	10,865	5,564	1,1310	6,009
※ 1) ①+② 는 공공녹지와 전체 도시공원을 합한 면적 2) ①+③ 은 공공녹지와 일상권도시공원을 합한 면적 ※ 자료 : 행정자치부(1998 한국도시연감) / 건설교통부(1997 도시계획현황)							

도시내의 산지(산림면적)들이 도시공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도시계획면적 대비 도시녹지 내지 도시공원의 면적은 넓은 편이다. 이러한 통계치는 도시녹지에 대한 정책과 법의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도시계획면적과 도시공원면적의 비교

(단위 : 천㎡)

구 분	도시계획 구 역	①도 시 공 원						②일상권 도시공원
		계	도시자연 공원	근 린 공 원	어 린이 공 원	묘 지 공 원	체 육 공 원	
전국(79개시)	10,275,620	763,623	449,986	267,346	92,543	25,989	7,759	289,262
특·광역시(7개)	3,906,240	315,507	184,804	107,816	5,255	12,404	5,228	118,299
○ 서울	605,950	105,157	66,701	33,739	1,697	2,990	30	35,466
○ 부산	750,910	52,773	25,008	23,719	469	1,363	2,214	26,402
○ 대구	693,010	47,653	36,077	8,977	669	-	1,930	11,576
○ 인천	393,670	33,461	19,797	9,275	981	3,364	44	10,300
○ 광주	478,370	14,227	-	12,937	519	771	-	13,456
○ 대전	469,740	38,050	25,452	8,869	404	3,226	99	9,372
○ 울산	514,590	24,186	11,769	10,300	516	960	911	11,727
경기(23개시)	1,747,420	146,232	86,536	51,481	2,845	4,318	1,052	55,378
강원(7개시)	685,010	29,663	18,638	10,308	549	-	168	11,025
충북(3개시)	379,110	30,957	22,619	6,379	345	1,614	-	8,338
충남(6개시)	202,720	20,488	14,438	5,552	499	-	-	6,051
전북(6개시)	554,710	33,523	14,966	16,698	462	786	612	17,772
전남(6개시)	517,050	33,001	18,920	10,940	460	2,107	574	11,974
경북(10개시)	879,510	41,611	65,281	21,003	977	1,370	-	21,982
경남(10개시)	1,169,410	101,776	65,505	31,880	876	3,390	125	32,881
제주( 2개시)	234,440	10,865	5,301	5,289	275	-	-	5,564

※ 주 : 1) 도시계획 구역 면적은 해면부와 타 시·도 행정구역면적은 제외  
 2) 해면부 : 부산 188,810, 인천 329,356, 울산 83,750

※자료 : 행정자치부('98 한국도시현황), 건설교통부('97 도시계획현황) 일부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들은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과 겹쳐 있다.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은 도시와 그 바깥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일한 지역에 두 개의 공원이 중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표〉 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에 포함된 면적

(단위 : 천㎡)

구 분	도시자연공원	자연공원포함면적	포함비율(%)	자연공원명
서 울	66,701	39,700	59.5	북한산
대 구	36,077	30,593	84.8	팔공산,비슬산
대 전	25,452	6,800	26.7	계룡산

지방자치단체중 도시녹지의 확충이 가장 절실한 서울시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산림 및 하천을 도시녹지에 포함하고 있고 2001년 12월 현재 녹지지역의 총면적은 전체 도시계획구역의 42%(253.34km<sup>2</sup>)에 이른다. 녹지지역의 대부분(249.72km<sup>2</sup>)(98.57%)은 녹지공간 보전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연녹지이며,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생산녹지는 3.55km<sup>2</sup>(1.4%)에 불과하고 보전녹지는 0.07km<sup>2</sup>(0.03%)으로 극히 적은 면적이다.<sup>3)</sup> 녹지지역은 사실상 장래의 개발에 대한 유보지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전용되어 1985년부터 1991년 사이에 50.5km<sup>2</sup>가 감소되었다. 서울시의 녹지지역 중에 공유수면 등을 제외하면 남아있는 녹지의 양이 적으므로 도시 내에서 귀중한 자연환경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녹지의 보전은 시급하다.

서울시가 녹지행정의 주된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산림과 개발제한구역이다. 산림은 대부분 도시계획상 공원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산림면적은 157.62km<sup>2</sup>으로서 행정구역의 2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 1인당 산림면적은 15.2m<sup>2</sup>이다. 산림은 사유림이 49.5%, 국공유림이 50.5%를 차지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1년 지정한 것으로 서울에서의 면적은 166.82km<sup>2</sup>로서 임야 108.87km<sup>2</sup>, 농경지 23.20km<sup>2</sup> 및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http://env.seoul.go.kr/nature/main\\_03.html](http://env.seoul.go.kr/nature/main_03.html)

## 제 2 절 녹지관리기법

### 1. 광역녹지축의 조성

#### 1) 녹 지 축

도시계획, 환경보전종합계획, 도시경관계획 등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녹지축의 개념은 주로 녹지가 부족한 시가화구역 내에서 공원, 산림, 호소, 농지, 나대지, 공공시설의 외부녹지 등 일련의 면(面)적인 생물서식공간을 가로수림대, 하천, 생태연결로, 시설녹지 등 선(線)적인 녹지로 이어서 도시 전체에 걸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도시계획 등에서의 녹지축은 주로 공원녹지에 관한 부문별 계획에서만 언급되었고, 전체 도시 공간구조를 구상할 때에는 개발축 위주로 열개를 구성함으로써 도시공간구조 형성의 중요 인자로 인식되지 못했다. 특히 도시지역내 시가화구역에서의 녹지축은 기존에 있던 녹지를 최소한 서로 연결시켜 준다는 개념이었으므로 녹지축에 대한 접근이 주로 도시 내부에 한정됨으로 인해 녹지가 도시 외부로 확장됨으로써 더 큰 자연생태계의 한 부분이 되고 동시에 도시의 내·외부를 연결함으로써 한 도시의 공간구조를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인자로 인식하지 못했다<sup>4)</sup>.

녹지축은 시민에게 여가공간의 장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생물서식의 기반이 되어 도시생태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며 주변에 보전되는 역사·문화자원과도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전체 도시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녹지축은 부존하는 자연자원을 유지·보전할 뿐만 아니라 생물서식기반이 취약한 시가화된 지역 즉, 개발지역에도 새로운 생물서식공간을 창출, 복원, 정비하여 생태 연결망을 도시 전체로 확대한다. 나아가서는 주변의 생태계와도 연계되어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산재한 문화자원 보전지역과도 연계되어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4) 변병설 외, 2001.

## 2) 광역녹지축

녹지축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기존의 도시녹지축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역녹지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광역녹지축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녹지가 광역적인 공간상에 연결되거나 분산되어 존재하면서 그 내부 및 주변으로 산림 및 농업생태계 유지, 하천 및 호소생태계의 유지 등을 통해 동식물서식처, 수질, 대기질 등의 자연환경을 지속시키는 구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동시에 광역녹지축은 여가공간 및 경관자원 제공, 도시구조 형성, 문화자원 보전 등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발휘하는 일단의 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존재하거나 일정 기준 이하의 녹지는 광역녹지축 설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광역녹지축은 경관적 형상으로 볼 때, 녹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녹지거점을 근간으로 녹지의 분포량이 높은 지점들을 축선상으로 연결하여 선형을 형성한다<sup>5)</sup>.

광역녹지축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도시녹지축과 광역녹지축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개 도시를 대상으로 설정된 단위도시 녹지축과 수십개의 도시에 걸치는 광역녹지축은 여러 면에서 그 본질을 달리 한다. 도시녹지축은 시가지 외곽의 일부 산지 및 농지, 시가지 내부의 공원이나 소규모 녹지가 축 구성의 근간을 이루지만, 광역녹지축은 산맥에 위치한 임야, 대규모 하천, 넓게 펼쳐진 농지, 개간된 초지 등이 골격을 형성한다. 그리고 도시녹지축은 점적(点的)으로 존재하는 소규모 녹지공간도 녹지축의 한 요소로 기능하지만 광역녹지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녹지공간만을 대상으로 축을 형성하게 된다.

광역녹지축에서는 자연스럽게 도시내부 소규모 생물서식기반에 대한 고려는 적어지게 되고, 전체 국토공간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한 도시에 존재하는 녹지축을 인근 도시들의 그것과 기능적인 대립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생태적으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광역녹지축의 핵심은 그 축선상에 놓인 산림생태계의 지속적인 보전을 도모하는데 있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내부 녹지 및 산지주변 농지와 연결되어 도시와

---

5) 이상문, 2001.

촌락에 존재하는 녹지의 생물서식기능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 2.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의 수립

### 1) 토지이용도의 제고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공원녹지 공간의 부족, 녹지의 단절, 극심한 지형의 변화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공원 및 녹지공간은 환경친화적 도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의 개발사업을 살펴보면 실효성 있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개발축과 교통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 지향적으로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유보지역이나 녹지지역을 형식상 연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공간구조 설정이 개발 지향적이기보다는 보전축과 녹지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의 도시개발에 있어 공간구조의 설정이 생활권 또는 경제권·사회권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환경관리권을 새로운 계획 단위로 하여 환경보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sup>6)</sup>.

### 2) 생태적 가치의 증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근린공원이 도로 또는 택지로 둘러 쌓여 생물의 활동공간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절토사면으로 주변부를 형성시켰을 경우, 생태서식공간의 확장이나 천이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오히려 공간의 퇴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충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등의 설계에 있어서 근린공원을 그 시종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완충공간이 생물서식공간 또는 동물의 이동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다층구조로서 교목과 관목의 적절한 혼합 식재가 필요하다. 또한 소형곤충류 등의 서식을 위해 자연친화형 하천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sup>7)</sup>.

---

6) 변병설 외, 2001.

7) 변병설 외, 2001.



### 3) 경관관리

전통적 경관관리의 목표는 시각자원으로서 경관의 심미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경관관리의 목표는 일상 생활공간과 그 주변에서 시지각적으로 체험되는 경관의 형태미학적 다양성과 일관성의 유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관의 형태미학적 다양성은 시각적인 복잡함의 적정성이고 경관의 형태미학적 일관성은 시각적 체험의 통일성, 조화성, 고유성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도시계획·설계, 조경계획·설계 등 공간계획 분야에서의 접근방식으로 경관의 기본단위를 시각적 단위로 인식하여 접근한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시대의 경관관리의 목표는 환경자원으로서 경관의 생태적 가치 증진에 두어야 한다.

경관의 다양성은 생물종의 다양성을, 경관의 고유성은 생물서식처의 고유한 특징을 보전하고 생태계의 군집간의 조화성·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최근의 경관생태학이나 환경계획에서의 접근방식으로 경관의 기본단위를 생태계단위 혹은 생물지역(Bio-region)단위로 인식한다. 국토경관 관리는 전통적인 형태미학적 원리에 기초한 시각자원의 보전차원 뿐만 아니라 경관생태학적 원리에 입각한 생태자원의 보전이라는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

### 3. 단계별 녹지관리

광역녹지축의 설정과 녹지관리계획 수립의 과정은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광역녹지를 현상적으로 분류하는 단계로서 녹지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통한 중요녹지와 확대녹지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제2단계는 녹지거점을 선정하는 단계로서 중요 녹지가 분포하는 지역을 녹지거점으로 선정한다. 제3단계에서는 광역녹지축을 설정함으로써 녹지거점을 기준으로 중요녹지와 확대녹지의 분포에 기초한 주녹지축과 부녹지축의 설정한다. 제4단계는 녹지관리권역을 구분하는 것으로 현상적 녹지분포와 주녹지축을 기준으로 녹지창출·연결중점 권역과 녹지보존·유지중점 권역으로 대별된다. 마지막 제5단계는 녹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녹지창출·연결중점 권역을 대상으로 생태연결로, 동물이동통로 설치계획 및 녹

지축이 단절된 시가지에서의 녹지창출계획 수립하는 것이다<sup>8)</sup>.

### 1) 녹지거점과 녹지관리권역의 설정

녹지거점과 녹지관리권역의 설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앞서 제시한 녹지에 대한 환경성 평가 결과, 중요녹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면(面)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녹지거점으로 선정한다. 녹지거점은 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생태계이자 주녹지축을 설정하는데 있어 거점으로 기능한다. 광역녹지축의 보전·관리를 위한 녹지관리권역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녹지관리를 위해 계획의 편의상 녹지의 창출·연결에 중점을 두는 권역과 녹지의 보존·유지에 중점을 두는 권역으로 구분한다. 녹지창출·연결 중점권역에는 단절된 녹지의 망을 형성하기 위해 부녹지축을 설정하고 녹지의 연결 방안 강구한다. 녹지보존·유지 중점권역에는 부녹지축을 설정하지 않고 기존 녹지의 관리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녹지창출·연결 중점권역은 주로 시가지, 도로 등이 개발되어 기존 녹지의 감소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훼손·단절된 녹지의 연결·복원·창출 등이 요구된다.

### 2) 비오톱지도

비오톱 지도는 도시계획시설입지 심의 등 각종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검토자료로의 활용가치가 크며,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 보전지역의 설정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비오톱 지도를 활용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준에서 산림이나 공원, 대규모 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적인 녹지축의 설정뿐만 아니라 단지계획 수준에서 가로망과 하천, 개인 주택정원, 소규모 공공녹지 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녹지 네트워크의 구축 대안제시도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비오톱 지도는 개별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전체공간과의 관계에서 고려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비오톱 지도는 생태계에 대한 진단이 포함되어

---

8) 이상문, 2001.

있으므로 물리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훼손된 도시생태계에 대한 복원대책 등을 병행하여 계획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가 통합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 4. 녹화사업

##### 1) 녹색목표치의 설정

녹색현황 결과를 기본으로, 보전과 녹화를 포함, 시가화 구역을 중심으로 한, 장래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21세기를 겨냥한 녹색 마스터 플랜<sup>9)</sup>이 전국 각 도시계획구역마다 책정되었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 「녹지율」의 지표가 우선되었지만 「녹피지율(綠被地率)」이나 「녹시역율(綠視域率)」에 대해서도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0)</sup>.

##### ① 녹 지 율

「녹색 마스터 플랜」을 책정함에 있어서 시가화구역 및 그 주변부를 포함, 약 30%의 시설녹지와 지역제 녹지를 영속적으로 담보하고자 하였다. 일본 각 도시의 1인당 시설녹지면적은 구미에 비교했을 때 극단적으로 적다고 말하지만 시가화 구역면적을 보아도 그 사정은 명백해진다. 즉, 나라(奈良)시 약 13%, 오사카(大阪)부 이케다(池田)시 약 10%, 실란(室蘭)시 약 7%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도시는 1-3%로, 구미의 선진도시와 비교했을 때 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것도 일상생활권과의 관련성도 경시되어 도시공원 등의 녹지가 배치되어 왔으므로 시민들이 공원을 염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녹색 마스터 플랜」책정에 따른 녹지정비는 30%라는 수치뿐만이 아니라 시민생활과 밀착된 계통적 배치를 목표로 하는 것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위정자의 결의와 재정적인 보증이 커다란 과제이다. 또한 일반 녹지에는 수림지, 초지, 농경지, 나지(裸地)와 수면을 포함한다.

9) 이인성 외, 2000.

10) 丸田賴一, 1998 : 104-107.

② 녹피지율

녹피지율(綠被地率)은 녹피율(綠被率)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구획면적에 대한 이용 또는 존재기능을 갖는 수목, 지피(地被)등 식물에 의하여 입혀진 비율이다. 이 때에도 수면을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나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종류의 조사는 녹화의 필요성이 특히 요구되는 대도시권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동경도내의 최근 조사에서 내리마(練馬)구 약 25%, 세다가야(世田谷)구 약 23%, 스기나미(杉並)구 약 19% 등으로 나왔는데 23구 모두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심리적으로 주민이 녹피지의 양에 만족하는 것이 40-50%이므로 주민 대부분이 녹음에 대한 욕구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녹피지에서 보여지는 녹음의 평면양을 금후 어떻게 다른 지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가가 과제로 남는다. 또한 감소일로에 있는 녹피지율이 현재이상으로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행정 및 주민의 노력이 다같이 요구됨은 말할 것도 없다.

③ 녹시역율

일반적으로 저목이나 지피류 등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식물은 멀리서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고목(高木)은 멀리서부터 볼 수 있다. 통근, 통학, 시장보기 등에 쓰여지는 생활도로로부터의 거리와, 볼 수 있는 대상물과의 관계로부터 경관(景觀)을 근경(近景), 중경(中景), 원경(遠景)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식물이나 녹지를 보전 내지는 창출시켜 나갈 수 있다. 물론 사면이나 구릉이 시가지에 존재하는 경우, 키가 큰 식물만이 아니라 지형조건에 의하여 멀리서부터의 가시(可視)대상이 된다.

그런데 개인정원, 생활타리등 비교적 높이가 낮은 나무들은 평탄(平坦)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시(遠視)는 불가능하지만 근경(近景)의 정비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목(低木)의 경우 식물의 종명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30m정도로 그 정도를 근경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멀리 떨어지면 나무로서 확인할 수는 있지만 종명의 판정은

어려워진다. 그러나 건축물 등 멧없는 건축물에 의하여 훼손된 시가지환경에 있어서 양감있는 나무들을 심음으로써 보다 편안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범위는 30m에서 250m로 이것이 중경(中景)의 나무이다. 대상물은 중고목(中高木)으로 구릉지 등의 나무들인데 특히 고목(高木)의 경우는 가로보다도 높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형 등의 특징으로부터 수종의 판별도 가능하다. 또한 구릉지나 사면의 나무도 자연지이건 택지이건 멀리서부터 조망할 수 있고 중경(中景)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250m이상 떨어져서도 볼 수 있는 거리로 원경(遠景)의 대상물이 되며 보전이나 창출의 가치도 높다.

그러나 정원, 대지 등 민유지의 수목, 수림, 수목, 구릉지나 사면의 나무는 택지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일로에 있어, 신사나 사원경내의 진수(鎭守)의 숲, 도시공원의 녹음에 의한 중경(中景)의 의존이 높아지는 등 도시 녹음에 대한 위기는 여기에도 있다. 즉 바꿔 말하자면, 우리주변의 나무들이 어느 틈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대 일본의 역사를 보아도, 그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경(中景)을 중시한 집락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지역 중심성 내지는 랜드마크로서 수경(修景)효과를 중시하였다. 고목식재가 항상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의 시가지에서는 이러한 사상도 없어지고 난립하는 건축물이나 고압선의 첩탑에게 그 기능을 양보하고 있다. 따라서 고가철도나 도로에서 보는 경치도 무미 건조한 것이 되고 말았다.

앞으로 이상과 같은 배경을 인식하면 일상생활의 「녹색 랜드마크」내지는 「녹색 심볼」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경을 구성하는 녹음(고목 내지는 사면녹피지)을 중심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250m 권역 가로수 등이 많은 경우는 구역을 녹시역으로 하고, 일정구역 면적 중에서 녹시역을 충족시키는 율을 녹시역율(綠視域率)로 한 것이다.

이렇게 250m권의 녹음의 핵이나 가로수 등에 의한 나무의 선을 보전하고 창출해 가는 것은 앞으로의 도시계획, 도시환경계획이나 도시경관계획에서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이상과 같은 경관적 시점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도시의 어린이교육이나 시민의 레크레이션에도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다.

녹음은 흙, 나무, 곤충류 등 소동물류의 자연의 보고이며, 체위의 향상, 정서교육, 환경교육 등에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는 일일이 셀 수가 없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조사에서도 어릴 때의 추억은 나무 등 자연과의 접촉에 의한 것이 많다고 하는데 다음 대를 이어 갈 어린이를 위해서도 보다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녹색공간을 기간공원 등 공공녹지의 계통적 배치에 의하여 정비한다든지, 민유지의 수림지를 확보하는 등 녹지역율의 확보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2) 나무의 지역제

이상 3종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나무의 현재량을 기본으로 시가화구역의 zoning을 하고 각 지역마다의 운용방책을 입안해야만 한다<sup>11)</sup>.

### ① 보전지역

민유지를 중심으로 종래부터 수림지 등의 나무가 상당량 있고 앞으로도 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조치,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체제, 국가 지방체 등으로부터의 보전에 대한 재정적 원조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만으로는 택지의 세분화 및 맨션화 등이 진행되어 수목이나 수림을 포함한 녹피지의 존속은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매입에 의한 공유지화를 추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자치체가 별채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세나 상속세의 감면을 취하는 등 새로운 시책이 필요하다.

### ② 녹화유도지역

현존하는 녹지를 보전함과 동시에 시가화의 진행에 대응시켜 녹음을 창출해 나가는 지역이다. 보전지역과 녹화추진지역과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쌍방의 시책이 필요한데 시가화구역내 녹지가 잔존하는 곳에 시가화를 추진할 때에는 녹화협정, 지구계획 등에 의한 규제와 유도를 하고

---

11) 丸田頼一, 1998 : 108-109.

민유지의 녹화를 계획적으로 확보해 가는 일이나 계통적으로 도시공원, 녹도(綠道)를 정비하는 등의 일이 필요하다.

### ③ 녹화추진지역

녹피지율이 특히 낮고 금후의 녹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으로 도시공원의 정비, 가로녹화, 학교녹화 등 공공에 의한 녹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의식을 고양시켜 녹화모델지역 등을 지정하고 공민이 일체가 된 녹화작전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에 대해서는 현황의 수목이나 수림이 적으므로 전지역에 대해서 별채 금지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러한 녹화 지역제의 지정에 있어서는 주민활동에 의한 녹화추진, 녹음보전을 입안하여, 예를 들면 자치회단위로 조사를 행하고 10년, 20년 후의 장래목표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책의 종류, 운용방법 등 검토단계에 있어서는 녹화 담당 부서 뿐 만이 아니라 도시계획, 건축, 토목, 환경, 교육, 농림, 기획, 재정 등 관련 제 분야의 담당자를 포함하여 전체 행정廳에 의한 종합적 체제하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제 3 장 법제분석

### 제 1 절 체계분석

#### 1. 환경법의 한계

##### 1) 환경계획의 범위와 규범력

환경정책기본법은 계획법으로서 재편되면서 환경계획의 범위를 “보전·이용·개발”에까지 확장시키는 대신 ‘보전’으로 국한시켰고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갖추지 못하였다. 1990년의 환경정책기본법은 1963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우선성[제5조:“이 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계획에 우선하며 그의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을 수정하지 못하였고 1982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의 우월성[제13조의2:“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도 수정하지 못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계획을 환경“보전”계획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건설 또는 이용 계획들이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보전” 계획을 제약하여도 이를 시정할 명분을 찾지 못하였다. 한편 환경부문 계획을 보면 오염원의 공간적 분포와 영향 예측, 그리고 그것의 관리계획이 없으며 보전 위주의 녹지계획으로 인하여 녹지의 다차원적 기능 중에서 시민여가 장소로서의 기능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오염매체 및 환경시설 중심으로 접근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도시 비오톱의 보존·창출·복원·정비에 대한 계획내용이 없다.

##### 2) 생태계보전지역의 곤란성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은 녹지보전지역과 자연생태계보호구역, 특정야생동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등의 보호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보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제한 및 위반조치사항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녹지보전지역의 지정만으로는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내용 중에는 예외규정을 두어 자연환경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즉, 군사상 목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어 행하는 행위의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어 개발과 자연환경보존의 논리가 상호 조화되기 보다는 개발이익에만 치중하는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 2. 국토법의 과제

### 1) 종합적 공간계획의 미비

국토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comprehensive) 공간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이다. 국토이용관련 계획들이 종합적인 공간계획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및 시설, 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공간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이 그 축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 전국을 계획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이 있다. 그러나 국토건설종합계획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고, 국토이용계획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이므로 국토건설종합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 모두 종합적인 공간계획으로서의 기능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도시계획은 토지이용 및 시설, 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공간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계획의 대상범위가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공간계획 중에서 국토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sup>12)</sup>.

### 2)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의 이원화

국토이용계획은 명목적으로는 전국 단위의 계획으로서 전국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5개의 용도

---

12) 박현주 외, 2000.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 대한 관리는 도시계획에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계획에 의해 각각 분리되어 관리되는 이원화된 구조이다.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법정 도시계획에 의해 토지이용의 용도 및 밀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규제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기본적인 용도분류만이 이루어질 뿐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공간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토지이용의 용도 및 밀도 등에 관한 실질적인 토지이용규제 사항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3) 도시공간구조 설정에서의 문제점

관행적으로 기본구상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주로 도시성장축 또는 교통축을 포함하는 개발축의 설정, 생활권 및 도시세력권 구분,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심 및 부도심의 설정, 개발적지 분석에 의한 토지이용구상 등이다. 이러한 개발지향적 도시공간구조 형성을 목표로 하는 기본구상에서 해당 도시의 환경성을 도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녹지축 또는 보전축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축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능이 단지 개발지대에서 제외된 유보지역이나 녹지지역을 형식상 연결하여 도식적으로 보여 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 결과 개발축에 대한 보전축의 우선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환경계획의 단위로서 환경관리권에 대한 접근이 미흡하다. 그리고 도시전체의 녹지에 대한 환경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대보전을 요하는 녹지와 이용이 가능한 녹지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녹지의 생태적 기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원 순환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이며 교통발생량을 줄이는 공간구조 구상에 대한 접근이 소홀하다.

## 제 2 절 연관분석

### 1. 녹지법제

도시녹지에 관한 규정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분류·분석할 것인가에 관하여 원용할 만한 전범을 찾기 어렵다. 실정법상의 목적에 따라 이러한 기준을 정립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다. 도시녹지를 중심으로 제정·운용되는 법률들이 회소할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도시녹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들이 그 목적과 달리 운용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도시녹지의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도 같은 이유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녹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들은 66건에 이르며 총조문수는 모두 160개에 이르기 때문에 도시녹지의 법적 분석들이 나름대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도시녹지와 관련된 법규들이 수행하는 기능에 주목하여 도시녹지와 관련된 현행법규정들을 보전, 이용, 관리 및 절차 규정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 1) 보전규정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규정들은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다. 도시녹지 보전에 관한 현행법제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먼저 관할 시장·군수에게 녹지를 설치 및 관리할 책무를 부여하고(도시공원법 제11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0조)·장사등에관한법률(제15조)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시설물의 설치 또는 건축등을 금지하며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에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제이다. 이러한 허가제를 침해할 경우에는 도시공원법(제32조:벌칙/제33조:벌칙) 또는 경범죄처벌법(제1조제20호)등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한편, 경륜경정법시행령(제4조)·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3조)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에 부수하는 '계획'을 통하여 녹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방식이 있고 벤처기업육성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녹지지역에 대한 특례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녹지를 소극적으로 조성하려는 방식이 있다. 또한 수도법시행령(제9조제1항)의 경우처럼 원래의 개발행위가 종료된 이후 해당 토지를 녹지로 '환원'시키는 방식도 있다.

특성 분류	법령명	조항	내용
보 전 · 금 지 · 조 성	경륜·경정법시행령	제4조	○경주장 설치허가의 신청시 녹지·환경조성계획서의 제출
	경범죄처벌법	제1조 : 제20호	○녹지의 자연훼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	○공장설립유도지역의 지정(법 제6조 제1항)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녹지대등의 확보가 가능할 것
	농어촌주거환경개량촉진법	제3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제1항)에는 녹지공간의 보전계획을 포함한 마을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포함(제2항)
		제5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제1항)에는 녹지공간의 설치 및 마을조경계획등 마을정비에 관한 사항 포함(제3항)
	도시공원법	제11조 제12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	○녹지지역에는 건축금지등에 대한 벤처기업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배제
	수도법시행령	제 9 조 제1항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물·주택등의 이진후 종래 토지의 녹지 환원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	○녹지지역의 지정에 관한 관계기관의 협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장사(葬事)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5조	○녹지지역에서의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묘지등의 설치제한

## 2) 이용규정

도시녹지 관련법규중 빈도수가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이용관련 규정들이다. 녹지이용 법규들은 일단 큰 범주에서 녹지의 개발을 허용하고 그 한도 내에서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법규들은 적극적 침해와 소극적 보전이 교차하는 형태 또는 개발후 보전

제 3 장 법제분석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용관련 법규들은 외관상 도시녹지를 보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녹지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의 범주내에서 녹지를 조성하거나 보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연상태의 녹지를 감소시키면서 인공적인 녹지를 조성하는 이중적 구조를 취한다.

특성 분류	법령명	조항	내용
이 용 · 교 차 · 개 발 후 보 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 제10호 의2	○모법상의 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의 도시계획사업의 제한(개발제한 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시행령상의 허용: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토지를 녹지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가능(동법시행령 제14조제10호의2)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 '녹지 및 환 경조성계획서' 첨부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	○연구단지관리계획(제1항)에는 녹지 및 연구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제2항)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제5조	○토지용도 구분에 녹지구역을 포함(제1항)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제8조	○녹지구역내 건축행위 규제(별표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3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녹지 기타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 나 녹지를 보존하게 조치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4조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녹지 기타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 존의 녹지를 보존하게 조치가가능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19조	○건축물을 이전한 장소에 대한 녹지조 성계획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	○녹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 는" 원칙과 예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9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있 어 일정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 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타의 조치(휴게시설설치)를 강구	

특성 분류	법령명	조항	내용
이 용 · 교 차 · 개 발 후 보 전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9조	○토지형질변경의 범위: 녹지조성에 도 움이 되는 시설을 위한 특정지역종합 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廢)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제6호)
		제10조	○대지조성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녹지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설치 하는 탑 또는 기념비에 대하여서는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 법(廢)시행령(제16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대지조성을 허용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 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용도제한: 폐촉법상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관에 의하여 매수된 토지는 녹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 (제5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 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용도변경제한: 한강수계 보호구역에 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된 토 지등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한강수계 법 제24조)의 합의를 거친 경우가 아닌 한 매도하거나 임야 및 녹지외 의 용도로 변경불가(제3항)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15조 의3	○공공시설의 설치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안에서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에게 도로·공원·녹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조 치 가능  ○공사시행인가: 화물터미널 안의 공공 시설중 '녹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 공사계획의 변경에 관한 인가 필 요(제2항제4호)

3) 개발규정

녹지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개발법제는 의외로 빈도수가 낮다. 개발을 통하여 녹지를 침해하는 법제는 관공진흥법(제15조제5항)·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 권역에서의 행위 기준 또는 녹지확보기준을 완화시킨다”든지 농지법시행령(제39조) 및 도로법(제25조의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행위에 필요한 절차의 생략하거나 인가·허가를 의제하는 등의 방식을 취한다.

특성 분류	법령명	조항	내용
개발 .. 침해 · 의제	관광진흥법	제15조 제5항	○용도지역안의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제45조제1항: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0·1·28삭제)의 적용을 배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 조치법	제21조	○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농지법시행령	제31조	○농어촌진흥지역의 지정대상에 녹지지역 포함(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제39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제1항)이 있을 때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 가능(제2항)
도로법	제25조 의2	○도로구역의 고시 때 도시 녹지에 대한 인·허가 의제	

## 4) 관리규정

도시녹지 법령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도시녹지를 관리하는 규정들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법규들은 녹지를 조성하거나 침해하는 실체적 관계를 규율하지 아니하고 녹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계획 또는 결정된 녹지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나 절차 등을 규율한다. 도시공원법은 녹지관리법규의 근간을 이룬다. 도시공원법은 녹지의 점용허가(제12조의2)와 비용부담(제13조) 및 조례에의 위임(제30조)등의 장치를 통하여 녹지를 관리한다.

녹지관리 법규들중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은 도시계획법(제3조)·동법시행령(제2조 내지 제4조)·도시재개발법시행령(제2조)·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4조의4)·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자연공원법시행령(제15조)·지방자치법(제9조)·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4조)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념정의 또는 적용대상에 녹지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2조제20호),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2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0조) 및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제8조)등은 녹지에서의 시설기준 또는 행위기준을 규정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법령들은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녹지관리법제이다. 또한 녹지관리법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1조제7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산림기본법(제18조)처럼 녹지를 포함하는 계획의 수립을 강제하거나 권유함으로써 계획을 통한 녹지관리를 도모하는 유형이 있고 도시개발법시행규칙(제8조)·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31조)·지방세법시행령(제194조의14)처럼 녹지에 관한 회계관리 규정들도 존재한다.



제 3 장 법제분석

특성 분류	법령명	조항	내용
관 리 · 계 획 · 기 준 (1)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건축법	제7조 제80조 제86조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 도시공원 및 녹지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녹지지역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 할제한 ○완충녹지내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33조	○자연환경보전지역(제2조)에 녹지 포함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33 조)시 '용도별구역' 세분에 '녹지구역' 포함 가능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시행령	제58조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녹지 의 조성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협조요청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내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 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 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7항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에 취락지구의 경우, 주거·상업·공업·녹지등의 용도구획계획 포함
		제25조 제1항	○녹지에 대하여서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법 제 21조의3제2항)의 면적을 축소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 에관한규칙	제 2 조 제20호	○"환경시설대"라 함은 도로연변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도로바깥쪽에 설치되 는 녹지대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지칭
	농지법	제32조	○녹지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을 승인 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 규칙	제2조	○"환경시설대"라 함은 도로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길어깨의 바깥쪽 으로 설치하 녹지대등의 시설이 설치 된 지역을 지칭(제35호)

특성 분류	법령명	조항	내용
관리 · 계획 · 기준 (2)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7조  제67조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지역안 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제5조제1항제9호)의 환경보전계획에는 환경성검토결과를 포함(제2항)</li> <li>○ 국고에서의 보조 또는 융자(법 제58조)의 범위에 공원·녹지의 조성비전부를 포함</li> <li>○ 기초조사의 내용(영 제9조제1항제6호)에 녹지분포현황을 포함</li> </ul>
관리 · 계획 · 기준 (3)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7조 제13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제54조 제55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녹지): 도시기반시설중 도시공간시설</li> <li>○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공원 및 녹지사항)</li> <li>○ 광역도시계획의 내용(녹지관리체계)</li> <li>○ 도시지역결정의 의제(녹지지역안의 농지)</li> <li>○ 지역의 지정(녹지지역)</li> <li>○ 지구의 지정(녹지지역안의 취약지구)</li> <li>○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li> <li>○ 녹지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li> <li>○ 녹지지역안에 1월이상 물건 쌓기의 허가</li> <li>○ 조례로 녹지지역에 개발행위허가 제한</li> <li>○ 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20% 이하)</li> <li>○ 녹지지역에서의 용적율(200% 이하)</li> <li>○ 도시기반시설(녹지)</li> <li>○ 광역시설(녹지)</li> <li>○ 공공시설(녹지)</li> <li>○ 도시계획의 결정</li> <li>○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li> <li>○ 녹지지역의 세분(보전·생산·자연)</li> <li>○ 지구의 지정(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li> </ul>



특성 분류	법령명	조항	내용
관리 · 계획 · 기준 (5)	도시공원법	제1조 제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33조 제5조	○목적(녹지의 보전) ○녹지의 세분(완충녹지·경관녹지) ○녹지의 점용허가(대통령령에 위임) ○녹지의 비용부담(지방자치단체) ○점용료의 징수(금액·징수방법을 조례로 규정) ○원인자부담금(녹지외공사로 인한 녹지사업비) ○녹지에 관한 부담금·수익의 귀속(관할 지자체)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녹지관리청)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녹지관리청) ○관리청에 대한 감독처분(감독관청) ○문화재등에 대한 특례(문화재청장과 협의) ○(녹지관련)허가취소시 청문(녹지관리청)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감독처분등으로 인한 손실에 지자체가 보상 ○녹지안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국가사업에 관한 녹지관리청과의 협의를 허가로 의제 ○조례에의 위임(녹지의 설치 및 관리) ○벌칙(징역·벌금) ○녹지점용허가의 신청(녹지관리청)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②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법(제12조의2제1항)상 녹지점용허가의 기준: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제 3 장 법제분석

특성 분류	법령명	조항	내용
관 리 · 계 획 · 기 준 (6)	도시공원법시행령	제8조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공작물)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9조	○특정원인으로 인한 녹지의 설치
		제10조	○특정원인으로 인한 녹지의 설치·관리비
		제13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의 절차(녹지관리청)
		제14조	○공익상 필요한 처분의 절차(녹지관리청)
		제3조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면적의 기준(주민1인당 3제곱미터이상)
		제4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녹지공간계통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9조	○녹지의 설치기준(녹지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설치)	
제11조	○특정원인으로 인한 녹지설치 허가신청구비서류		
관 리 · 계 획 · 기 준 (7)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2조	○공공용시설(녹지)
	산림기본법	제47조	○주요 공공시설(녹지)
		제18조	○도시지역 녹지의 관리시책(국가·지방자치단체)
		제11조	○사유림지원국(국장)의 업무분장(녹지의 조성·관리)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6조	○사유림지원국내 사유림지원과(과장)의 업무분장(녹지의 조성·관리)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4조의4	○공공시설의 범위(녹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비용(녹지시설의 건설비)의 보조(국가·지자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1조	○공공시설(녹지·공원)의 설치비용의 부담(사업시행자)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녹지등)	

특성 분류	법령명	조항	내용
관리 .. 계획 · 기준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 제30조	○공공시설의 범위(녹지) ○비용(녹지의 건설비)의 보조 또는 용자(국가·지자체) ○공공시설(공원·녹지)의 설치비용의 부담(사업시행자)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5조	○집단지설지구의 세분(공공시설지· 상업시설지·숙박시설지·녹지·기 타시설지·유보지)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4조	○녹지·기타 시설지 또는 유보지 안 에서의 공원사업의 시행기준(대지면 적/건폐율/높이)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47조	○녹지보전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별도관리지역의 생태·자연도의 작성 ○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 진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가능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 제45조 제48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녹지등급) ○녹지지역·풍치지구의 설정에 관한 관계기관의 협조 ○생태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지역 계수 차등화)
관리 .. 계획 · 기준 (8)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 득세등의 감면의 기준으로 공공시설 용지(녹지)의 면적을 비교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 의14  제194 조의15	○과세기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 토지”의 범위를 결정할 때 녹지지역 에 대하여서는 “용도지역별 적용배 율”을 높게 책정(7배)하여 녹지조성 을 유도(제2항) ○분리과세대상토지(1): 녹지지역안에 있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전· 답·과수원)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 지(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 호)에서 제외(제1항제2호)

제 3 장 법제분석

특성 분류	법령명	조항	내용
관리 · 계획 · 기준 (8)	지방세법시행령	제 194 조의15	○분리과세대상토지(2) : 도시계획구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제194조의15제1항제3호)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목장용지)는 분리과세(제1항제3호)
	지방자치법	제219조  제9조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일지라도 자경농민의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와 임야(농지조성용)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예시(제2항):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제4호)중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또는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목)
관리 · 계획 · 기준 (9)	지적법시행령	제6조	○지목의 구분 : 공원(제18호) - 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공원
	지적법시행규칙  철도보호에관한규정	제23조 제6조	○녹지에 대한 지적측량신청절차등 ○안전조치의 범위: 철도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당해 시설의 주위에 녹지·조경 기타 차단시설의 설치(제4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 기준등에관한규칙	제8조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모: ①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의 토지 ②보전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

특성 분류	법령명	조항	내용
관 리 · 계 획 · 기 준 (9)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 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	○환경보존조치: 형질변경 허가조건으로 녹지의 조성 기타 완충지대를 설치하게 조치가능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 조치법시행령	제18조	○녹지지역에서의 물건의 적치를 제한
		제19조	○녹지지역안에서 기존의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계획법시행령(제5조제4항제1호) 에 의한 토지분할을 허가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6조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 : 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제3호)	
		제11조	○공익시설의 범위에 “녹지”를 포함
		제14조	○방지사업의 종류: 녹지의 형성, 공공용 녹지의 설치와 그 관리사업(제1항제2호)

## 2. 전용법제

농지 및 산지중 보전임지는 국토이용계획등에서 관행상 녹지로 분류되고 있다. 농지 및 보전임지의 감소는 녹지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감소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적 장치는 “전용”이다. 현행법제는 토목, 건설 및 시설 등의 분야에서 농지와 보전임지의 전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한다. 종래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던 준농림지 내지 준도시지역내의 농지와 보전임지등의 전용을 쉽게 허용하는 법적장치들은 난개발의 첩명일 뿐만 아니라 녹지를 훼손하는 “지하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전용을 규정하는 실체법이외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지방세법시행령등 농지전용 또는 보전임지전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는 약간의 절차법령들이 존재한다.

### 1) 토목부문

토목부문에서 농지전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선도적인 법률로서는 농지



제 3 장 법제분석

법(제36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을 들 수 있다.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다. 골재채취법과 광업법, 초지법 및 하천법 등도 농지전용을 가능하게 한다. 보전임지의 전용과 관련된 법률로서는 하천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이 있다.

※	농지전용관련법령	보전임지전용관련법령
<b>도 목</b>	골재채취법 광업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소하천정비법 초지법 택지개발촉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 건설부문

건설부문에서 농지전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장치는 주로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과 관련된 법령들이다.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철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및 항만법 등이 같은 부류에 속한다. 개발과 관련 하여 농지전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로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주택건설촉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화물유통촉진법 등이 있다. 한편, 건축법·도로법·도시개발법 및 도시재개발법 등은 보전임지의 전용을 규율한다.

※	농지전용관련법령	보전임지전용관련법령
건설	건축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도로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도시개발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	
	한입시조치법	
	도시철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항공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3) 시설부문

시설부문에서 각종 특례법과 특별법들은 농지전용을 주도하는 법적장치들이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및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교통체계효율화법과 같이 전형적인 개발이 아닌 문예·관광·체육 등의 분야에서 농지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 관광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이 같은 예에 속한다. 한편 보전임지의 전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청소년기본법이 있다.

※	농지전용관련법령	보전임지전용관련법령
시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과학관육성법 관광진흥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수산물품질관리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하수도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청소년기본법

※	농지전용관련법령	보전임지전용관련법령
관리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지방세법시행령

### 3. 형질변경법제

각종 개발행위에서 녹지의 침해 또는 농지 및 보전임지의 전용 등이 실질적인 토목·건설 사업등으로 구체화되기 위하여서는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의미한다(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현행법제는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모두 88건의 법령에 총207개의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사업절차상(도시)녹지의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형질변경은 녹지침해를 허용하는 법적장치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녹지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 1) 변경촉진

형질변경을 허용하거나 허용을 의제하는 법령들은 형질변경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및 화물유통촉진법등 사회간접자본시설건설과 관련된 법령들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또한 개발법의 영역에 속하는 법령들 즉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연안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연공원법, 접경지역지원법, 제주도개발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등은 형질변경을 허가하거나 허가를 의제하는 근거규정들을

담고 있다.

특성 분류	법령명	조항	내용
변경 촉진 · 허용 · 의제 (1)	高速鐵道建設促進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公共鐵道建設促進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8조 제6조 부칙 제3조	○행위의 제한 ○행위의 제한 ○인가·허가등의 의제 ○과밀억제지역안의 공장에 관한 경과 조치
	公有水面埋立法 과학관육성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農地法	부칙 제5조 제16조 제8조 제5조 제6조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 의 공장의 신설·증설에 관한 특례 ○인가·허가등의 의제 ○인가·허가등의 의제 ○산지가공산업의 육성등 ○인가·허가등의 의제
	都市計畫法 都市計畫法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7조 제64조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 ○개발행위의 허가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실시계획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都市計畫法 都市計畫法	제25조 제45조 제47조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都市計畫法 都市計畫法	제48조 제65조 제10조 제11조	○개발행위허가시 의견청취등의 절차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준공검사
	都市公園法 都市公園法	제8조 제12조 의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녹지의 점용허가
	都市公園法 都市公園法	제6조 제7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점용허가의 기준
	都市公園法 都市公園法	제8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등

특성 분류	법령명	조항	내용
변경 촉진 · 허용 · 의제 (2)	사방사업법시행규칙 山林法	제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55조의3 제75조 제87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조사행위등의 통지 ○보전임지의 전용 ○전용허가의 취소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청문 ○국유림의 대부등 ○토석의 매각 ○입목벌채등의 허가과 신고 ○채석허가등 ○복구비용의 예치등
	산림법시행령  산림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88조의3  제91조  제94조제3항	○산림의 보전·이용방향(임업생산용지: 산업용지로 형질변경이 되기 전까지 산림의 경제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제3항) ○산림법(제90조제1항 단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의하여 신고에 의하여 산림을 형질변경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등에서의 형질변경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형질변경할 수 있는 경우
변경 촉진 · 허용 · 의제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토지의 형질변경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제5조제2항	○행위등의 제한의 예외(형질변경)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 행령	제6조	○허가사항(토지의 형질변경)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제8조	○협의대상행위(형질변경)
	연안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7조제12항	○인·허가등의 의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거나 산림을 전용 또는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용부담금 감면가능

제 3 장 법제분석

특성 분류	법령명	조항	내용
변경 추진 .. 허용 · 의제 (3)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6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	○인·허가등의 의제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5조	○형질변경행위의 허가
	자연공원법	제23조	○형질변경행위의 허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	○인·허가등의 의제
	접경지역지원법	부칙 제2항	○이 법 시행전의 형질변경 허가에 대하여 추급효 부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0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인·허가등의 의제 ○절대보전지역내 형질변경허가 ○상대보전지역내 형질변경허가 ○중산간보전지역안에서의 형질변경허가(조례사항)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인·허가등의 의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인·허가등의 의제
변경 추진 .. 허용 · 의제 (4)	청소년기본법	제38조	○인·허가등의 의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이 법 시행전의 형질변경 허가에 대하여 추급효 부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6조	○형질변경의 허가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1조	○건축면적의 토지형질변경면적에 대한 비율등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2	○입지안에서의 형질변경허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1조의4	○인·허가등의 의제 ○입지안에서의 형질변경허가
	하천법	제32조 제33조 제40조	○인·허가등의 의제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법시행령	제52조	○하천예정지등에서의 행위허가
	하천법시행규칙	제22조	○형질변경의 경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특성 분류	법령명	조항	내용
변경 추진 .. 허용 · 의제 (4)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항공법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 제18조 제26조 제37조	○인·허가등의 의제 ○인·허가등의 의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인·허가등의 의제

## 2) 변경억제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하거나 종래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법적장치들은 형질변경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수도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철도법 및 초지법 등은 행위제한 또는 직접적인 금지명령등을 통하여 형질변경을 억제한다. 산림법시행규칙은 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제92조·제98조의3)을 규정하고 있다.

특성 분류	법령명	조항	내용
변경 억제 .. 금지 · 회복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 관한法律 獨島등島嶼地域の生態系保 全에관한特別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산림법시행령	제6조 제8조 제30조 제24조 제2항 제60조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행위제한 ○훈련대상물자등의 원상보존 ○산림의 형질변경제한지역은 공익임지 를 전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 외(제2항제2호) ○산림청장은 현지 산림조합, 학교 또 는 임업기능인등에 대하여 형질변경 의 예방을 명령 또는 위탁



특성 분류	법령명	조항	내용
변경 역 제 .. 금지 · 회 복	산림법시행령	제91조 의4	○산림형질변경의 제한(군사시설·공용· 공공용 제외)
	산림법시행규칙	제92조	○불법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
	수도법	제98조 의3	○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
	수도법시행령	제5조 제9조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형질변경)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준 ○형질변경 행위제한
	습지보전법	제13조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의 형질변경행 위의 금지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제45조	○공공용 자연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조례로 형질변경을 제한
	철도법	제76조	○철도로선인접지역안의 건축·굴착공 사등의 제한
초지법	제21조 의2	○초지안에서의 행위(형질변경) 제한	

### 3) 관리절차

형질변경을 허용하는 실체법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형질변경을 둘러싼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숫자도 많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관리하는 절차법규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형질변경의 기준, 범위 및 규모 등을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제7조의5), 산림법시행령(제112조·제90조의2및별표8의2)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8조) 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35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부칙제2항), 도시개발법시행령(제74조), 산림법시행령(제24조의6)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12조의2) 등은 형질변경과 관련된 회계규정들을 담고 있다. 그밖에 형질변경의 신청등 일반적 관리절차를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로법 및 지적법 등이 있다. 한편 산림법(제74조)은 산림에 대한 불법형질변경을 범죄로 규정하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은 환경보호지역에서의 형질변경을 가중처벌한다.



제 3 장 법제분석

특성 분류	법령명	조항	내용
관 리 절 차 · · · 기 준 · · 계 획 (2)	農漁村整備法	제88조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산림법(제59조)에 의한 형질변경행위등 규정의 적용을 배제
	道路法	제92조	○생활환경정비구역등 지정·고시의 효력
	도로법시행령	제40조	○도로의 점용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7조	○접도구역의 지정등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74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산림법	제31조	○매입필증의 재발행
	산림법시행령	제118조	○산림의 형질변경의 죄 등
		제 24 조	○보전임지의 전용등
		제 6 항	
		제 24 조	○대체조림비의 감면등
		의2	
		제 24 조	○대체조림비의 부과기준면적
		의3	
		제 24 조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의6	
		제44조	○조림비등의 반환
		제112조	○산림형질변경의 규모
		부칙 제 8 조	○불법전용산림에 대한 임시특례
	산림법시행규칙	제19조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등
		제27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수립등
		제 58 조	○국유림의 대부등
		제 4 항	
		제 87 조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제5호)
	제 1 항		
	제88조	○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	
	제 88 조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의2		
	제89조	○형질변경허가기간의 연장허가	
	제90조	○신고에 의한 형질변경기간의 변경신고	
	제 90 조	○산림의 형질변경기준(별표8의2)	
	의2		

특성 분류	법령명	조항	내 용
관 리 절 차 · · · 기 준 · · 계 획 (3)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0조	○완충지역안에서 형질변경등을 인허가할 경우 국립수목원장과 협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결정기준일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 2 조 의2	○형질변경된 토지의 공시지가
	지적법	제97조	○공유재산 개량시의 가격평정등
	지적법시행령	제19조	○형질변경등으로 인한 분할신청
	지적법시행규칙	제26조	○도시개발사업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특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 기준등에관한규칙	제16·17 ·19· 22조	○형질변경토지의 등록전환·분할·지 목변경·지적공부의 정리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 한규정	제23조	○지적측량 신청절차등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 조치법	제2조	○정의: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 토·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의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8조 제3 1 조 제5항 제4조 제3조	○행위허가등 ○형질변경 허가의 규모 ○지방산림관리청장의 권한 위탁 ○환경보호지역 형질변경 가중처벌 ○사전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 제 3 절 조례분석

서울시의 녹지관련 조례체계가 현저한 변화에 당면하고 있다. 개발제한 구역의 조정과 연계되어 있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안과 도시공원조례의 개정안이 같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안은 용적율에 관하여 광역과 기초 그리고 사업자와 감시자 사이에 공방이 치열하다. 도시공원조례

의 경우, 점용허가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도시공원조례개정에 즈음하여 서울시 당국은 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유지가 서울시 전체공원면적(145,000제곱미터)의 0.85%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허가가능한 토지는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같은 개정안은 법적안정성이 무너진 이후의 결과를 과소평가한다.

## 1. 상위법령과의 관계

### 1) 도시공원법의 적용

도시공원조례의 근거법은 도시공원법이다. 도시공원조례의 해석과 적용은 도시공원법(최근개정:2000·1·28)과 동시행령(최근개정:2000·6·27) 및 시행규칙에 준거한다. 도시공원법은 관련법률들을 고려하면서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관련법률들에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건축법 및 자연환경보전법등이 있다.

도시공원법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법체계상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도시계획구역 바깥의 공원지역은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상의 '공원'의 개념은 국토이용계획(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한다.

도시공원법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제한을 배제할 수 없다. 도시공원도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유보지역(제28조), 완충지역(제29조), 시·도생태계보전지역(제30조) 및 자연휴식지(제43조)로 지정·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은 그 위치가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을 뿐이지 입법원리는 자연공원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종래 도시공원법은 개발법으로서 기능하였다. 이러한 입법운용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자연환경보전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제도의 남용이었다.

같은 입법원리가 적용되는 두 법을 하나[자연공원법]는 환경부가 그리고 다른 하나[도시공원법]는 건설교통부가 관장하기 때문에 두 법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시공원조례가 보전을 넘어 개발을 지향함은 바로 이 때문이다.

## 2) 도시공원법시행령의 적용

도시공원법이 개발지향적으로 해석될 경우 도시공원법시행령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제6조)를 확대해석함으로써 상위법[도시공원법]이 위임한 입법의 한계[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위험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를 내주기 위하여 개정된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일부항목들(제8의2 : 도시공원 점용허가대상 및 제8의3 : 녹지 점용허가대상)이 문제된다.

즉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8의2호는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동항제8의3호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창고시설·동물관련시설중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로서 자기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도시공원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한다.

동조제2항제1호에서는 ‘녹지’ 점용허가대상에 상기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용허가 규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본질을 해친다. 도시공원법상의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도시공원이나 녹지에 “사무소·창고시설·축사·식물관련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

“녹지”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

도시공원법 제8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제1항은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

정한다.

동조제4항(신설 2000·1·28/시행일 2002·1·1)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이 도시계획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지목이 아닌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공원법 제12조의2(녹지의 점용허가)제1항은 “녹지 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녹지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조제5항(신설 2000·1·28/시행일 2002·1·1)에 의하면, “녹지관리청이 도시계획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지목이 아닌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들을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이나 녹지관리청은 대단히 큰 재량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령에 규정하면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서도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라도 ‘위임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초기의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각호는 전기,수도,가스,도로,교량,농업기반시설,방범시설,통신시설,재해시설등 거의가 공익시설들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령(동항8의2호 및 8의3호)(최근개정 1999·4·9)은 이러한 초기의 흐름을 벗어나 ‘사익’시설을 허가대상에 편입시켰다.

도시공원법시행령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의 원용에서도 오류를 범하고 있다. ‘창고시설·동물관련시설 및 식물관련시설’과 같은 개념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건축법시행령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과 도시공원법은 그 기능이 판이하게 다르다. 전자는 사업법

이고 후자는 보전법이다. 보전법과 사업법은 서로 원용할 수 없다.

이러한 시설들은 '점용허가의 기준'(도시공원법시행령 제7조)에서 그 존속기간을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험칙에 의하면 이러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 같은 시설들을 영속화시키려는 갈등과 민원들이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 2. 조례관계

### 1) 점용허가 대상의 확장

1981년에 제정되고 1993년 및 1995년에 개정된 서울시도시공원조례(제8조)는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서는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8의2호상의 '관리용가설건축물'을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 규정한다.

1999년 11월에 서울시의회에 상정된 도시공원조례개정안(제8조)에서는 “작업장과 건조장”까지를 '관리용가설건축물'(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8의2호)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리용'이라는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나아가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8의3호상의 “창고시설” 및 “식물관련시설”을 크게 확장시켰다. 동조례개정안(제8조)에 따르면, “창고시설”은 “저장 및 처리시설, 냉동·냉장창고, 하역장등”을 포함한다. 또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재배를 위한 온실”을 포함한다.

2000년 5월에 개정안 자문차 소집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정책분과위원회)는 상기 개정안이 법체계와 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200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조례 제3944호)를 통과시켜 당초안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개정조례는 종래의 제8조(공원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제8조의2(공원점용허가의 기준)로 분화시키고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을 확대하였다.



(별표4)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제8조의2제1항 관련)

1.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점용허가서에 점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4. 가설건축물 설치의 지목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인 경우로서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 계획이 없어야 한다.(공원 점용허가에만 해당함)

(별표5) 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제8조의2제2항 관련)

1.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쇠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한다.
2. 영 제6조제1항제8의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에 한한다.
3. 영 제6조제1항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저장시설에 한함.
  -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에 한함.
  -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
  - 라. 공원으로 결정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봄.
4. 영 제6조제1항제8의4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
  - 나. 점용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함.
5. 영 제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

- 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한함.
  -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
6. 영 제6조제1항제11호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 나.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건축물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기허 조성된 동일 대지 내에서의 경미한 위치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 라.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하는 경우
7. 영 제6조제1항제11의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도시공원법의 정신이 완전히 실종된다. 도시공원법시행령은 건축법시행령상의 “창고시설·동물관련시설·식물관련시설”을 끌어들이 사익을 목적으로 한 점용허가를 도입하였고, 도시공원조례개정안은 시행령을 확장해석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났다.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제1항(도시공원점용허가대상)제8의2호와 제8의3호 및 동제2항(녹지점용허가대상)제1호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행하려면 입법을 왜곡하여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면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 함은 정치적 부담을 ‘탈법’으로 해소하려는 접근방법에 불과하다.

도시공원법의 전취지에 배치되는 도시공원법시행령(제6조제1항제8의2호 및 제8의3호)은 삭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공원조례의 무리한 확장입법은 철저히 지양되어야 한다. 도시공원법시행령의 근거규정을 해석하면서

이를 더 확장시킴은 조례의 한계를 일탈한다. 법집행기관의 탈법행위이다.

## 2) 점용허가 범위의 확대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도시공원법 및 도시공원조례의 취지에 반한다. 현행 서울시도시공원조례는 도시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제1항제1호:1993년1월 신설). 이러한 입법태도는 도시공원조례를 “보전법규”로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1999년의 서울시도시공원조례개정안(제8조)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1단계 집행계획)상 3년이내에 집행계획이 없는 공원과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등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이후 조례제정 과정에서 이러한 시도는 유보되고 현행 2001년 12월의 개정조례는 종전의 규정(제8조제1항)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향후 유사한 시도가 다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도시공원조례를 개발법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다. 도시공원법이나 도시공원조례를 개발법으로 보지 않고 보전법으로 본다면 공원조성계획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는 없다. 공원조성 자체가 개발이라면 조성계획의 미집행 내지 유보는 보전에 해당한다. 도시공원조례의 후퇴는 법발전을 저해한다.

## 제 4 장 외국의 녹지관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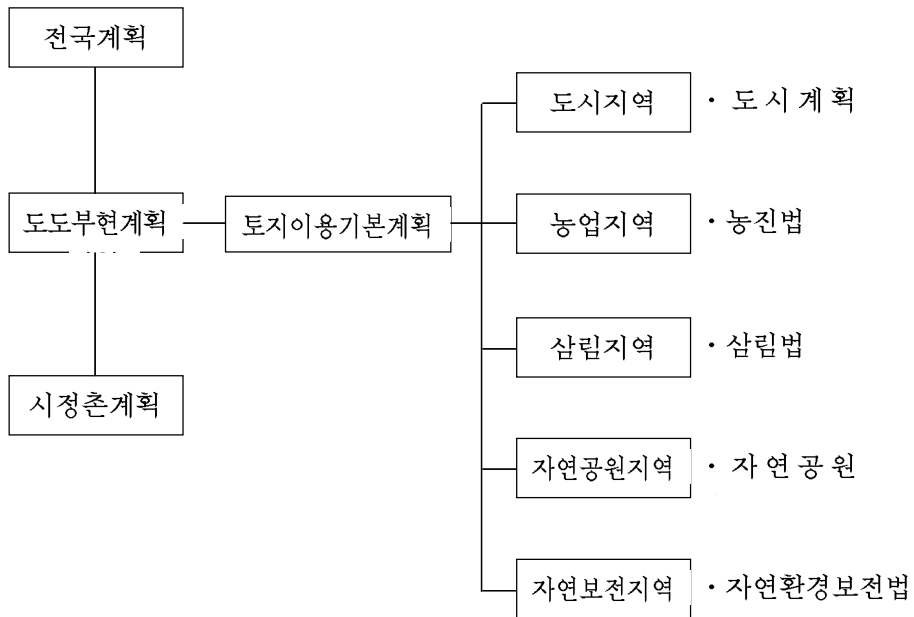
### 제 1 절 일 본

도시녹지에 관하여 일본은 도시계획법과 연계된 별도의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973년의 도시녹지보전법(최근개정1999년)·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1966년의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최근개정1999년)·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이 그것이다. 도시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공원법(1956년 법률제79조)과 짝을 이루어 양호한 도시환경형성을 도모하며 보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녹지보전법은 기본계획(제2조의2), 녹지보전지구(제3조-제13조), 녹지협정(제14조-제20조), 시민녹지(제20조의2-제20조의5) 및 녹지관리지구(제20조의6-제20조의11)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에 비하여 수도권정비법(1956년법률제83호)과 짝을 이루어 수도권의 근교정비지대(제24조제1항)의 녹지를 보전하고 수도권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현재 및 미래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은 근교녹지보전구역의 지정(제3조), 근교녹지보전계획(제4조) 및 행위의 신고(제8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들은 이 두 법을 지역사정에 맞게 구체화시키고 있다.

#### 1. 토지이용체계

일본의 국토이용계획은 국민의 건전한 문화환경을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장기적 견지에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국토의 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체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이용계획체계는 장기구상으로서 국토이용계획과 토지이용규제의 상위계획인 토지이용기본계획의 이원적 형태이다.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적정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공간위계별로 전국계획, 도도부현계획, 시정촌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일본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이용계획 체계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방침과 이를 실

현하기 위한 규제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이용방침은 1992년 이후 도시전체와 지구차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전자는 '정비, 개발 또는 보전의 방침'에 의해서, 후자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에 의해서 수립토록 되어 있다. 토지이용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구역구분제도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발허가제도, 지역지구제, 지구계획제도가 있다<sup>13)</sup>.



(그림) 일본의 국토이용 계획체계

## 2. 환경계획체계

### 1) 환경기본계획

환경기본법(1993)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며,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현재 및 미래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하며, 인류의 복지에 기여,

13) 변병설 외, 2001.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각의 주체에 대한 책무,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특정지역에 대한 공해방지, 국가가 강구해야 할 환경보전시책을 비롯하여 국제협력,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비용부담·재정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풍요로운 환경이 제공하는 수혜를 지속적으로 유지, 환경에 부하가 적은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의 구축, 국제적 협력에 의한 지구환경보전의 적극적인 추진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환경기본계획은 환경기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정부의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책의 대강(大綱)을 정한 국가의 기본계획이다. 환경기본법에서는 국가의 기타 계획 중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환경기본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에 따라 계획을 책정·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기본계획에서는 순환, 공생, 참가, 국제적 대처 등 4가지 장기적 실현 목표를 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 NGO 등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2) 환경정책대강

일본 건설성은 21세기를 대비한 건설성의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풍요롭고 실감나는 환경창조를 목표로 중·장기적으로 전개해야 할 정책과제와 시책의 전개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994년 1월 환경정책대강(大綱)을 책정·공포하였다. 환경정책대강의 책정 목적은 환경을 보전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상호 균형을 유지하고 여유롭고, 아름다운 환경을 창조함과 동시에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에 공헌하는 일이 건설행정 본래 사명임을 인식하여 환경을 건설행정에 내부목적화 하는데 있다. 즉, 사업을 실시할 때 자연환경에 대한 미티게이션(mitigation)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정책의 추진방향으로 환경계획의 책정, 법령기준 등 환경에 관한 규정의 충실, 환경에 관한 시책의 중점적·종합적 추진,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사업의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정책대강은 도시, 녹지, 하천, 도로, 자연환경 분야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개성 있고 문화적인 도시조성, 녹지와 오픈 스페이스의 보전, 하천환경관리 및 자연하천 조성,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자연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실천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대강을 근거로 책정되는 주요 환경계획은 도시환경계획, 환경공생주택 추진계획, 도로환경계획, 신(新)녹(綠)의 기본계획, 유역별 하수도정비종합계획의 여섯가지로 대표된다.

### 3. 도시환경계획

도시환경계획은 환경부하의 경감, 자연과의 공생 및 어메니티의 창출을 피하는 질 높은 도시환경의 형성을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환경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도시시설정비, 시가지개발 등 하드웨어적인 시책과 도시환경에 관한 지역주민의 자주적 활동과 교육, 계몽활동 등 소프트웨어적인 시책 등 양쪽을 종합적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이들 시책의 조화, 조율을 통해 양호한 도시환경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을 지향한다.

도시환경계획의 계획기간은 20년이며, 계획 책정의 주체는 시정촌의 도시부국이다. 계획대상구역은 시정촌구역 중 양호한 도시환경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의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도시환경형성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실정에 입각해서 지역의 주체적인 대처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도시환경계획의 책정에 있어서 원안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향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4. 녹(綠)의 정책대강과 녹(綠)의 기본계획

환경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녹이 풍부한 국토형성을 도모하고 특히 녹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국민의 녹에 대한 욕구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녹의 정책대강을 1994년에 제정하여 생활자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녹을 보전, 창출, 활용하고 각종 행정시책의 기본방향과 기본목표를 명확하게 하여 시책의 종합적인 전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녹의 정책대강에서 정하는 시책의 기본방향으로는 녹의 보전과 창출에 의한 자연과의 공생, 풍부한 녹지의 확보로 여유 있고 쾌적한 환경의 창출과 아름다운 경관의 형성, 녹을 활용한 다양한 여가공간의 조성, 시민의 참가와 협력에 의한 녹의 도시조성 등이다. 그리고 녹의 정책대강에서는 21세기 초반을 목표로 한 도로, 하천, 공원 등 녹의 공적인 공간량을 3배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한다. 녹의 정책대강에서는 공원, 도로, 하천, 댐, 사방, 해안, 사면지, 하수처리장, 공공시설, 공적주택 등 공익적 시설 등의 녹을 비롯하여 시가지개발사업 등과 일체화된 녹, 민간소유지의 녹의 창출과 활용을 도모한다.

1994년 6월 개정된 도시녹지보전법 제2조의2에서는 녹의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즉 녹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도시계획구역 내의 해당 시정촌을 책정 주체로 하여 도시에 있어서의 적정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녹의 기본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녹지의 보전과 녹화의 목표, 녹지보전지구 내의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녹지보전에 필요한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과 녹지보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점적인 녹화추진을 피하여야 할 지구 및 해당 지구의 녹화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녹의 보전을 위해서 녹지보전지구 지정의 촉진, 풍치지구 제도의 활용, 생산녹지의 보전, 자연환경 보전을 배려한 공공시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 녹의 기본계획에서는 사업 추진시 자연생태계에도 충분히 배려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녹의 에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고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다.

#### 1) 거리만들기조례<sup>14)</sup>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리의 규칙을 만든다. 『가나자와시 거리만들기조례』가 새롭게 태어났다. 가나자와시 거리만들기조례는 『가나자와시에 있어서 시민참화(參畵)에 의한 거리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및 가

14) <http://www.city.kanazawa.ishikawa.jp>(2000.11).



나자와시에 있어서 토지이용의 적정화에 관한 조례』의 일반적인 호칭이다. 거리만들기 조례는, 주민스스로가 자신들이 사는 지역이 목표로 할 장래상을 그리고 거리만들기의 룰(rule)을 결정하고 실현시켜 나갈 조직을 정하는 것이다. 지역주민 모두가 중심이 되어 거리만들기의 방향이나 룰(rule)을 생각하고「거리만들기계획」을 만든다.

그 지역에 어울리는 건물, 도로, 토지이용 등의 기준을 정한다. 지역의 특징에 따라 자유로이 룰(rule)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생활이나 역사와 관련된 비교적 소규모의 지구단위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거리만들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과 「거리만들기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협정에 의하여, 그 지구의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계획개발로 적정한지 체크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울리는 시민주체의 활력있는 거리만들기를 추진하여, 개성이 풍부하고 살기도 좋은 가나자와의 도시환경을 형성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

거리만들기 조례에 의하여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룰(rule)을 지구(地區)가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열거된 사항외에도 녹화의 의무, 주차장의 위치나 출입구의 지정, 자동판매기의 설치금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림지, 수변지, 가로수의 보전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한이나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공공시설의 배치나 규모에 관한 것도 정할 수 있습니다.

- ①용도 : 지구의 환경을 유지하도록 건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건물용도의 혼재를 방지합니다.
- ②용적률이나 건폐율 : 주거환경이나 경관의 향상, 화재예방의 관점으로부터 제한합니다.
- ③대지면적 :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보나 거리풍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저한도를 정하여 토지의 세분화를 방지합니다.
- ④벽면위치 : 주거환경이나 경관의 향상, 화재예방상의 관점 등으로부터, 벽면이나 지붕의 위치를 제한하든지, 일정하게 맞추기도 합니다.
- ⑤건물 높이 : 거리풍경의 조화나 양호한 환경형성을 위하여,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든지, 일정하게 맞추기도 합니다.
- ⑥건물 형 : 지구경관의 향상, 거리풍경의 조화를 위하여 건물의 형이나 색채, 간판 등을 제한합니다.
- ⑦

울타리 등 : 경관향상이나 녹음의 확보, 지진화재 등의 도양(倒壤)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소재나 구조를 정합니다.

## (2) 개발사업자에게 드리는 말씀

거리만들기조례에 의해서 개발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개발사업'이란 개발행위, 토지의 구획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대규모의 수선, 건축물 이외의 공작물의 용도·형태 혹은 의장(意匠)의 변경, 목재의 벌채를 말합니다.

### ① 거리만들기 협정구역내에서 개발사업을 행하는 경우

거리만들기 협정이 맺어진 지구에서는 사업에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시(市)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발사업계획에서는 거리만들기 협정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 주십시오. 사업계획의 내용이 거리만들기 협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는 조언·지도를 행합니다. 조언·지도를 하기 위하여 시는 필요에 따라서 거리만들기 심의회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 ②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행하는 경우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실시계획제출 후 30일간, 사업개요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 주십시오. 이 표지는 개발을 행하려고 하는 토지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 설명회의 개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30일의 경과후 문의의 내용이나 그 대응에 대한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시와 협의를 합니다. 시는 거리만들기에 관한 계획과 조정을 하기 위해 조언·지도를 합니다. 절차를 적정히 행하지 않은 경우에 시는 권고를 합니다.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합니다.

#### ■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① 개발규모

- 시가화구역 내에서 토지면적이 3000㎡ 이상의 개발
- 시가화구역 밖에서 토지면적이 1500㎡ 이상의 개발

\* 주차장, 자재적치장, 분양채원(菜園), 매립 등,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

으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

⑥ 중고층 건축물의 건축

● 시가화구역 내에서는 주택지에서 높이 10m 이상, 상공업지에서 높  
이 15m 이상의 건축물

● 시가화구역 밖에서는 10m 이상의 건축물

■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① 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사업

② 비상재해시의 응급조치

③ 자기의 전용주택

④ 통상의 관리, 경미한 행위, 기타

2) 고마치거리보존조례<sup>15)</sup>

고마치 거리의 「고」(こ)는 「역사적 풍취를 간직한 거리풍경」이라는 「古(고)」와 함께 「멋스러운 작은 거리」라고 하는 「小(고)」의 의미도 같이 함축하고 있다. 가나자와의 중심부는 번제(藩制)시대에 만들어진 도로나 용수의 거리골격이며, 무사마을·장인(町人)마을 등을 남기면서, 그 위에 현대까지의 시가지가 축적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시내 여기저기에 도시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 거리풍경이 남아 있어, 가나자와의 커다란 매력이 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찻집거리나 무사들의 군락, 사원 군락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뒷골목을 걷다가 「이런 거리가 남아 있었을까」고 감탄하기에 충분한, 멋스러운 곳을 아직도 발견할 수 있다. 「고마치거리의 보존」이란 이러한 가나자와시의 역사를 말해주는 「멋이 있는 거리」를 가능한 한 남기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다.

(1) 조례의 요지

조례의 목적은 「고마치거리」를 가나자와의 귀중한 재산으로 지키는 일만, 그와 동시에 생활이나 경제활동의 장소로 역사적 분위기를 살리면서, 도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도 주요 목적이다. 보존의 구조는 ① 보존이 필요한 거리를 「고마치거리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② 각각 거리

15) 1994年金澤市條例第1號:金澤市こまちなみ保存條例(金澤市こまちなみ對策課 076-220-2364).

의 특성에 따른 「보존기준」을 만들며, ③ 개축이나 수선에 시가 보조를 하여 보존이나 수경(修景)을 진행시킨다. ④ 보존구역에서 신축·개축등을 할 때는 사전에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 경관조례「가나자와시 전통환경의 보존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하여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다.) 구역내의 역사적 건축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고마치거리보전건조물」로 등록을 하고, 시와 소유자가 건물의 보전을 위하여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구역의 지정이나 보존기준의 내용은 주민과「고마치거리보존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결정한다.

## (2) 역사적 풍경이 느껴지는 거리

가나자와시는 1989년부터 3년 동안 6인의 전문가에 의한 조사회를 만들어 옛 성(城) 아래의 역사적 건축물과 거리풍경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무사의 거리에 있던 14개의 지구와 장인(町人)의 거리에 있던 27개의 구역등 모두 41개 거리에 대하여 조사가 행해졌다. 이 중에서 조사지구의 많은 수가 무가(武家)의 집이나 흙담, 상인의 집에서 볼 수 있는 격자문의 아름다운 건물을 중심으로 거리의 특징이 잘 드러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나자와에서는 이 밖에도 옛 성(城) 주변부의 거리나 항구변, 사원군락등 역사적 흔적을 남기는 것들이 많이 있다.

## 5. 녹화사업

일본에서는 1976년 이후 전국각지 대부분의 도시에서 21세기를 목표로 하는 「녹색 마스터플랜」이라 불리는 장기적인 공원녹지정비구상이 입안되었는데, 토지이용계획으로서 입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이 약하다. 실제로 사면, 구릉, 평탄지 등 수림의 녹음은 매일같이 사라져 가고 있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도시녹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도시공원법, 자치제의 조례 등에 의존하고 있다<sup>16)</sup>.

일본에서는 건축기준법에 따라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건평률, 용적률, 의

16) 丸田頼一, 1998: 151.

벽의 후퇴폭, 고도제한, 사면제한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는데 뉴욕시와 비교해 보면 어떻게 사권(私權)의 제한이 완화되는지가 판연히 나타난다. 여기에는 최저의 주거환경을 형성하는데 그치고, 녹화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음에서 기인한다. 자연성이 풍부한 양질의 도시환경을 육성해 가기 위해서는 민유지의 녹화공간정비는 필수로, 녹화를 가능케 하는 최소택지구모, 최소접도개구폭(接道開口幅), 최소 공지율, 보다 넓은 벽면선의 후퇴(세트백)폭 등의 확보를 건축기준법 등의 개정에 의해 앞으로도 검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sup>17)</sup>.

최근 일본에서는 동경만안개발(東京灣岸開發) 등 새로운 구상이 부상하고 있지만 유통, 항만 등 생산기능현상도 재검토하고 수제선부분의 공원화를 꾀하여 시민에게 워터 프론트를 되돌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sup>18)</sup>. 또한 하천개수에 있어서 자연생태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호안(護岸)개수가 클로즈업되고, 다자연형호안이나 근자연형호안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스위스나 독일의 예의 소개이나 아직 시행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하천을 둘러싼 조건이 외국과 다르며, 기후 특히 강우에 관한 상태 등도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위기가 환경보전지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앞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검토를 행해야만 한다.

시가화가 진행되거나, 대도시일수록, 비오토프공간의 보호와 회복이 필요하게 되지만, 일본에서는 이 점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도로변이나 정원의 둘레를 콘크리트로 장식하면 근대화된 인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민유지의 이들 부분을 나지(裸地)로 남겨두거나, 잔디포장을 시민들에게 장려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에서도 비오토프에 대한 관심을 국민들이 갖게 하는 일이나, 공원 등의 관리 자측에도 이것을 배려한 관리시책을 도입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그로 인하여 각종의 곤충, 야조(野鳥) 등 소동물이 서식하고, 균형 있는 생태계가 확보되어 참으로 운택한 도시생활이 구축되리라고 본다<sup>19)</sup>.

17) 丸田頼一, 1998: 134

18) 丸田頼一, 1998 : 129.

19) 丸田頼一, 1998 : 152.

일본에서는 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2년에 제정한 수목보존법(통칭)이나 자치체에 동종의 제도가 있지만, 어느 것이나 목측으로 직경 50cm나 40cm 이상의 큰 나무, 독일의 「랜드스킵계획」중의 천연기념물에 상당하는 거목이나 비교적 규모가 큰 수림지(樹林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채되고 만다. 도시녹지보전법(1972년제정)이나 그에 유사한 자치체의 조례도 마찬가지이다<sup>20)</sup>.

일본에서의 지구계획제도는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의 일부개정을 포함하여 1980년에 공포, 그 다음 해인 198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 제정의 배경으로서 독일연방건설법(Bundesbaugesetz)의 지구상세계획(Bebauungsplan)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시가지의 용도, 형태, 건물윤곽 등을 규제, 유도하고,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데, 우리 나라에서도 시정촌이 결정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 왔다<sup>21)</sup>.

일본의 지구계획은 종합적인 도시환경의 개선 내지 형성이라기보다는 건축물의 규제와 유도에 힘을 쏟아 진행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 녹음의 보전과 녹화계획과의 관련성을 중시한, 종합적인 지구계획제도의 운용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sup>22)</sup>.

## 제 2 절 미 국

### 1. 토지이용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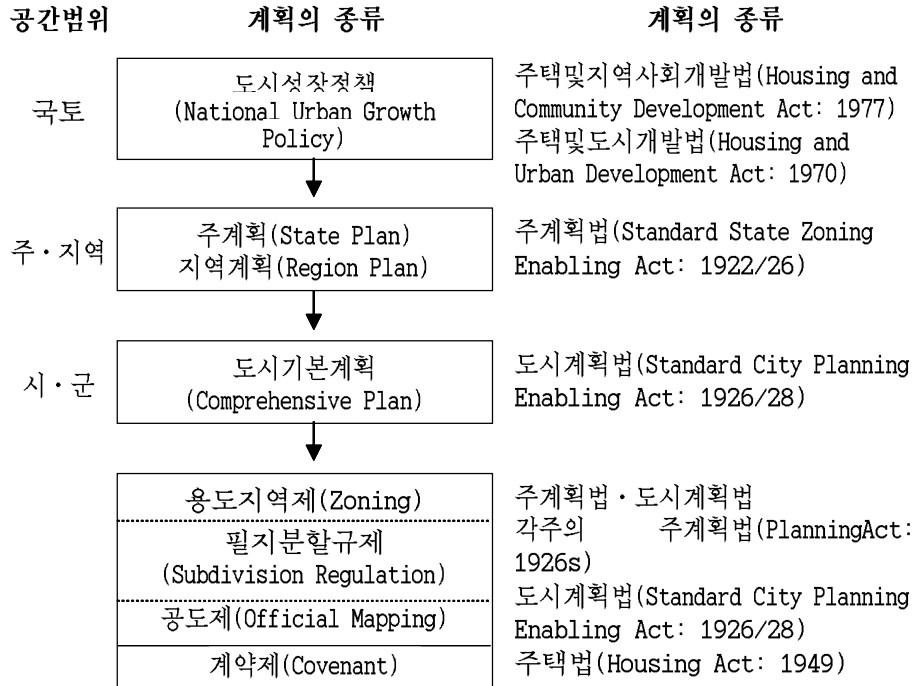
미국은 각 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용도지역제를 바탕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는 국가 수준의 통일적인 도시계획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개발 및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적인 토지이용계획제도가 없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은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법에 의해 도시계획의 권한이 군·구 등의

20) 丸田頼一, 1998 : 153.

21) 丸田頼一, 1998 : 154.

22) 丸田頼一, 1998 : 156.

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고, 자치단체는 이에 의거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sup>23)</sup>.



자료: 박헌주 외(2000)

〈그림〉 미국의 국토이용 계획체계

## 2. 도시녹화

### 1) 공원의 계통적 정비

유럽대륙에서 미국에의 이주는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1630년경부터 차례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는 “그린”이라 불리는 광장이 있는데 특히 주민의 레크레이션을 의식하여 공공이 용지를 취득하고 정비한 것으로는 컴먼(Common)이나 공공정원(Public

23) 변병설 외, 2001.

Garden)등이 나타난다. 어떠한 사례도 현재의 보스턴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활용되고 있는데 쌍방을 합하여 약 30ha이다. 1634년에 만들어진 도시공원의 원형이라 할 유서 깊은 공간이다<sup>24)</sup>.

그 후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는 영향을 받아 신문 등의 여론도, 시민 특히 노동자를 위한 도심부의 공원창설의 필요성을 외쳤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는 아메리카 최초의 도심공원인 페어마운트공원(현재 1,632ha)의 일부가 1855년에 정비되고 뒤를 이어, 뉴욕의 센트럴파크(현재 336ha)가 설계경기에 입선한 유명한 Frederick L. Olmsted등에 의하여, 1858년부터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도심부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원적인 풍경이 창출되었고 시민의 레크레이션장이 확보되는데, 동시에 그는 건축가와는 다른 직업인 조경가(Landscape Architect)의 필요성을 세상에 강조하게 된 셈이다.

이 센트럴파크는 1862년에 완성되는데 1863년에 400만명, 1865년 740만명, 1871년에는 1,100만명의 입원자(入園者)를 돌파하여 전미의 여론을 들끓게 하였다. 즉, 공원의 설계와 함께 범죄의 감소에도 기여한 점, 공원의 산책이나 승마 등 레크레이션활동이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점 등, 각 방면에서 반향이 나타나 전미각지의 센트럴파크(중앙공원)창설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일본에까지 그 영향이 보여진다. 그것은 게이오(慶應)年間이나 메이지(明治)초기의 방미사절의 많은 수가 이 센트럴파크를 보고, 이에 자극받아 1873년에 태정관포달(太政官布達)이 내려지는데 이것이 도시공원제도의 시초가 되기 때문이다. 아사쿠사(淺草)공원, 시바(芝)공원, 후카가와(深川)공원, 비조산(飛鳥山)공원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진 전미(全美) 각지의 중앙공원으로서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아틀란타 피에몬공원(74ha), 시카고 그랜트공원(123ha), 달라스의 페어공원(76ha), 덴버의 시티공원(126ha), 캔자스 시티 스웱공원(706ha), 로스엔젤레스 그리피스공원(1,625ha), 뉴올리언스의 시티공원(584ha), 피닉스의 엔칸트공원(88ha), 피츠버그의 센리공

24) 丸田賴一, 1998 : 125.



원(182ha), 선안토니오의 블랙켄리치공원(100ha), 샌디애고 벨보어공원(503ha)시애틀의 볼런티어공원(18ha)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도시공원은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시작으로 발달일로를 걷는데 그 자체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원으로서 평온히 계승되어 온 것은 아니고, 오랜 세월을 거쳐 호텔건설, 자동차용 고속도로, 비행장, 상설전시장 등 용도전환에 대한 많은 제안이 이루어졌지만 그 때마다 여론을 포함한 공원애호가의 주장에 의하여 그러한 것에서 비껴나 온 것이다.

다른 한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 도시미(都市美)운동이 환기되어 워싱턴D.C나 시카고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공원까지 포함시킨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도시내에 소공원을 분산시켜 배치하는 시도나, 보스톤과 같은 도시에서처럼 도시내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부까지 포함한 전원계통계획이 입안되어 실현을 피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소공원은 독일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미국에 있어서는 보스톤의 「사정(砂庭)」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당초 교회나 교정을 이용하도록 꾸며져 근처의 아동을 중심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 후 뉴욕, 시카고 등에 그 영향이 미치자 본격적인 「놀이터(遊技場)」로 개설되기에 이른다. 이 놀이터도 청소년 등으로 이용층이 확대되면서 핸드볼, 테니스, 스케이트 등에 이용할 공간이 요구됨에 따라 가로수(竝木) 등에 의한 수경(修景)도 이루어져 현재의 공원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한다. 그러나 당시는 자선단체에 의해서 기부된 토지를 이용하는 일이 많고 아직, 건설이나 관리도 지역단체에 의하여 거의 이루어졌다.

1905년부터 1912년에 걸쳐 시민의 레크레이션 수요가 한층 높아져 사정(砂庭), 놀이터(遊戯場)나 그 확대된 것의 증설에 힘입어 집회, 체육, 실내유희, 문화교양, 식당 등으로 이용되는 필드하우스(field house)라 부르는 건축물이 광장공간에 배치되기에 이르렀다. 그 전형적인 사례는 시카고에서 볼 수 있는데, 주변에는 야외극장, 야구장, 풋볼장 등 보다 광범위한 레크레이션 시설도 병설되어 근린고원의 원형이 나타나기에 이른다.

이상과 같은 공원을 포함하여 보스톤만이 아니라 그리브랜드, 디트로이트, 밀워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의 도시에서는 도시주변부를 포함한 공원계통계획이 입안되었지만 주변부의 것은 현재의 군영공원(郡營公園,

County Park)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말을 중심으로 한 광역레크레이션에 이용되고 있다.

그 밖에 광역 레크레이션, 문화재·사적보호나 자연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주영공원(州營公園, State Park)정비를 들 수가 있다. 제1호는 남북전쟁 중이던 1864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현재의 요새및 국립공원의 중심부, 요새및계곡에 인접한 새코야의 마리포사(Mariposa)대수림을 포함한 연방소유지 약 8,000ha에 대하여 링컨대통령이 캘리포니아에 이관할 것을 승인한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1905년에는 주의 관리예산이 불충분하여 안이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공원내의 자연 파괴가 심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연방정부에 반환되고 1890년에 창설된 요새및국립공원에 편입되었다. 그 후 캘리포니아주에는 1902년 산타쿠르츠부근의 캘리포니아·레드윗 주영공원, 현재의 피크베이슨·레드윗 주영공원이 창립되었는데, 뉴욕주에서도 1885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포함한 주영공원이 창설되기에 이른다.

현재는 전 미국 각지가 주영공원으로서 광대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가 용지를 취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민간 측으로부터 막대한 용지의 기부나 유지관리에 대한 원조 등을 받고 있는 점은 매우 흥미 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영공원의 경우에도 Sierra Club, Sempervirens Club, 캘리포니아 랜드마크 연맹(California Landmark League), 레드우드 구제연맹(Save the Redwoods League)등의 민간단체가 공원의 창설에서 관리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련되어, 레드우드 구제연맹의 소유지가 전국공원면적의 14%인 54,400ha에 달하고 또한 피크베이슨·레드우드 주영공원에서는 지금도 용지의 추가취득을 하고 있지만 샌페르피 랜드 클럽이 취득하는 동면적을 주정부가 매수하고 있는 정도이다. 웅대한 자연경관이나 자연자원의 확보, 문화재·사적보호와 광역 레크레이션 등을 목적으로 1872년에는 엘로우스톤을 시작으로 국립공원도 각지에서 정비되고 있다.

이상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미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원정비는 도시내의 도시공원, 그 주변의 군영공원이나 주영공원과 광범위하게 걸쳐, 이를 포함한 공원계통이 각 도시를 기점으로 하여 확립되고 있고, 레크레이

선, 자연경관이나 자연보호, 도시녹화 등의 면에서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2) 나무와 물의 네트워크 만들기

나무와 함께 물이 도시환경향상이나 레크레이션기능의 충족에 미치는 역할은 크고 또한, 대부분의 경우, 양자가 공존하여 좋은 환경이 형성된다. 뉴욕시에 있어서도 1971년이래 시유역을 흐르는 하천, 운하주변의 유통, 창고, 공장 등 기존의 토지이용, 조업실태를 총 점검하여 시민의 유효적 이용에 연결되는 토지이용으로의 전환을 꾀해오고 있다. 즉 총연장 약 352km<sup>2</sup>중 26%에 달하는 92km<sup>2</sup>에 대하여 재개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그것을 포함, 총연장의 약 50%는 레크레이션에 이용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져 워터 프론트 공원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보스턴, 볼티모어 등 다수의 도시에서도 볼 수 있다<sup>25)</sup>.

또한 도시의 중소하천에 대한 수면확보와 주변의 녹도화(綠道化)의 문제도 있다. 예컨대, 텍사스주의 썬안토니오시는 중심시가지를 루프상으로 흐르는 전장 약 1.6km의 도시하천 때문에 베니스라고 불리우는데 시는 썬안토니오천의 하천보도공원계획을 추진하였다. 현재에도 항시 풍부한 유량(流量)에 힘입어 수면은 유람선이나 놀이보트에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의 양 언덕은 잔디, 나무, 조명등으로 꾸며져 시민이나 관광객은 보도도로를 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하천을 축으로 한 토지이용이 전개되어, 레스토랑, 매점들이 들어서고 1,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야외극장과 무대가 하천을 둘러싸고 설치되어, 매일 밤 멕시코의 음악이나 댄스를 즐길 수 있도록 되어있다.

썬안토니오를 모델로 한 나무와 물의 네트워크만들기는 뉴욕주의 로체스터시 등 많은 도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썬안토니오에서는 불행한 과거의 역사가 있다. 이전에 몇 번의 홍수가 엄습하여, 특히 1921년의 재해에는 몇 명의 인명피해도 있었다. 그래서 시당국은 루프상의 하천에 대한 바이패스화와 폐천을 도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시민의 저항

---

25) 丸田頼一, 1998 : 129.

이 있어, 결국 하천의 보전을 피하면서 치수도 고려한 방법이 채택되었다.

그래서 하천의 바이패스화를 피하면서 루프상의 하천 상하유역에 각각 조정댐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 하천 보도공원이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본 유역에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하천보도위원회의 심의에 기초하여 하천보도주변의 토지이용, 건물의 용도, 재질, 조명, 광고 등이 규제되고 있다는 점도 부기해 두어야 하겠다.

### 3) 자연학습공원

미국에서도 환경학습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영향은 도시공원조정에까지 파급되었다. 1970년 국가환경정책법(환경어세스먼트법)이 제정된 다음해에는 환경교육법이 제정되어 건강·교육·복지부 안에 환경교육 사무소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주, 군, 시에 교육연구기관 등도 그에 관한 시책을 충실히 하여 생도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두게 되었다. 내무부 국립공원국도 국립환경학습지역(National Environmental StudyArea)이라는 명칭의 환경학습을 행하는 지역을 전미 각 지역에 지정하는 한편, 교사용 및 생도용의 각종 텍스트를 발행하여 보급에 힘쓰고 있다<sup>26)</sup>.

실제로 국립공원국의 이러한 활동은 국립공원내의 비지터 센터나 레인저에 의한 해설 등을 통하여 옛날부터 행해져 왔던 일이다. 즉 단순히 웅대하거나 또는 개성 있는 자연경관에 접하는 일 뿐만이 아니라, 그 공원의 역사, 지형·지질, 동물, 식물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학습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데, 특히 1920년 이후 다액의 비용과 직원이 투입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교육법의 제정 이후는 이러한 종류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학습지역을 지정하고, 인솔하는 일반교사가 이해하여 생도들에게 직접 가르칠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포함한 텍스트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용, 3-6학년용으로 세분화시켜 보급하게 되었다.

워싱턴주의 디스커버리 파크(Discovery Park)는 군용지가 시에 반환되어, 전술한 의도대로 정비된 도시공원이다. 본 공원은 1969년에 공원으로

26) 丸田頼一, 1998 : 130.

로서, 레크레이션용 목적으로, 연방의회가 시에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법안을 가결시켜 1972년 158ha가 시에 이관되고 동시에 마스터플랜이 세워졌다. 그래서 시내의 귀중한 오픈 스페이스로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야생 동식물의 생존을 가능케 하고 시민의 자연학습장으로써 이용하도록 하였다. 1973년 내취털리스트 4명이 배치되고 공원은 문을 열었지만, 그후 60ha의 토지가 추가로 이양되고, 일부에서는 골프장건설의 움직임도 보였다. 그러나 1975년 시민투표의 결과, 종래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하고 웅대한 자연학습공원으로서 존속시켜 오고 있다.

이 공원은 초원이나 사구(砂丘)지역을 핵으로 삼림과 해안이 둘러 쌓여 있지만 원내를 꿰뚫는 두 줄기의 회류식탐승로(回流式探勝路)와 해안이 일품이다. 즉, 전역에 걸친 약 4.5km의 루프탐승로(Loop Trail)와 베이거, 베이모미, 베이마츠 등 잔존림(殘存林)지역에 만들어진 약 2.4km의 울프림간 자연탐승로(Wolf Tree Nature Trail), 그리고 해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식물이나 지질이외에도 삼림 내에는 미국너구리나 다람쥐가, 초원에는 쥐, 두더지, 올빼미, 꿩 등이, 간조지의 해안에는 조개류 등 수 많은 생물이 생식하고 있어서 흥미를 끌 만한 대상으로 넘쳐난다.

이렇듯 공원을 활용한 자연학습활동이 활발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교사가 생도를 인솔해 와서 이곳을 이용하는 경우와 공원이 이용자를 공모하여 내취털리스트로부터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이든 텍스트 등 참고서는 충분히 구비되어 있어 교사와 그룹의 리더용이 있고, 전자에 대해서는 연수회도 열리고 있다. 그리고 연중, 내취털리스트 등에 의한 자연탐사회도 개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유치원생으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데이캠프, 해안탐험, 탐조회, 동물의 발자취(足跡)나 초등학교 고학년용의 캠프, 해안탐험,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한 캠프파이어를 이용한 집회, 해안산책 등 수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는 연간 약 10만명의 이용객이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을 포함한 환경학습, 그리고 청소년 대책의 일환으로 공원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4) 독특한 도시공원 재정운영

도시공원을 정비하고자 해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고심하는 것은, 우리 나라 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민간에 기부를 호소하기도 하고, 지가가 비싸 용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대도시에서는 민간에 공원을 정비해 받는 일도 있다. 또한 주영공원등 대규모 공원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민간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피하는 한편, 공공 측의 공원 재정을 매꿔 줄 차지료(借地料)나 매상액의 일정분을 민간 측으로부터 받는 등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마리너, 골프장, 레스토랑, 캠프장, 별장, 주차장 등이 그 예에 속하며, 입장료와 함께 공원세입의 주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sup>27)</sup>.

이러한 특허시설의 도입을 보다 광범하게 받아들이기 위하여 시의 기구나 재정상, 별도의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 그것은 공원구(Park District)라 불리우는 것으로, 일반 구청의 공원국과는 다른 별도의 조직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으로 말하자면 개발청이나 기업국과 유사한 성격의 조직이지만 역사는 깊다. 이것은 1869년 일리노이 입법원의 승인을 계기로 페오리아(Peoria)시, 시카고 등 같은 주 대부분의 시에, 최근에는 미시간, 인디애나, 오하이오, 캔터키주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공원경영상 특허 주목할 만한 사고방식이다.

그 중에서도 페오리아시의 공원구는 일리노이주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고,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248㎡로 전미(全美)에서도 가장 넓은 곳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실제 페오리아시 동(同)조직의 창설은 1894년에 시작된 것으로 고정자산세에 대한 가산세의 방식을 취하여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이나 교육부국에 용지를 대여하는 등, 독자의 재원을 바탕으로 공원의 증설이나 유지관리를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덧붙여 1983년의 통계를 보면 고정자산세 등 세금에 의한 세입이 전(全)세입(稅入)의 55%를 차지하고 특허 시설료, 시설 이용료, 강습회 수강료, 매점 등의 직영수입, 가로수나 교정 등의 식재(植栽)·유지관리위탁 등 타 부국으로부터의 세입이 약 45%를 이루고 있다.

27) 丸田賴一, 1998 : 132.

시카고 공원구의 창설은 1934년인데 페어리어시와 같은 사상을 가졌지만 독자적인 운영형태를 이뤄오고 있다. 예를 들면 1984년에 있어서 고정자산세 등 세금에 의한 세입은 전 세입의 약 82%로, 나머지인 약 18%가 특허 시설료, 시설 사용료, 직영수입, 자산이식 등이다. 시카고에는 광대한 시카고호반(湖畔)에 그랜트 공원(Grant Park, 123ha), 번햄 공원(Burnham Park, 242ha), 링컨 공원(Lincoln Park, 490ha)등 대규모의 공원이 연이어 있다. 이러한 공원을 포함하여 호반의 80%는 공원구의 소유이고 나머지 20%는 금후 매수예정으로 있으며, 「레이크 프론트 보호조례」에 따른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 호반지역에는 집합주차장, 요트하버, 군(軍)관계시설, 골프장, 호텔, 공항, 각종 박물관 등이 있다. 이중에서 주차장이나 하버는 직영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고, 기타 많은 것로부터 공원용지 사용료로, 차지료 등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호반지역뿐만이 아니라 시카고시 공원정비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 5) 주택지 녹화

아메리카 도시계획수법으로는 종합계획(General Plan), 지역제(Zoning), 택지분할규제(Subdivision Regulations), 공도제(Official Mapping)등을 들 수 있는데 앞의 세개가 특히 도시녹화와 관계되는 제도이다<sup>28)</sup>.

종합계획은 20년 정도의 장기적 목표로 한 장기계획서로 토지이용, 교통계획, 공공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정책목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 시의 시민 등의 이용에 기여하는 각종 공원의 배려, 수제선(水際線)의 보전, 곡부(谷部)녹지대의 보전 등을 포함한 공원녹지시스템을 나타내고 있어서 장래의 구상계획으로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역제는 주의 수권법을 받아서 각 시가 시민의 건강, 안전, 윤리 및 일반적인 복지를 유지·향수(享受)하기 위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위치, 규모, 형태, 용도 등을 지구마다 기준을 정하고 조례에 따라 규제하는 제도로서 우리 나라의 지역 지구제와 유사한 제도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공지

28) 丸田頼一, 1998 : 133.

확보에 적극적이고 녹화가능성의 여지가 단연 많다고 하겠다.

이 지역제는 미국을 통 털어 뉴욕을 시점으로 1916년에 제정되었는데, 1921년에는 전미 48도시, 1926년에는 425도시, 그리고 그 해, 지역제에 대한 승인이 있었는데, 연방최고재판소가 「커뮤니티의 유지, 보호 및 향상에 있어서 불가결」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 이 법리(法理)가 보다 확립되었기에 전 미국에 한층 파급되기에 이르렀다.

뉴욕시 지역제가 제정된 초기에는 주거, 상업과 용도구분의 미지정 지역이 있고 각 용도별 규제내용도 간결하다는 등을 이유로 몇 곳의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1961년 이후는 도표와 같은 내용이 되었다. 또한 여기에는 주거계 건물용도에 대해서만 나타나 있는데, 용도지역은 주거지역(R-1~R-10), 상업지역(C-1~C-8), 및 공업지역(M-1~M-3)의 합계 21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형태, 최소택지규모, 최소접도간구폭, 최고용적률, 최소공지율, 단위면적당 주거수, 단위면적당 방의 수, 전면(前面)의 벽면선(壁面線)후퇴폭의 합계, 측면의 벽면선후퇴의 최소폭(세트백), 측면의 벽면선후퇴폭의 합계, 측면의 벽면선후퇴의 최소폭, 주정(主庭)(후면)의 최소폭 등이 각 용도별로 규정되어 있다. 지역제 외에도 택지구획규제에 의한 제약에 의거하여, 공원의 계획적 배치나 식수 등이 이루어진다. 택지구획이란 하나의 택지를 양도 또는 건축을 위하여 두 개이상의 택지로 분할하는 행위인데, 이것을 민간업자 등이 하는 경우, 자치체가 이러한 개발기준을 정하여 의무를 부여한다.

## 6) 업무상업지 녹화

일반적으로 업무상업지를 미국에서는 다운타운이라고 부르는데 쇼핑센타가 교외에 위치하는 현상이 나타나 다운타운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대책이 강구되어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다운타운형성이 필요한데, 특히 보급되고 있는 시책으로는 종래의 차도를 녹도화하든지 또는 차의 직진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행(蛇行)한 일방도로의 차도를 포함하여 도로폭을 넓히고 거기에 식재(植栽)를 하는 수법이다<sup>29)</sup>.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수법을 어번몰(Urbanshops)이라 부르는데, 1959년 미시건주의 카라마즈시를 시작으로 그 후, 마이애미 비치시(1960년), 녹스비르시(1961년), 브레즈노시(1964년), 미네아폴리스시(1967년), 등으로 파급되어 비교적 규모가 큰 것만 해도 약 70건에 이른다. 이 경우는 차도를 배제하고 녹도화한 것으로 여기를 녹화하기 시작하여 분수, 휴식소, 놀이터, 파코라등의 시설을 배치하고 시계탑을 물의 심벌로 삼아 보행자 우선의 쾌적한 도시공간의 재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또 총공비 257만달러로 주로부터 75%의 보조와 시의 비용으로 완성되었다. 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캘리포니아주에는 캘리포니아몰법(California Mall Law 1960)이 있어 주로부터 원조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미국의 다른 사례로는 연방으로부터 보조가 있는 경우와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도입할 때 등, 다양한 자금조달방법을 볼 수 있다.

다음에서 드는 수법은 광장을 다운타운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신시내티시, 볼티모어시, 포트란드시등 미국 각지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도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의 사례가 유명하다. 여기에서도 다운타운의 쇠퇴를 막기 위하여 재개발이 구상되고 있는데 많은 수의 차도를 몰로 바꾸고 거점에 따라 광장을 만드는 아이디어는 1960년에 발표되었다. 그리고 저명한 조경가인 할프린(L.Halprin)씨가 중심이 되어 각각 약 1에이커의 광장을 3개 만들고 이와 연결하는 물을 정비하여, 1968년에 완성하였는데 그후, 이 지역 전체가 포틀랜드센타라 불리는 대기업, 고급 호텔, 상점 등의 상권이 형성되어 전미의 도시재개발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사례로 손꼽힌다. 3개의 광장은, 광장 주변에 소나무 등 다수의 키가 큰 나무를 배치하고 사람들이 분수 속으로 들어가 폭포를 탐색하는 러브조이 공원(Lovejoy Park), 18피트의 낙차를 자랑하는 폭포가 있는 포코트 플라자(Forecourt Plaza), 원구(圓丘)가 있는 나무그늘 밑의 휴식지로서의 기능을 가진 페티그로브 공원(Pettigrove Park)이다.

이상과 같이 업무상업지는 녹화에 의하여 단순히 심미성을 고양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운타운 전역의 경제적 내지는 사회적 활성화를 기대하게 되

---

29) 丸田頼一, 1998 : 136.

어, 일반적으로는 행정당국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중에는 뉴욕시의 파레이 공원(Paley park)이나 그린에크 공원(Greenacre Park)과 같이 개인자산가의 기부에 의하여 녹색광장이 정비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뉴욕시에서는 zoning규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민간 등의 건축주가 규정을 상회하는 녹화플라자를 설정하면 녹화플라자의 6배의 가산건축면적을 인정하는 bonus인센티브 정책에 의하여 녹화공간을 확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플라자의 규모 160㎡이상, 전면도로에 12m이상 면해 있을 것, 간(幹)직경(直徑)10cm<sup>2</sup>이상의 식수가 4그루이상, 플라자면적이 200㎡에서 600㎡까지는 60㎡당 1그루이상, 600㎡에서는 10그루를 가산하고, 100㎡를 넘을 때에는 1그루를 식재하는 일등, 플라자의 방위(方位), 시민 등의 휴식에 제공되는 의자, 벤취, 야간조명의 설치, 포장면의 재료 등, 수 많은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보너스인센티브의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록펠라센타 웨스트, IBM본사 플라자 등의 사례가 있다.

### 7) 공장녹화 협정

뉴욕시 지역제 개요의 표 중, 공업지역에 대한 것은 M1-M3에 나누어져 있다. M1은 일반적으로는 주거지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주로 사무소, 연구소, 도매관련 등 비공해형의 경공업, M2는 M1과 M3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가구, 석재, 금속품 조립 등에 관한 것, M3는 화학, 전력, 주조(鑄造) 등 중공업을 포함한 공해형 공업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부터 격리된 곳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M1-M3는 다시 세분화되어 앞서 말한 각종 규제내용은 다르지만 1구역의 최소대지 규모, 최고 용적률, 최대 건평률, 후정(後庭)최소폭, 최저주차대수 등을 정하여 녹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뉴욕시 이외의 각 도시에서도 공업지역이 크게 셋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통례인데, 시에 따라서는 전정전(前庭前)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최소폭을 35피트로 정하고 전정(前庭)의 녹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sup>30)</sup>.

30) 丸田賴一, 1998 : 138.

그런데 비공해형 공업의 집적지(M1)는 대부분 인더스트리얼 파크(공업 단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통례인데, 녹음으로 대체된 구역으로 유명하다. 예를 들면, 전국공업지역위원회가 인더스트리얼 파크를 「입지, 지형이나 지역적인 면에서 공업상의 이용으로 특화하고, 그것도 유틸리티나 교통의 측면에서 적지로 보여 관리통제되는 지역을 말한다. 즉, 건축물의 배치에 있어서도 그 전면, 측면 및 후면의 셋트백(벽면선후퇴)이 이루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특히 도로에 직면한 전정(前庭) 및 측정(測庭)은 협정기준에 따라 수경(修景)해야만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알 수 있다. 이 셋트백은 협정기준에 녹화수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각 기업이 인더스트리얼 파크에 진출할 때에, 임대나 분양에 관계없이 관리운영주체와 협정서를 교환하고, 협정내용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에는 텍사스주 더글라스시의 부룩홀로 인더스트리얼 파크(Brookhollow I.P., Dallas)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① 업종(공업, 연구소, 각종 사무소, 창고, 부동산회사, 음식점, 레크레이션 시설 등, 비공해형의 업종)
- ② 벽면선(壁面線)의 후퇴(셋트백)(억세스도로에 있어서는 40-50피트, 단지내의 간선도로 접도면은 단층 또는 2층 건물은 15피트, 3-4층 건물일 때에는 35피트, 5층 건물일 때에는 50피트)
- ③ 시공재료(건축물의 벽면처리는 벽돌로 하고, 알루미늄, 석면이나 철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④ 표식(표식은 건축물과 일체적으로 구축하고 옥상에 부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네온이나 회전식 표식도 인정하지 않는다)
- ⑤ 재료 치물(置物)·창고(사람 눈에 띄는 곳은 불가)
- ⑥ 옥상물의 서폐(庶蔽)(냉각탑, 천창, 환기탑 등의 서폐)
- ⑦ 주차장(공도(公道), 사도(私道)를 불문하고 노상주차 불허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시공)
- ⑧ 수경(택지의 측정(側庭) 또는 후정(後庭)의 5피트는 녹화에 의한 수경이 필요)
- ⑨ 조명(건축물에 대한 조경 불가결. 심야 12시까지 투광(投光))

- ⑩ 포도(鋪道)(각 택지내에 폭 4피트의 보도설치)
- ⑪ 유지관리(항상 택지구위의 공지나 건축물외벽의 미화수경에 힘쓸 것. 유지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관리회사가 주의를 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저비용을 그 기업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리회사는 30일 이내에 그 기업이 전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협정내용은 동종의 다른 인더스트리얼 파크에도 있고 비교적 엄격한 진출규정으로 되어 있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에서도 최대급 규모를 자랑하는 플로리다주 올랜드시의 올랜드 센트럴 파크(Orland Central Park, 4,000에이커)에서는 각 택지의 규모를 4/3에이커로 하는 한편, 각각 25%이상의 녹화가 필수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최소택지 규모를 규정하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는 녹화공간을 확보하는 일로 이어진다. 또한 셋트백의 거리도 강조되고 있는데 셋트백의 본질적 의의는 그 폭만큼 녹화공간이 확보된다는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 8) 가로수 등

가로수 식재의 목적은 녹음의 제공, 공기의 정화, 도시경관 질의 향상, 방재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특색이 없는 시가지 등에 그 지역의 독특한 식물을 심음으로서 우리들에게 활력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sup>31)</sup>.

뉴욕시에서는 플라타너스, 아메리카 느릅나무, 아메리카 쥐엄나무 등, 로스엔젤레스시에서는 모미지바스즈가케 나무, 워싱턴 야자, 유카리, 코바노가쥬마르, 서양 협죽도 등, 시카고시에서는 아메리카 느릅나무, 아메리카 떡갈나무, 핀오크, 플라타너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에서는 코코야자, 워싱턴야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안즈시에서는 라니브오크, 미국산딸나무등 각 지역 기후풍토의 영향을 받아 각자 독특한 시가지 경관이 연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가로수는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할 만큼, 시가지 구성에 없어

31) 丸田賴一, 1998 :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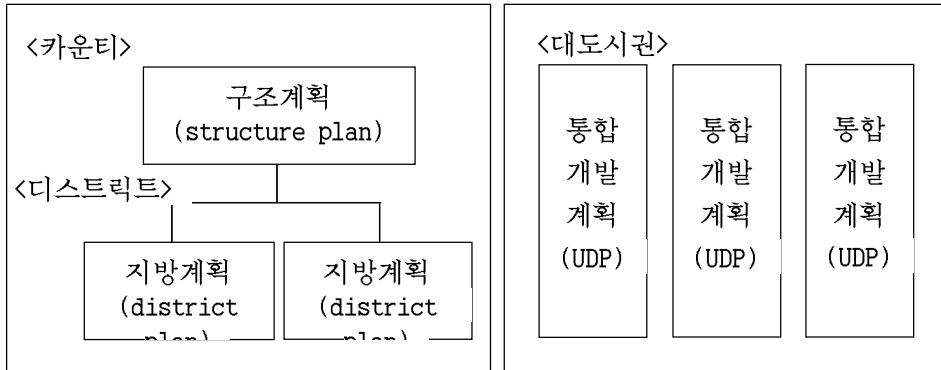
서는 안될 자연물이다. 따라서 각 시에서는 수종의 선정에서부터 양호한 생육이 이루어지도록 폭 넓은 보도폭을 구비하고, 뿌리의 발달을 돕도록 충분한 땅을 확보(지역에 따라서는 물 뿌리는 시설도 병치), 수관(樹冠)의 양감을 주기 위하여 주의 깊은 정자전정(整姿剪定)등 각종의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시당국이 식재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여기에 흥미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텍사스주 텔라스시는 한여름의 최고기온이 35℃를 넘는 더운 지역인데 여름의 녹음이나 사계절을 통하여 윤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심시가지의 가로수를 포함한 녹화에 힘을 쏟고 있다. 시와는 별도로 「수림경관 달라스(Treescape Dallas Lnc.)」라는 비영리단체를 달라스여자청년연맹과 중심업무지구협회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여, 활동 중에 있다. 추진단체에 의하여 기본구상은 입안되는데 가로수나 산책로의 정비와 유지관리에 비용을 쓰게되어 있다. 또한 구상에 의하면 중심시가지를 둘러싼 바깥주변 약 2만피트, 가로를 포함한 가로택지와 인접지가 녹화의 대상이 되는데, 고목(高木)이나 저목(低木)을 심고 녹음이 있는 회유(回遊)산책로를 정비해 가도록 되어 있다.

### 제 3 절 영 국

#### 1. 토지이용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

영국의 국토이용 계획체계는 1947년에 제정된 도시농촌계획법에 의한 도시·농촌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도시·농촌계획은 크게 전국계획지침(national planning guideline)과 지역지침(regional guideline), 구조계획(structure plan), 지방계획(local plan), 통합개발계획(unitary development plan)의 3가지로 구성된 2층 구조의 개발계획(development plan), 기타 지침(other guideline)의 네가지로 구성된다. (변병설 외, 2001)



자료: 박헌주 외(2000)

<그림> 영국 지방정부의 토지이용 계획체계

도시농촌계획법은 토지의 개발권을 국가에 부여하여 원칙적으로 계획허가 없이는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계획허가는 주무장관의 개발명령 (development order), 계획허가, 간이계획에 의한 자동계획허가(simplified planning zone scheme), 기업육성지구(enterprise zone) 지정에 의한 자동계획허가로 이루어진다. 개발사업과 건축용도 변경은 지방계획기관의 계획허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계획허가 여부는 개발계획의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허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첫째, 주요 국가 개발 및 산업설치를 위한 주무장관의 개발명령, 둘째, 디스트릭트의 신청에 의한 주무장관의 계획허가, 셋째, 계획간소화 지역계획(simplified planning zone scheme)의 채택·승인 및 계획변경에 의한 계획허가, 넷째, 지방계획청이 수립한 개발(지방)계획에 적합한 개발사업은 자동적으로 계획허가, 마지막으로 기업육성지구의 지정 및 수정·승인에 의한 계획허가 등이다.

## 2. 도시녹화

### 1) 공원·녹화

서구에 있어서 파크(park)란 단어의 역사는 오래인데, 옛날에는 왕후(王侯)의 수렵원(狩獵園)으로 거기에서 알현이나 사연(賜宴) 등이 베풀어

졌다. 기원전 3000년 슈메르인이 메소포타미아에 만든「한바바의 숲」이, 일설에는 기원전 1000년경 앗시리아의 「코르사바도」가 최고로 오래된 파크라고 말한다. 또한 구약성서의「에덴동산」이 신약성서에서는 「파라다이스」로 되지만 파라다이스는 고대 그리스어의 「파이리다에자」, 즉 주변을 둘러싼 토지=파크=수렵원으로부터 온 단어라고 말해진다. 이 수렵원(狩獵園)으로서 파크의 원류는 이후 영국에서 계승되어, 11세기이후에는 토지를 파크로서 둘러싸는 일에, 영국왕의 허가를 필요로 할 정도이다.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하이드파크(약 150ha)도 국왕 자신의 파크였지만, 브라운(L.Brown), 랩톤(H.Repton) 등이 만든 풍경양식의 수경방법도 귀족의 파크를 무대로 한 것이다. 19세기가 되어 이러한 파크는 국민들에게 개방되고, 공공의 소유 내지는 관리하에 놓이게 되어 「퍼블릭 파크」(Public Park)라 불리우고 이후 공원으로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것 이외에도 그리스 제도시의 「아고라」, 「스타디온」, 로마의 광장「피아츠아」, 「포람」등 에도 공원의 원류를 찾아 볼 수 있다<sup>32)</sup>.

영국에 있어서는 옛부터 시정촌의 공유지(커먼, Common)가 근린주민의 레크레이션장으로서 활용되어 왔고, 1866년에는 「수도 커먼법」(Metropolitan Commons Act), 1876년에는「커먼법」(Commons Act)이 제정되었을 정도이다. 그러나 커먼만으로는 주민의 레크레이션을 보장할 수 없어, 1875년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이 제정되면서 공공보도 및 유원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어, 도시의 공공시설속에서 공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법률은 몇번의 개정이 이루어져 예를 들면, 운동장, 수욕장(水浴場), 풀 등 부설의무도 기술되었는데, 이것은 공원의 기능을 정적뿐만 아니라 동적 측면도 중시하게 된 경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1906년에는 「오픈 스페이스법」(Open Space Act)이 제정되어 오픈 스페이스의 정의 속에 건평율을 5%이하로 명기한 것은 다른 나라들의 도시공원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07년에는 문화재, 자연경관지, 자연보호지 등의 보

32) 丸田頼一, 1998 : 168.

호를 목적으로 한 「내셔널트러스트법」(National Trust Act) 제정되었다.

1909년에는 「주거 및 도시계획 등 법」(Housing, Town Planning etc. Act)이 하워드(E. Howard)의 전원도시론, 독일 등의 영향을 받아서 제정되었다. 1925년에는 도시계획법이 주거법으로부터 분리되고 1932년에는 「도시·전원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이 된다. 동법에 의하여 용도지정, 건축물 주변의 공지 확보, 수목이나 수림의 보호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2차 대전 중부터 전후에 걸쳐서는 전원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한 스코트 위원회의 보고서, 아버크롬비(P. Abercrombie) 교수에 의한 런던던계획 보고서 등의 제출이 이루어졌다. 특히 후자는 런던시가지의 확장을 막자는 목적으로, 폭 약 10km에 이르는 녹지대(Green Belt)로 둘러쌌고 동시에 10개의 신도시를 그 외측에 건설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1947년 제정한 「도시·전원계획법」은 계획법과 토지법의 내용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계획청(현 내지는 특별시)에 의한 개발계획(Development Plan)과 프로그램의 작성, 그 주무대신에 의한 승인, 계획허가(Planning Permission)의 도입과 지방계획청의 허가재량 등의 특색이 있다. 1968년에 동법은 개정되어 스트럭취 플랜과 로컬 플랜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전자는 광범한 토지이용정책, 교통량처리대책, 물적 환경의 정비를 설명서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대신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녹지대는 여기에 포함된다. 한편, 후자는 스트럭취 플랜에 의해 제시된 일반적인 정책의 상세계획으로, 대신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원녹지는 여기에 포함되는데, 수목이나 수림의 보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1967년에는, 1957년에 도시나 전원의 수경을 목적으로 창설, 기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던 환경개선단체, 시빅 트러스트(Civic Trust)가 초안 작성에 참가한 「환경보전법」(The Civic Amenities Act 1967)이 제정되어 도시녹화와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 즉, 도시녹지외에 주된 영국 특유의 녹음보전 시책으로서 수목보존령(Tree Preservation Order)과 보전지역(Conservation Area)을 들 수 있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도시·전원계획법 1947」이래 지방계획청이 실시하는 「계획허가」의 제도에 의



해 운용되고 있다. 그것이 「환경보전법」의 제정에 기초가 되어 보다 강력  
한 것이 되었다고 한다.

수목보전령이란 지방계획청이 현존하는 수목, 수목의 집단, 삼림에 대하  
여 나무의 벌채, 가지치기나 자르기를 금지한다든지, 벌채의 허가를 내 줄  
때 재(再)식수의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독일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명확한 보존기준은 없다. 후자의 보전지역은 「환경보전법」에 기재되  
어 있는 내용으로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예를 들면,  
건축물, 정원, 공원 등이다. 그래서 동법에 의거하여 지정이 되면, 「계획허  
가」 때에는 보존 등에 대하여 제약을 받게 된다.

1974년에는 「도시·전원환경보전법」(Town and Amenities Act  
1974)이 제정되어 어메니티(amenities)의 관점에서 식목의 보호, 보전  
지역(Conservation Area)의 보전, 건조물의 보존 등을 보다 강고한 것  
으로 했으나, 1990년에는 「도시·전원계획법 1990」으로 계승되었다. 이  
상과 같이 영국의 도시녹화 역사는, 공원의 원류를 포함하면 긴 역사가 된  
다. 어메니티확보의 시점에서, 도시 및 전원지역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  
서, 각종의 시책이 시대와 함께 시행된 것이 특히 눈을 끈다.

## 2) 퀴왕립식물원

영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명한 식물원으로 퀴왕립식물원(Royal  
Botanic Gardens, kew)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퀴 가든(Kew  
Gardens)으로 불리우고 있다. 현재의 것은 런던으로부터 남서 약 16km  
의 템즈강 하반(河畔)에 있는데, 면적 약 121ha이다. 1730년경, 웰즈왕  
자에 의해 세워지고 그가 죽은 후인 1759년, 미망인 웰즈왕녀 오거스타  
(Augusta)에 의하여 3.5ha로 확장되었다. 그후 샤롯데왕과 왕녀(King  
and Queen Charlotte), 임시 원장인 방크경(Sir J. Banks), 주석정  
원사인 에이튼(W. Alton)의 진력에 의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리고 1770년대에는 건축가 겸 조원가로 유명한 챔버스경(Sir W.  
Chambers)에 의하여 중국탑, 오란제리 등의 건축적 배려도 더하여졌  
다<sup>33)</sup>.

1941년에는 일반에 공개됨과 함께 이후, 왕실이나 정부의 원조에 의하여 한층 확장과 정비가 행해져 현재의 규모와 설비에 이르게 되었다. 본원에는 평탄한 지형을 이용한 잔디밭 안에, 수 많은 고목(高木), 수목원, 화단, 표본식물원, 대온실(범 하우스, 템퍼레이터 하우스, 프린세스 오브 웰즈 콘서버터리 등)이 있어 국민의 식물조사의 장으로서 기능 할 뿐만 아니라, 25,000종 이상의 식물, 700만장을 넘는 표본이 전세계로부터 수집되어, 식물분류학의 연구기관으로서 유명하다. 특히 식물자료표본관(하버리움)은 세계 최대이다. 연간 100만인 이상의 내방객이 있어 국민의 레크레이션장으로서 친숙한 식물원임과 동시에, 수준 높은 연구실적이 나오는 것은 장년에 걸친 왕실, 정부, 국민 등의 지지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도시녹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면도 대단히 크다.

### 3) 첼시 플라워 쇼(Chelsea Flower Show)

영국에서는 1913년이래 과거 약 80년간 해마다 봄에 열리는 꽃과 정원의 전통적 이벤트가 있다. 그것은 영국의 템즈강변에서 열려 세계중의 원예가가 모이는,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첼시 플라워 쇼이다. 장년, 최첨단의 원예기술, 과학, 교육과 산업을 내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으로 왕립 원예학회(Royal Horticultural Society)가 주관하여 통상, 럭비나 테니스 등을 하는 로얄·호스피탈·그라운드를 일정기간 빌려 여는 것이다<sup>34)</sup>. 개최 그라운드는 매년 4월 최후의 화요일부터 40일간, 협회에 대출되어 준비와 뒷마무리에 쓰여진다. 회장은 세계 최대규모(1.4ha)인 대형 텐트를 중심으로 주변에 야외전시 존과 일체가 되어 구성되어 있다. 텐트 내는 약 200여의 업자인 대학, 원예서클 등에 의하여 꽃, 소채(蔬菜), 일반식물의 식물전시뿐만이 아니라, 과학이나 교육의 소개도 행해지며 종자 등도 팔고 있다. 혼잡방지를 위하여 텐트 내에서는 일방통행 등의 동선사의 배려가 이루어질 정도이다.

한편, 야외에도 약 250의 코너로 구획되어 원예, 가든·퍼니처, 온실,

33) 丸田頼一, 1998: 170.

34) 丸田頼一, 1998 : 174.

정원기계, 용구, 원예도서 등의 전시와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준비에 시간을 들여 초화를 다용(多用)한 수 많은 업자에 의한 견본정원은 실로 볼만한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다. 기타, 내쇼널 트러스트 등에 의한 단체소개나 도서 등 판매 코너가 100이상을 넘는 것도 특징적이다.

매년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캐나다, 아메리카 등 해외로부터의 출전도 있어, 모든 전매권이 완매될 정도로 대단한 성황을 이룬다. 영국의 원예문화·정원문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첼시 플라워 쇼, 열광적인 입장자와 일체가 된 대회장의 성황도 그렇거니와, 도시녹화를 지탱해 온 시민과의 연결고리를 이벤트화 한 점에 주목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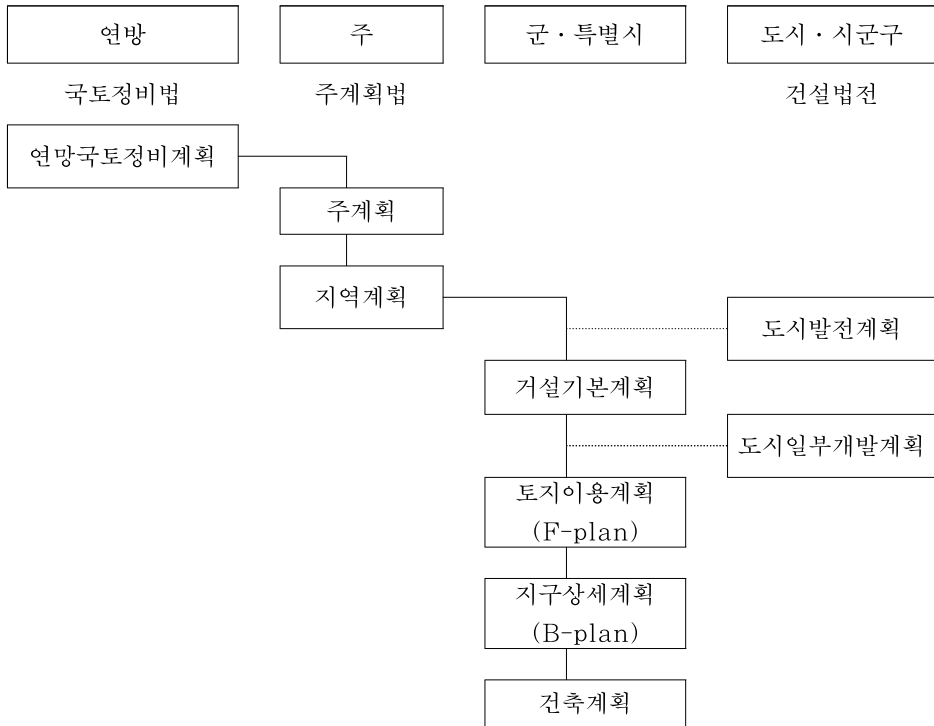
## 제 4 절 독 일

### 1. 토지이용계획

독일은 연방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행정구조를 살펴보면 연방정부 아래 주, 군·특별시, 도시·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다. 시군구는 가장 기초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 독일의 공간계획은 국토정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연방국토정비계획, 주의 공간정비프로그램인 주계획, 주의 일정지역 또는 여러 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계획과 지자체의 건설기본계획(Bauleitplan)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5)</sup>.

---

35) 변병설 외,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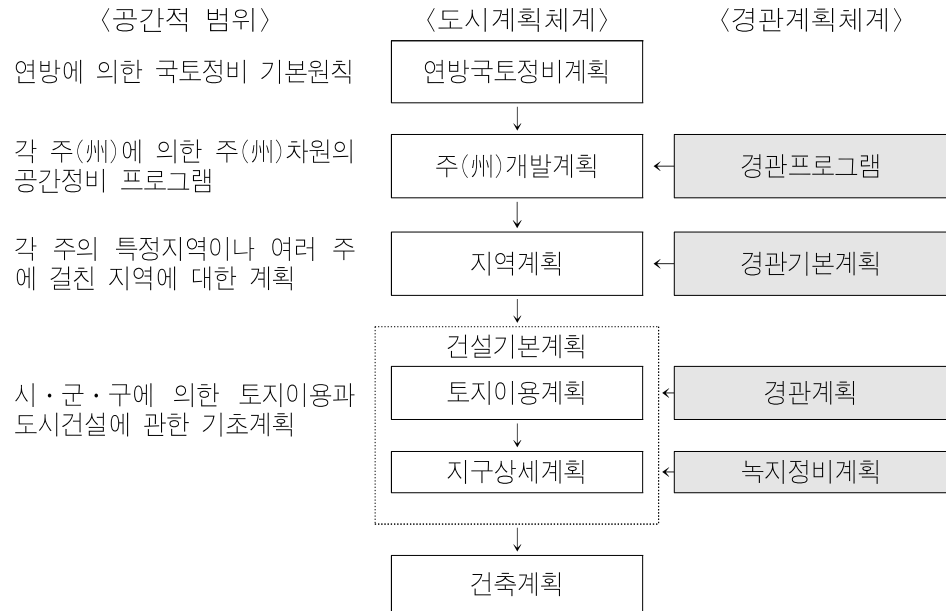


자료: 박헌주 외(2000)

〈그림〉 독일의 국토이용 계획제도

독일에서는 환경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개발과 환경문제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제도 및 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독일에서는 1935년에 자연보호법을 도입하였다. 당시 자연보호법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한정된 대상물 또는 특정 동식물 보호를 위주로 한 부분계획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자연환경의 파괴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1976년 12월 20일 자연보호법을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그 결과 자연보호법은 한정된 부분계획에서 탈피하여 전체 공간계획 시스템 속에서 인간 생활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획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연

환경보전 및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 전체 공간계획 시스템과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은 경관계획과 침해규정 및 보호구역 설정이다.



자료: 이상문 외(2000)

〈그림〉 독일의 공간계획과 경관계획의 관계

## 2. 경관보호 · 자연보호

연방자연보호법(제1조)에 의한 자연보호와 경관관리의 목표는 정주와 비정주지 즉, 전체지역에 적용이 되나 특정한 경계를 가지는 지역에서 자연보호의 목적을 우선하는 것도 효과적인 자연 및 경관관리 방안이다. 독일에서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통해 자연 및 경관관리를 도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 7가지 유형이 있다. 독일 자연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 연방차원에서 대표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에 대한 자연보호 프로젝트, 주의 자연보호 프로그램, 유럽연합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국제적인 합의와 프로그램에 의한 보호구역, 지역적 합의에 의한 보호구역, 연방의 비오톱 연결 시스템이 있다.

독일의 삼림파괴로부터의 재출발은 어려웠지만 국민참가에 의한 그 후의 회복은 빨라 오늘날 볼 수 있는, 녹음에 둘러 쌓인 아름다운 국토가 되었다. 거기에는 1904년 베를린 국립음악학교의 루돌프(Rudorff, E.)가 독일 향토의 자연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성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토에 걸쳐 국민운동을 전개시킨 영향력이 스위스 등 유럽 여러 국가에 미치게 된 점이나, 1961년에 공포된 「마이나워의 녹색헌장」, 그 후 법제도의 정비에 의한 국가적 보조도 음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이나워의 녹색헌장」이란 베르나도트 백작(Graf Bernadotte L.)의 주선으로 남부독일 보덴 호반(湖畔)의 마이나워에 국회의원, 주의회의원과 전문가가 결집하여 5년간의 걸친 토의를 집대성한 성과이다. 그것은 독일 연방기본법(헌법)과의 대응하는 것으로, 생활권의 보장을 대기, 토양, 물, 기후, 동식물이나 랜드스캐프의 보전면으로부터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정비, 계획의 입안이나 행동이 불가결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이어받아 당시의 서독일 수상을 명예회장, 베르나도트백작을 회장으로 하는 국토보전심의회가 열려「랜드스캐프보전에 관한 입법초치의 지침」에 대하여, 1967년에는 답신이 이어졌다. 그 후, 주(州)단위의 자연보호·랜드스캐프보전법이 연이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sup>36)</sup>.

이상과 같은 성과와 경위를 거쳐, 1976년에는 「연방자연보호·랜드스케이프보전법」(Gesetz ue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는 인간생존기반의 확보와 레크레이션활동을 위하여 자연과 랜드스캐프의 보전·보호가 중요하고, 그 결과 자연 수지(收支)가 맞춰짐과 동시에 자연자원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자연이나 랜드스캐프의 다양성, 고유성, 아름다움이 유지된다는 내용이 취지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본 법을 이어서 각 주의 법률이 제정, 개정되어 각시에서도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이 입안되어 실지로 행해지고 있다(독일에는 1935년 제정된「국가자연보호법」이 있었다.)

36) 丸田頼一, 1998 : 150.

신법의 제정에 따라 주거, 공업, 공급처리 등의 토지이용계획과 같은 레벨로 녹지랜드스캐프보호지역, 자연보호지역, 천연기념물, 비오토프(Biotop) 등이 지정된 특색도 있지만 랜드스캐프보호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광대한 시가지 근교림이나 장래의 수림지를 꿈꾸어, 현재의 농업지에 폭 넓게 지정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녹지정비·자연보호계(系)의 용도만을 추출해 낸 계획은 「랜드스캐프 계획」(Landschaftsplan)이라 불리고 있는데, 랜드스캐프(Landschaft)이란 단어에는 생태학적 개념을 기조로 한 총체적인 질서개념을 포함하며, 사물을 단순히 심미적 내지는 감각적으로 파악하는 「경관」이라는 번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제도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적기 때문에 점 모양으로 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또 도시공원 등의 공원도 구릉지나 사면지에 배치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동시설 등 평탄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기존의 녹음을 파괴하는 일도 종종 있다. 따라서 공원의 배치에 있어서도 어떠한 성격의 공원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성에 맞는 입지환경을 선정하지 않으면 안되며, 사면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도시녹화

#### 1) 비오토프형성

랜드스케이프 계획 중의 공원의 정비나 랜드스케이프보호지역, 자연보호지역, 천연기념물의 설정에 있어서는 비오토프 조사도 불가결하다. 비오토프(Biotop)란 학술적으로는 “생물권의 지역적인 기본단위”를 가리키며 생물적 가치가 높은 종(種), 군집이나 그에 관련된 지질 등이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칼스 루에에서는 식생, 양서류, 파충류, 곤충, 조류와 지질이 루르 지역자치단체조합에서는 고립목, 용수, 암석, 표석(漂石)으로 나누고 있고 지역의 자연적 특성에 따라서 보호의 대상이 다르며, 사실, 보다 광의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즉, 시가지에는 잡초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공원이나 하천둑의 잔디의 관리를 일부러 하지 않음으로써 잡초를 우선적으로 나게 한다거나 공원 등에 자연수의 웅덩이를 만듦으로써 다양성과 고유성을 갖춘 생물사회가 형성되고 도시생태계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오토프 공간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sup>37)</sup>.

독일에는 칼스 루에의 중소하천, 프링천과 같이 하천유역의 주민이 매년 한차례의 홍수를 각오하고 자연생태지향의 개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슈트트가르트를 흐르는 대하천, 넷카-천의 하천재개수가 흥미를 끈다. 하천의 수질정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하천과 생물과의 공존(비오토프)문제가 클로우즈업되어, 콘크리트호안을 자연석으로 교체하면서 하천바닥을 함께 고려하여 자연풍의 얇은 개천을 만들어 동물과의 공존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공공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으로부터의 원조를 얻어, 연장 600미터의 사진과 같은 재개수를 실현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단지 자연생태지향의 호안으로 개수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하천이 갖는 의의를 깊이 생각하여 하천바닥을 포함하여 하천구역전체를 생물이나 레크레이션면에서 다시 바로 잡아 재개수하는 각오도 필요하다.

## 2) 큰나무의 보호

큰나무의 보호에 대해서는 독일의 각 시에 식수보호조례가 있어서 참고가 된다. 즉, 호두나무 밤나무 등의 특수한 수목이나 묘포(苗圃)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칼스 루에, 뮌헨, 비스바덴 등의 도시에서는 지상 1m의 높이에 대하여 둘레 80cm(직경25.5cm)이상, 프랑크푸르트, 에센 등의 도시에서는 둘레 60cm(직경 19.1cm) 이상인 모든 식수는 각 시의 조례에 의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고, 칼-스 루-애와 같이 둘레 30cm(직경 9.6cm)라도 동일장소에 4그루이상 있으면 같은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느 도시의 조례에서나 벌칙규정을 두고 있고 허가 없이 벌채를 하면 최고액, 칼스 루에, 프랑크푸르트 등에서는 10만 마르크, 에센 등에서는 5만 마르크, 뮌헨 등에서는 2만 마르크의 벌금을 내게 된다<sup>38)</sup>.

각 시의 시민은 이 수목보호조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건물의 신개축 등을 행할 때면, 사전에 전화로 시공원국에 문의를 하고 나서 계획을

37) 丸田頼一, 1998 : 151.

38) 丸田頼一, 1998 : 153.



입안하고 건축허가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통례이다.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이식이나 가지치기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큰 나무 우선의 신개축 계획이 되는 결과 녹음에 둘러 쌓인 시가지경관이 창출되게 된다.

이와 같이 현재 존재하는 큰 나무를 남기는 것이 선결문제 이지만 큰 나무를 육성하는 데에는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낙엽, 그늘 등의 문제도 있고 근린주민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또 건축가, 토목건축업자 등의 이해나 전정(剪定)에 있어서도 나무의 키를 의식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등, 큰 나무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엄격하다.

### 3) 지구계획과 녹음의 보전·녹화

독일에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토지이용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하여, 거기에 건축물이용의 종류(용도구분), 건축물이용의 이용율, 구역적 교통 및 지역간선교통로선을 위한 용지 등이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하여 시정촌조례로서 건축적 이용의 종별·이용율, 건축형식, 택지의 최소규모, 건조물의 높이, 건축택지내의 파킹·차고, 공공용지, 공지, 교통용지, 공급시설용지, 하수·쓰레기 처리장 용지, 공원, 녹지, 아동유원, 식수, 농지·삼림 등을 통상 축척 1/500 내지는 1/1000도면에 기호, 주석을 표시하고, 시민과의 관계에서 토지이용가능성의 종류와 범위를 구속적으로 정하는 지구 상세 계획제도를 적용하여, 그 후의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sup>39)</sup>.

지구 상세 계획의 실시에 있어서 공원, 광장, 식수 등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와 녹음의 보전·녹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지구상세계획과 관련하여 녹지정비계획이 늘 입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현황의 지형, 식생 등 자연조건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축물의 동(棟)배치, 교통용지, 파킹·차고, 공급시설용지, 하수·쓰레기처리장과의 관련성을 배려하여, 정해진 오픈 스페이스와 녹음의 기본계획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원, 녹지, 광장, 공지, 식수 등의 배치와 지침이 중심이 된다.

녹지정비계획은 단순히「공지」에 대한 녹화계획이 아니고, 전술한 「랜드

39) 丸田頼一, 1998 : 154.

스캐프계획」이나「식수보호조례」와의 관련성도 중시함과 함께, 생태학적 측면이나 레크레이션계획 등의 제지식을 가미하여 건축 등 타분야와의 공동작업에 의하여 책정되는 사이트플래닝책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나무를 고려한다든지, 자동차소음을 경감시키기 위한 차단 녹지를 제안한다든지, 도시기후와의 관련성으로부터 청정한 공기를 주변으로부터 불러넣기 위하여 동배치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킨 후에 녹지정비계획이 입안된다.

지구 상세 계획의 대상은 시가지 전역에 해당되는데 주택단지, 공장, 클라인가든, 묘지 등이 특히 많다. 주택단지는 사택, 테베로빠, 공영 등이 있는데 건수가 많은 민영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원, 차단녹지, 광장, 가로수 등의 녹음과 오픈 스페이스를 공공측이 정비하고, 지구 상세 계획의「유도」에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한편, 동사이의 공지녹화를 의무화한다든지, 식수명령을 구사한다든지, 정해진 위치의 고목식재(경우에 따라서는 수종이 지정된다)를 민간측에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실정이다.

독일의 민유지녹화의 사례로서 프랑크푸르트, 뮌헨 등과 같이 앞 뜰, 가운데 뜰, 뒷 뜰, 옥상정원, 창가의 녹화, 발코니녹화, 벽면녹화 등의 방법과 수법에 대하여 시각에 호소하는 팜플렛을 각 가정에 배포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위와 관련된 컨테스트를 매년 실시하는 방법 등이 있음을 부기 해 둔다.

#### 4) 공 원

독일의 공원정비 중에서 가장 빨리 이루어진 것은 뮌헨의 이자르강 하안에 만들어진「英國庭園」이라고 하는데, 이 공사는 1804년부터 1832년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각 도시에서는 성벽을 헐어낸 후 공원화하는 경우도 많아서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에서는 1807년에서 1811년 사이에 공원으로 변화였다<sup>40)</sup>.

그러나 본격적인 도시공원정비는 제1차대전이후의 일로서 특히 국민의 체력증강의 관점이 중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대표적 공원은 렉사

40) 丸田頼一, 1998 : 156.

(L.Lesser)가 제창한 국민공원(Volkspark)으로 1910년 독일의 도시회 의에서 그 표준이 채택되었다. 그리고「공원이란 산책용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 모든 계급의 호외(戶外)휴게소, 유희장, 운동장, 관광휴양장이다.」고 정의되고,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최저 1개를 본(本)정원으로 정비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그 후 각지 약 10ha이상의 공원이 건설되었다. 이 밖에 정적 레크레이션 기능을 중시하여 만들어진「도시공원」(Stadtpark)과 슈레버박사에 의하여 제창되어 시민의 건강유지에 유익한 「클라인가든」도 제 1차대전 이후에 발달한 것이다.

한편, 독일 각지에 있어서는 1860년 이후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정원 박람회 내지는 원예박람회가 사리(砂利)채굴적지 등 미이용지에서 개최되어 그것을 기점으로 도시공원이 신설되는 경우도 많았다. 수 많은 독일의 현대공원의 특징으로서 들 수 있는 것은 지형의 조형, 대규모적인 화단의 설치, 자연생태계를 존중한 식재계획과 그 관리 등이다.

## 5) 도시림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에는 공원외에 도시림(Stadtwald)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독일의 도시림이 유명하다. 시가지의 교외에 입지하여 주말을 중심으로 산책, 조깅, 승마, 사이클링 등 레크레이션에 이용됨과 함께 시가지에 청정한, 그리고 여름에는 청량한 공기를 제공해 주는 원천으로서 도 기능하고 있다. 그것도 100ha정도의 원시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수천ha에 이른다<sup>41)</sup>.

프랑크푸르트공항 주변의 프랑크푸르트 도시림도 4,200ha의 웅장함을 자랑한다. 이전에 카를24세의 왕실림이었던 것이 1372년 왕실의 재정궁핍에 의하여 사유재산이 된 것이다. 그 후 돼지를 임내에 방목하고 연료, 건축용재로 벌채하기도 하여 황폐한 시대도 있었지만, 1830년 이후는 시민의 레크레이션장으로서 떡갈나무류나 소나무, 너도밤나무를 이용한 수경식재가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일의 도시에서 도시림은 전술한 「연방자연보호·랜즈스캐프보호법」의 랜즈스케이프보호지역으로 규정되어 보

41) 丸田頼一, 1998 : 157.

호·육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 6) 작은정원

유럽의 작은정원(클라인 가든)은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등 각국에 걸쳐 있으며, 각자의 국정에 의해 그 배경이나 보급, 계발방법은 다르지만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발상지는 현재의 독일, 라이프찌히이다. 정신과의인 슈레버(Dr.D.G.M.Schreber 1808-1861)박사뿐만이 아니라 라이프찌히의 교육학자인 하우스리트(Dr.E.L.Haushild)등의 노력에 의하여 독일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에 퍼졌다. 당초 그들의 생각은 어린이와 흙, 농작물 등 자연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시작하여, 후에 가족단위로 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듯 하다<sup>42)</sup>.

그 후 슈레버 박사 사후인 1864년에 슈레버협회가 설립되고, 1896년에 그 본부사무소가 세워져 라이프찌히뿐만이 아니라 전유럽의 클라인 가든운동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사무소는 1992년 수복되어, 클라인 가든 내방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비어·레스토랑이 병설되는 한편, 클라인 가든 창설기의 사진, 제자료, 작업기재 등도 자료실에 전시되어 있다.

그가 죽은 후, 1919년에는 「클라인 가든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이 된 것은 시민 채원(菜園)이 청소년 교육 측면에 유효하다는 점과 취미와 실익을 같이 거둘 수 있어 전국토에 보급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에 기초하여 정의, 목적, 임차권의 확보, 최고임대액, 시민에의 임대절차, 1구획의 규모 등이 명확히 마련되었다.

동법률에 의하면 클라인 가든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용 농정원(農庭園)으로 토지소유는 타인의 것으로, 그것을 일정기간 일정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소작관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률에 의하여 공공단체 또는 공익단체가 10년이내의 기간을 한도로 협회 또는 조합이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을 하고, 그 회원에 대하여 구획을 비영리로 전대하는 것으로 정하여졌다. 건강관리상의 측면 외에도 공공체 의식의

42) 丸田賴一, 1998 : 158.

향상, 식물의 육성을 통한 환경학습상의 효과나 도덕면의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동법에 의하면 1구획의 규모는 100-500m<sup>2</sup>, 평균 300m<sup>2</sup>로 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클라인 가든을 환경사상양육의 원점으로 생각함과 함께 시민의 레크레이션장으로서 정비추진에 노력해 왔다. 시가화구역내 농지의 시민채원화에는 어린이에 대한 환경학습, 가족단위의 레크레이션, 시가지환경의 보전 등 많은 의의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재원을 확보하면서 정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현재 라이프찌히에는 965ha, 1인당 18.9m<sup>2</sup>, 같은 구동독의 도레스텐에서는 1,108ha의 클라인 가든이 있지만 1인당 21.2m<sup>2</sup>밖에 되지 않아 구동독의 도시보다 월등히 많음을 부기해 둔다.

#### 7) 교통망의 지하화, 반지하화, 터널화와 상부의 녹지화

간선도로나 철도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소음, 진동, 대기오염, 지역분단 등 다양한 곳까지 미친다. 이러한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교통대를 폭넓게 다루어, 주변을 식수로 둘러 싼다든지 도로, 철도를 지하화 내지는 반지하화시키는 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 시애틀의 프리웨이 상부를 공원으로 할 것을 주나 시에 건의하고 스스로 검토한, 할프린(L.Halprin)의 프리웨이 파크는 유명하다<sup>43)</sup>.

최근에는 독일 각지에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지하 또는 반지하화시켜, 상부를 녹지 등으로 하는 시도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뒤셀도르프의 뒤셀도르프대학지구는, 연장 870m의 아웃번을 터널화함으로서, 그 상부에 7ha의 녹지를 산출하여 비오톱공간으로 보전하고 있다. 성토는 60-90cm이고 연 1회의 잔디 깎기로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녹지는 연결공원(Netzpark)으로 불리는데, 아웃번설치에 따른 환경악화를 개선시킴과 함께, 녹지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 연장 1,070m의 아웃번을 반지하식의 터널로 하고, 상부를 녹지화함과 동시에 하천을 이용하여 아웃번 인접지를 시의 공원으로 한 공항 터널지구의 예가 있다. 현재 공사중인 것으로는 도심부의 재개발과 녹지화

43) 丸田頼一, 1998: 167.

를 겸하여, 아웃번을 지하로 하고, 상부에는 25층 초고층 빌딩 등을 포함한 오피스거리, 하안녹지 등으로 하는 27ha에 이르는 일대 프로젝트인, 라인 하반(河畔) 터널지구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아웃번을 터널화시키고, 그 상부를 녹지화하는 사업은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하노버, 베를린 등의 도시에서도 볼 수 있다.

## 제 5 절 브라질 : 꾸리찌바市

### 1. 하드웨어

#### 1) 도시계획·토지이용

1940년에 마련된 아가쉬계획(Agache Plan)은 17세기에 식민지로 개척되었던 꾸리찌바를 체계적으로 재단한 최초의 구상이었다. 브라질 남부의 최대도시 꾸리찌바는 19세기 중반까지도 조그마한 마을에 불과하였다. 아가쉬계획은 꾸리찌바를 시민센터(Civic Center), 군사지역, 산업구역·상업구역 및 서비스구역과 같은 특별구역들로 연결된 넓은 가로를 중심으로 방사선형 도시 발전틀을 짰다. 1960년대 브라질은 정치경제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도시성장의 속도는 도시이주를 가속화시켰다. 이에 따라 꾸리찌바는 아가쉬계획의 실행이 끝나기도 전에 도시의 틀을 다시 짜야 할 필요를 느꼈다. 도시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기본지침을 담은 '초기 도시발전계획'(Preliminary Urban Development Plan)이 공개경쟁을 거쳐 채택되었다. 이 발전계획은 남북과 동서 방향을 따라 밀도(density)가 증가되는 선형축(linear axe)에 공공운송과 도로시스템 및 토지이용을 연계하는 구조를 취하였다.<sup>44)</sup>

1965년 12월부터 시작된 초기도시발전계획(PUDP)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연구소(IPPUC)가 설립되었는데 이 연구소는 꾸리찌바 도시계획의 본산으로 자리잡았다. 이 때부터 꾸리찌바에서는 일련의 도시개혁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인구 60만명 정도였던 꾸리찌바는 이후 브라질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을 이룬 도시로 변모하였다. 도시계획연구소는 다양

44) IPPUC, "the Agache Plan" *CURITIBA*(1999), Pp.3~5.

한 전문가 집단을 조직하였다. 건축가, 엔지니어, 사회학자, 역사학자 및 경제학자들이 모여 도시의 성장지침에 해당하는 주요지표들을 연구·토의하고 문서화하였다. 도시개발정책에 관여한 전문가들의 학제적 협력과 창의성 덕분에 이 연구소는 '계획학교'(School of Planning)로 알려졌다. 꾸리찌바는 성장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사람들은 인간적 규모(human scale)로 재단된 도시공간을 통하여 정체감을 얻었다. 변화의 주역으로서 도시계획연구소의 업무수행은 종합계획(master plan)의 이행을 확보하는데 기초가 되었고 계획도시로서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꾸리찌바는 한국에서 '꿈의 도시'로<sup>45)</sup> 알려져 있을 만큼 훌륭한 도시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상상만큼 '아름다운' 도시는 아니다. 꾸리찌바는 기능적 측면에서 뛰어난 도시이다. 외곽에서 도심까지의 진입이 용이하고 토지이용(uso do solo)계획에 따라 용도별 구획이 잘 된 도시이다. 꾸리찌바는 한국의 신도시들처럼 계획도시이지만 '급조된' 도시가 아니라 반세기 이상의 성장의 역사를 지닌 도시이다. 꾸리찌바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서울이나 경주처럼 역사적 고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획적 도시성장이 가능하였다. 역사적 건조물이 많고 사유재산권 보장이 철저한 한국의 도시들이 도로를 확장하고 도심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한편 변두리에 부심을 새로 개발하는 선에서 도시계획을 그치는데 비하여 꾸리찌바는 먼저 간선도로축을 정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건설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도시계획이 가능하였다.

## 2) 건 축

생태도시를 이야기하면서 흔히 건축을 빠뜨린다. 그러나 건축은 스카이라인과 도시미관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이다. 꾸리찌바에서는 건축가들이 도시계획에 많이 참여하였다. 꾸리찌바의 건축물들은 그들이 위치한 지역의

---

45) 한국에 꾸리찌바를 체계적·심층적으로 소개한 자료들로서는, 박용남, '꿈의 도시 꾸리찌바'(이후출판사 : 2000) ; 생태도시연수단, '해외연수 생태도시 꾸리찌바'(서울특별시의회 : 2000·8)을 참조. 기획취재기사로서는, 최장원, "생태도시/브라질 꾸리찌바市(上)" 朝鮮日報 2001년 3월 5일자 제11면 ; "생태도시/브라질 꾸리찌바市(下)" 朝鮮日報 2001년 3월 20일자 제9면, 참조.

특성을 잘 반영한다. 서로 다른 용도의 건물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중심상가는 어느 도시들처럼 빌딩 숲을 이루고 있다. 특별히 높거나 거대하여 도시 전체를 장악하는 빌딩은 거의 없다. 우리는 물신 사상에 젖어 자기도 모르게 “세계최대” 또는 “국내최대”와 같은 수식어들에 익숙해져 있다. 뉴욕, 서울, 싱가포르, 홍콩 등 인구밀집 도시들은 거의 예외 없이 초고층 건축을 지향한다. 초고층화는 높은 토지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꾸리찌바는 이러한 경향과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꾸리찌바 중심가의 빌딩들은 - 역시 콘크리트이지만 - 맨하탄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위압감을 주지 않는다. 런던의 신시가지들이 주는 산만함도 보기 어렵다. 도시계획연구소(IPPUC)의 건물군도 마치 작고 아담한 몇 채의 별장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

꾸리찌바에도 아파트먼트들이 많다. 시민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시내의 일반 단독주택들은 치안문제 때문에 높은 철창으로 둘러싸 거북스럽게 보인다. 아파트들은 일반 사무실 빌딩들처럼 대부분 위로 좁게 올라갔다. 대부분 출입구가 1개이고 거기에 경비실이 있어 방범에 유리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물론 없고 같은 모양의 아파트도 찾아볼 수 없다. 건축 설계비가 싸서 구태여 같은 모양의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고 시민들 또한 같은 모양의 건물에의 입주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가끔 쌍둥이 중형 아파트들도 눈에 띈다. 사무용 빌딩들의 외관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낡았다. 도색을 한 표시가 거의 나지 않는다. 건물주들이 도색에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나즈막한 건물들 벽이나 담장에는 의외로 낙서가 많다. 심한 경우는 담장 전체가 낙서판이다. 페인트로 울긋불긋하게 칠하여 보기가 흉하다. 물론 벽화도 더러 있다. 그러나 낙서는 확실히 욕에 티이다.

### 3) 공원·녹지

아열대의 밀림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곳곳의 도심공원들은 꾸리찌바의 자랑이다. 도심의 공원들은 유원지형 공원과 정원형 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원지형 공원들은 크고 작은 연못들과 울창한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다. 낮에도 어둑어둑할 만큼 녹음이 짙다. 연못들의 물은 별로 깨끗



하지 않다. 앵무새등과 같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야생 동물들이 여러 종 우리에게 갇혀 있다. 손수건(?)보다 조금 큰 정원형 공원들은 거리의 코너나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만들었는데 주로 나무를 심기 위하여 조성되었다. 꾸리찌바 사람들이 나무심기에 쏟는 정성은 정평이 나 있다. 나무심기에는 제도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모든 나무들이 그루 단위로 관리되고 있다. 같은 나라 안에서 한 쪽은 열심히 밀림(아마존)을 황폐화시키고 다른 쪽은 열심히 나무를 심는 역설이 존재한다.

공원들은 꾸리찌바의 녹지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도심에서 공항 방향으로 한 참 떨어져 있는 식물원도 역사가 일천하지만 넓은 녹지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식물원치고는 투자가 부족하여 표본수가 너무 빈약하다. 한편 시외곽 지대의 공원은 문화유산의 빈약함을 자연유산의 풍요로움으로 대체할 만하다. 꾸리찌바 외곽의 바리귀 공원(1976년 개장)은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바리귀(Barigüi) 공원은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함 대신에 시원시원한 느낌을 준다. 커다란 호수와 산림지대 및 유원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수는 수질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호수 주변의 유원지에는 간단한 놀이기구가 갖추어져 있고 잔디밭 가운데 원두막처럼 보이는 구조물들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다. 주변에 급수시설을 갖춘 원두막에서는 시민들이 고기를 구워먹고 놀 수 있다. 한국의 정서와 비슷하다.

유원지 뒤 쪽으로 돌아가면 아주 넓은 공동묘지가 나타난다. 이를테면 '공원묘지'이다. 놀랍게도 묘역 전체가 초원이다. 화장터가 보이지는 않는다. 묘들은 모두 평장이어서 무덤(봉분)이 없다. 비석도 없다. 각각의 묘 위에 고인의 신원을 기록한 작은 금속판이 덮여있을 뿐이다. 가족묘도 많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묘 옆에 자기가 들어갈 묘를 미리 사 두기도 한다. 잔디밭 가운데에는 드문 드문 나무가 한 그루씩 심어져 있다. 바리귀 공원묘지는 문자 그대로 '공원'묘지이다. 전체적으로 초원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주는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묘지 자체가 녹지이기 때문에 '환경파괴' 시비가 없다. 장묘문화를 개선한다면서 죽음에 대한 의식과 전통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화장으로 유도한다는 장묘정책 때문에 곳곳에서 화장터와 납골당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

과 대조적이다.

## 2. 소프트웨어

### 1) 인적자원

1990년대 이후 꾸리찌바에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수 많은 찬사들은 대부분 전임 시장 자이메 레르네르와 그의 동지들의 일관된 노력에 기인한다. 브라질 사회경제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꾸리찌바가 굳게 일하이라는 비유에 동의할 것이다. 땅이 넓고 비옥하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자원도 없었고 재정도 부족하였던 꾸리찌바가 브라질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도시들을 물리치고 '꿈의 도시' 내지 '희망의 도시'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음은, 지난 30여년간의 숨은 속사정을 차치한다면, 분명히 별나고 희한한 일임에 틀림없다. 계획도시로서의 꾸리찌바의 성공은 사회건설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소프트웨어가, 그 중에서도 인적자원이, 물적자원(하드웨어)보다 더욱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미완의 신화이다.

전임 레르네르 시장(현재 파라나 주지사)은 1971년 군사정부에 의하여 4년 임기의 관선시장으로 임명된 이후 1992년까지 연임제한 때문에 떠엄 떠엄 두 차례의 민선시장을 역임하면서 청년시절부터 함께 시민운동에 참여하였던 측근의 전문가들을 도시계획연구소에 포진시켜 꾸리찌바 도시계획의 주춧돌로 삼았다. 그가 시장직을 수행하지 못하였던 징검다리 기간 동안 시장직을 수행하였던 후임자들은 그의 지지자이거나 반대파이거나 간에 도시계획연구소가 수립한 종합계획을 실천하는 데 힘을 쏟았다. 정파 싸움이 심한 시의회가 사업승인이나 예산배정 등에 있어서 때로 제동을 걸기도 하였지만 후임 시장들은 도시계획연구소가 마련한 청사진보다 더 나은 처방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관한 한 연구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였다.

도시계획연구소의 계획이 일관되게 실천되었음은 곧 레르네르의 도시철학이 4반세기 이상 꾸리찌바를 풍미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는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근대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다. 꾸리찌바가 레르네르를 만났음은 분명히 구우일모의 행운이었지만 레르네르가 꾸

리찌바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음도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도시계획연구소라는 제도화된 두뇌집단(think-tank)은 정치적 외풍을 헤쳐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브라질과 꾸리찌바의 정치적 부침과 경제적 일탈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도시계획연구소를 지켰던 그의 동지들이야 말로 꾸리찌바 건설의 진정한 공로자들이다.

## 2) 시민참가

브라질에서는 1964년부터 1979년까지 군사정부 시대가 지속되었다. 군사정부 아래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공공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참가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전임 레르네르 시장도 임명제 관선시장 시절에는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보다는 도시계획연구소의 동지들과 외국에서 초빙된 엔지니어들의 구상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꾸리찌바에서 공공정책에 관한 주민참가가 활성화된 시기는 민선시장제가 실시된 1979년 이후로 기록된다. 레르네르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빈부가 함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어린이들이 행복해 하는 곳에 길이 있다”면서 현장을 발로 뛰어 다니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참가를 이룩하였다.

한편 레르네르는 도시계획연구소를 이끌었던 건축가나 엔지니어 출신 동지들의 활약에 크게 의존하였으면서도 예산타령을 일삼는 전문가들과 공직자들을 기피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그는 교통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교통문제와 도시문제를 상호유기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많은 도시들이 교통공학자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매주 토요일 오전 거리미술제가 열리는 ‘꽃의 거리’(보행자광장)를 조성할 때 어린이들을 참가시켜 상점주들과 대결하였던 일화는 시민참가에 의하여 성공한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나무를 많이 심어 ‘그들과 신선한 물’을 확보하려는 녹지보전정책 그리고 ‘쓰레기-농산물 교환’제도와 같은 복지환경 정책등은 시민참여가 없었더라면 성공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 3) 제도정비

#### (1) 보전 및 토지이용 법제

꾸리찌바의 환경관련 조례들은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발전하였다. 일반적인 조례로서는, 환경보호·보존·회복정책에 대한 규정(1991)와 꾸리찌바시의 예비환경보고서 법제화 규정(1997) 등이 있다. 또한 녹지대 안에서의 시설과 건축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 녹지대로 규정된 땅에 건물들이 줄 맞춰 세워진 뒤 남은 잉여지역의 활용에 대한 규정(1990), 연료공급소 및 정비-휴게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특히 연료저장시스템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예방조치시행 의무화규정(1995), 건물건축의 조건과 연료공급소 및 정비-휴게소의 환경보호 조건에 관한 시행령(1995) 및 특별거주구역(녹지대)에 대한 규정(2000)등이 같은 예이다. 한편 공원지역 또는 산림지역에 관하여서는 권역단위로 개별조례들을 제정·운용한다 : 해당 조례들로서는 Tingüi공원과 Tanguá공원 및 Bosque da Fazendinha산림지역의 설립승인규정(1997), 이과수 환경보호지역 및 이과수 시립공원에 관한 시행령등의 규정(2000), 빠싸우나 환경보호지역 및 빠싸우나 시립공원에 관한 시행령등의 규정(2000) 등이 있다.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들을 조례에 의하여 특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 : 관련 조례로서는, 환경회복 및 유지를 위해 특별보존지역(UIEP) 및 인센티브제공의 기준(1993), Catedral Metropolitana de Curitiba, Sociedade Garibaldi 그리고 쌍투스 앙드라지 광장에 위치한 Edifício Central da Universidade Federal do Paraná(빠라나 연방대학 본관)를 특별보존지역(UIEP)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1993), 특별보존지역(UIEP)인 Catedral Metropolitana de Curitiba(꾸리찌바 메트로폴리탄 성당)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1993), 특별보존지역(UIEP)으로 정해진 Sociedade Garibaldi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1993), “전망이 좋은 특별구역”에 대한 규정(1996), Edifício do Ministério Público do Estado do Paraná(빠라나 주의 공안부 건물)을 특별보존지역(UIEP)

으로 지정하고 UIEP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에 대한 규정(1997) 등이 있다.

(2) 개발법제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규정들이 최근에 많이 보강되었다 : “Villas de Oficios”특별구역설정규정(1995), 도시구획정리위원회창설규정(2000), 토지사용구분에 관한 시행령 및 토지사용확정과 일람표 규정(2000), 특별사적구역에서의 토지 사용 및 점유 기준(2000), Barão지역과 Riachuelo지역을 축으로 하는 특별구역규정(2000), 도시 중심가 특별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점유기준(2000), 특별주요구역에서의 마짜 플랜(Plano Massa) 적용에 대한 기준(2000), 신꾸리찌바 특별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점유조건(2000) 및 특별지구 따뚜파라(Tatuquara)의 토지사용 및 점유조건(2000) 등이 그것이다.

주거와 관련하여서는 강제철거나 보상등의 접근방법 대신에 인센티브제도 내지 특례규정들이 실시되고 있다 : 주거지역에서의 종교관련 시설건축 규정(1990), 도시 중심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물과 상가를 위한 인센티브를 법제화 및 개인과 단체상가 설립을 위한 조건 규정(2000), “지역사회를 위한 주거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법제화규정(2000) 및 새로운 “지역사회를 위한 특별주거구역” 설치에 대한 규정(2000)등이 운용되고 있다.

상업적 시설 내지 활동에 관한 규정들이 비교적 일찍부터 정비되었다 : 전자오락설치등조례(1983), 상업용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서비스관련 시설 설치지침(1987), 레크리에이션 지역 및 기타 시설에 대한 규정(1987), 옥외광고규정(1994·1995) 및 일시적 혹은 지속적인 상업 이벤트들에 대한 규정(1996) 등이 시행되고 있다. 도시의 인상(impression)을 결정짓는 데 있어 이러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으로 작용한다.

## 제 6 절 뉴질랜드 · 싱가포르

### 1. 뉴질랜드

#### 1)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에는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퀸즈타운, 웰링턴 등의 도시가 분포하는데 어느 도시도 건축물과 녹음이 조화하여 아름다운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크라이스트처치는 「뉴질랜드 가든시티」(Garden City of New Zealand)라 불릴 정도로 특히 아름답다. 크라이스트처치는 남쪽 섬의 거의 중앙부인, 칸터베리평야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인구 약 30만의 도시이다. 시내에는 에이본천이 관류하고, 도심부에는 약160ha의 대공원인 하글레(Hagley Park)가 위치한다.(丸田賴一, 1998 : 175)

이 시의 아름다움은 에이본천(川)을 축으로 하는 주변의 수경녹화와 시내의 수경된 택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가든시티의 진수도 여기에 있다. 그 존속에 있어서는 시가 도시공원 등 공공녹지를 정비, 관리하는 노력 외에, 민간단체에 의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민유지의 녹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뉴질랜드 최고(最古)의 원예협회인, 칸터베리 원예협회(Canterbury Horticultural Society)와 크라이스트처치 원예협회(Christchurch Beautifying Association)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그 중에서도 각각의 협회가 매년 주최하는 컨테스트는 이채롭다.

개인정원, 아파트, 호텔, 모텔, 볼링장, 공장, 병원, 클럽 등으로 나누고, 매년 총계 60건의 입상작을 뽑는데, 심사는 앞 정원(前庭)뿐만이 아니라 내부정원(裏庭), 옆정원(側庭), 야채원, 과수원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개인정원 심사의 배점은 디자인·조화 15점, 재배·유지관리 14점, 초화 16점, 수목 25점, 잔디·지피(地被)식물 15점, 합계 100점의 배점이다. 이와 같이 원예협회에 의한 정원 컨테스트에서는 건축물을 둘러싼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설계·유지관리도 포함하여 심사하고 있다. 또한 입상자는 그 후 2년간 응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크라이스트처치 미화협회에 의한 가로미화 컨테스트가 있다.

전자의 정원 컨테스트와는 달리, 가로(街路)로부터 보이는 부분, 앞 정원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내부정원(裏庭)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컨테스트 심사에는 시장도 참가하는데, 커뮤니티에 대한 공헌 50점, 외관 30점, 장래성 20점, 합계 100점의 평가가 내려져, 최우수상의 가로에는 「이 가로는 가로연(沿) 주민의 시민 프라이드를 반영하고 있다.(This street reflects the civic pride of its residents)」고 기록된 플래트를 설치하게 된다.

## 2) 공 원

뉴질랜드의 현관구인 오클랜드에는 알버트 공원(Albert Park), 오클랜드 도메인(Auckland Domain), 콘웰(Cornwall)등이 있는데, 공원 내에 양, 소들을 방목하는 광경이 인상적이다. 그 중에서도 오클랜드 북방 56km지점에 위치하는 셰익스피어 지역공원(Shakespear Regional Park)은 입지뿐만이 아니라 공원계획도 빼어나 소개할 가치가 있다. 이 공원은 규모 376ha를 자랑하며 대도시 오클랜드시민의 레크레이션장으로 뿐만 아니라 해안선이나 자연지 보존의 장으로서 기능이 뛰어나다. 셰익스피어지역공원의 이름은 1967년, 오클랜드 지역공사가 Mr. W.H.Ahakespear로부터 용지를 매수한 것에서 유래하는데, 해상에 떠 있는 오클랜드의 랜드마크, 사화산도(死火山島)(Mt. Rangitoto)를 조망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이다<sup>46)</sup>.

셰익스피어공원에는 양, 소, 닭 등 많은 가축을 방목하고 있어 그들과의 접촉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 공원을 중심으로 지역공원 전체에서 9,500두의 양과 1,600두의 소가 사육되고 있다. 또한 이 공원 내에는 작은 양모실(室)이 있어 원내 양들의 털 깎기가 이루어지고, 직원들에 의한 그 작업이 구경거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깎은 털은 공원작업의 수입이 되고 있다. 한편, 면적에 비교하여 인공적인 시설이 적은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지만, 원내에는 Y.M.C.A.의 롯지가 있고, 그곳에서의 숙박은 학교나 커뮤니티 단위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러한 지역공원의 입장료는 모두 무료이다.

---

46) 丸田頼一, 1998 : 178.

## 2. 싱가포르

싱가포르도 가든시티로 유명하다. 가든시티의 이름은 1957년 정부가「가든시티구상」을 발표한 것에서 유래하는데 그 후, 1963년에 식수 캠페인, 1967년에는 크린 뷰티 캠페인(Keep Singapore Clean and Beautiful CamPaign)이 실시되고 같은 해, 「녹음이 풍성하고 청결한 도시」선언이 이광요 수상에 의해 선포되면서 보다 선명하게 되었다. 소국(小國)인 관계로 전국도를 녹화하는 것이 쉬운 일처럼 생각하겠지만, 이를 가능케 한 전(前) 이수상의 강력한 지도력, 국가정책, 기술개발 등에는 놀랄 따름이다. 그 양상은 창기국제공항에서 시내에 이르는 길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스트고스트공원(206ha), 담쟁이덩굴과 부겐비레아에 의해 녹화된 보도교, 늘어선 가로수. 시내에 들어서면 잘 보전된 구릉지,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지의 공지는 보이지 않고, 잘 가꾸어진 잔디밭과, 그 중심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원(47ha)이 있다<sup>47)</sup>.

가든시티 만들기의 구체적인 추진과정은 이렇다. 맨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1975년 제정된 「공원·식수법」(Park and Tree Act)이다. 이 법은 공원 등의 정비, 수목의 보전 녹화 등에 유효하게 작용한다. 전체 22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원 레크레이션국장의 서면에 의한 허가 없이는 누구도 지상 높이 50cm에서 가지둘레 1m를 넘는 수목을 채벌(採伐)해서는 아니된다(제5조). 공공도로에 면한 토지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同)국장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수목이나 식물의 식재, 유지관리에 대하여 경고 할 수 있다(제7조). 그리고 이러한 위반자나 경고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2,000달러(싱가폴 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건축신청시의 개발심사제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택지 주위 2m폭의 식수, 택지내외에 현존하는 수목의 위치, 수종, 수간(樹幹)등의 기재도와 식재계획도, 주차장의 식수, 쓰레기장, 변전시설, 하수탱크 등의 주위를 생울타리로 피복하고 양벽은 덩굴식물로 녹화하는 등이다. 또한 이러한 개발심사에 있어서 식수비용을 공원레크레이션국에 전납하는 것도 의무로 되어있다. 당국이 공사가 종료 후, 신청자와의 조회에 의하여

47) 丸田頼一, 1998 : 179.



확인하며 합격하면 돈을 돌려주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전납금으로 당국이 식수하도록 되어 있다.

세 번째는 1973년 설립된 가든시티행동위원회(Garden City Action Committee)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공원 레크레이션국, 도시재개발공사, 싱가포르 스포츠회의, 자연보호녹지위원회, 센토사 개발공사, 주택·개발위원회, 공공사업국, 쥘론도시공사 등이 참가하는데 위원장은 국가개발성의 차관이다.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2개월에 1번이 의무인데, 그것은 국가개발성 대신뿐만이 아니라 수상에게까지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현재는 1인당 약 35m<sup>2</sup>, 국토면적의 약13%의 공원녹지화가 진행되었는데,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 이제는 의론의 초점으로 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녹화의 특징으로는, 수목에 물과 공기를 공급하는 에어레이션 시스템의 정비, 국가의 인건비를 포함한 녹화예산 중에서 약 60%가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가든시티의 형성을 위하여서는 위정자의 지도력, 예산, 기술자를 포함한 전청(全廳)적인 조직, 마스타플랜의 책정, 기술력의 향상, 녹화에 대한 유지관리비의 투입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 제 5 장 법제정비방향

### 제 1 절 법체계의 조정

#### 1. 녹지보전법(안)의 제정

도시녹지의 확대 및 보전을 위하여 일본의 입법례(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 및 도시녹지보전법)에 따라 별도의 독자적인 법을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녹지 근거법들을 정비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어느 입법방식을 취하더라도 도시녹지와 관련된 법령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한 개의 별도의 도시녹지법(안)을 제정할 경우, 작업이 간명하고 호응을 얻기도 쉬울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법안은 현행 습지보전법과 같은 경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녹지의 광범성을 고려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도시녹지법(안)에 국한하기 보다 광범위한 녹지보전법(안)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스럽다.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 법들을 고쳐 도시녹지의 보전을 기할 경우에는 우선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의 정비가 시급하다. 도시계획법(제4장)상 도시계획의 녹지계획화가 필요하다. 녹지보전 개념을 녹지지역(도시계획법 제32조)에 국한시키는 폐쇄적 태도를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로 결정된 것만을 녹지로 보는 도시공원법(제2조제3호)상의 형식적 녹지개념도 극복되어야 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결정은 행정의 처분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유리하겠지만 이러한 입법방식은 “이미 녹지로 조성·유지되어 있는 것만을 보전한다”는 소극적인 태도이다.

신법을 제정하건 아니면 기존법을 정비하건 간에 현행 도시공원법(제2조제3호)상의 녹지와 도시계획법(제32조제1항제4호)상의 녹지지역이 기능적으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녹지지역’이 형식적·거시적 개념이라면 ‘녹지’는 도시지역 및 녹지지역 이외의 녹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실질적·미시적 개념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녹지지역과 녹지의 개념을 구분·연계시킬 경우 녹지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녹지통계등이

정확해 질 것이다.

(가칭)녹지관리표준의 제정·시행이 필요하다. 현행 도시공원법등이 비록 '녹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녹지' 개념은 규범적이라기보다 행정적이고 사실적이다. 녹지에 관한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아니한 가운데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등이 수립·운영되었음은 경이로운 현상이다. 도시공원법이나 도시계획법등 도시와 관련된 법률들에서 도시녹지를 넘어 '녹지' 일반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다른 법률상의 녹지에까지 통용시키기 어렵다. 녹지관리표준은 독자적인 녹지보전법(안)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가칭)녹지관리표준에서는 녹지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새로 규정하여야 한다. 자연공원법(제2조)상의 자연공원,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제18조)·임시생태계보전지역(제23조)·완충지역(제29조) 그리고 산림법(제16조제1항)상의 보전임지 등 현행 법제상 녹지라는 명칭을 원용하지 아니하지만 녹지로서의 실질을 지니고 있는 유사녹지들이 녹지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토이용관리법(제6조)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등이 국토통계상 녹지로 분류되는 관행이 녹지관리표준을 통하여 시정되어야 한다.

(가칭)녹지관리표준에는 현재 환경부등에서 생태자연도 대신에 환경부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녹지등급제를 수용하여야 한다. 산림 뿐만 아니라 시가화 지역을 녹지(지역)로 결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이 녹지등급이 원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몇 등급 이상을 녹지로 한다는 기준이 필요하다. 녹지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요소로서 녹지율, 녹피지율, 녹지역율등의 개념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녹지에 생태적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생물서식공간 내지 소생태계(비오톱)와 녹지를 연계시키기 위하여서는 녹지의 종류에 완충녹지·경관녹지외에 생태녹지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도시계획법시행령(제29조제4호)에 규정된 보전녹지·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의 개념은 조례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제10조)상의 완충녹지·경관녹지등과 범주·관리방법등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는 그 개념이 혼란스럽다.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

을 “자연녹지”라 명명함은 부적절하다. 또한 “생산녹지”라는 개념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과의 혼동을 부른다. 일정 등급(또는 녹지율) 이하의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은 계획당국 또는 통계당국에서 이를 녹지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 2. 국토법과 환경법의 정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지 국토이용관리법은 연혁적인 기득권을 포기하여야 한다. 이 법들은 환경법이 없던 시대에는 역설적이거나 일부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환경법의 출현과 더불어 개발법의 환경법 기능점임은 종식되어야 한다. 이 점은 산림법이나 도시계획법도 마찬가지이다. 건설법제의 방향전환은 사고의 전환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건설법제는 “면(面)의 사고”에 의한 국토 전체의 재단을 포기하고 “선(線)과 점(點)의 사고”에 의한 국토 일부의 재단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법령상의 계획들에 대한 우선적 효력 규정[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5조/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2]들을 삭제하여야 한다. 아울러 용도지역제도(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를 폐지하여야 한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은 건설이나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지역(點)에 국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건설법제나 개발법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토에 대하여 환경법이 적용되는 모순(控除主義)을 극복하여야 한다. 21세기의 환경법은 청소법 → 공해법 → 오염통제법 → 보전법의 단계를 넘어 계획법으로서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전반을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계획은 보전계획, 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을 포함한다. 환경“보전”법은 “환경법”으로 그리고 환경“보전”계획은 “환경계획”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환경법은 종래 ‘선’과 ‘점’[1차원]을 중심으로 오염을 통제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던 사고에서 벗어나 국토 전체를 ‘면’[2차원] 내지 ‘공간’[3차원]으로 보고 “어디를 남겨 두고 어디를 개발하며 어디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설계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보전법과 이용법 그리고 개발법이 따라와야 한다. 법제에도 분업과 협업의 원리가 적용된다. 환경정책기본법은 계획법으로서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은 보전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은 개발법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연자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 3. 녹지조성법제의 정비

우리 나라의 도시녹지가 절대 부족하며 따라서 도시녹지를 확충하고 보전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다툼의 소지가 거의 없다. 환경 선진국들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도시녹지와 관련된 현행법제는 현존하는 도시녹지를 보전하고 이용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도시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서는 관련법제가 도시녹지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외국의 녹지사례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녹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시스템[조성법제]을 갖추어야 한다. 녹지가 풍부하다면 규제와 개발의 조화 내지 이용법제만으로 충분하겠으나 도시녹지의 실질이 빈약하기 때문에 도시녹지 법제는 새로운 녹지들을 창출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 1) 수단에서 목적으로

현행법제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행 도시녹지 법제는 기존 도시녹지를 관리하는 장치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데 비하여 부족한 녹지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담보상태를 보인다. 조성과 관련된 법제 조차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규모 녹지훼손(개발)구역(단지) 안에 약간의 녹지(공간)를 확보하는 역설을 보인다. 도시녹지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공원법도 녹지의 조성에 관하여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아울러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공간을 재단하는 계획법일뿐 도시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 녹지는 대규모 개발의 구색을 갖추어 주는 들러리에서 탈피하여 그 자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형식개념에서 실질개념으로

도시녹지 법제에 대한 반성은 개념의 분석과 보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행 녹지법제는 그 어느 곳에도 “녹지” 내지 “도시녹지”에 관한 실체적 정의(substantive definition)가 없다. 도시녹지의 핵심인 도시공원법은 녹지의 정의를 도시계획법에 미루고 도시계획법은 형식적 결정에 의하여 녹지를 결정함으로써 개념을 “정의”하기보다는 녹지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거나 범주를 설정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녹지”(땅)는 있으나 정작 그 안에 “녹”(綠)은 없는 결과도 빚어진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형식적·절차적 ‘녹지’의 개념정의로부터, 일본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질적·실체적 녹지의 개념정의로 바뀌어야 한다.

### 3) 녹지에서 녹음으로

특정 권역 내지 구역이 녹지(all)인가 아닌가(nothing)보다 해당 권역 내지 구역의 “녹화가 어느 정도인가”의 여부가 실질적 개념의 도시녹지에 더 적합하다면 “녹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녹화” 정도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법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계획구역중 특정 권역 내지 지역을 도시녹지로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을 포기하고 모든 권역 내지 지역의 “녹음” 수준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녹화”를 필요로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녹지의 근거법을 도시공원법에서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확장시킴을 의미한다. 이 경우, 형식적 녹지 개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법상의 녹지와 도시공원 그리고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의 상호단절성이 해소될 것이다.

### 4) 녹의 등급화

도시계획구역 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계획중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전반에 걸쳐 현재의 녹음정도를 판정하고 이를 향후 계획의 지표로 활용하는 녹의 등급화 제도가 필요하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구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등으로 구분하고 시가화조정구역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역의 구분은 개발 내지 건축의 한계 내지 상한을 설정하는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을 뿐 도시녹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방식은 개발 내지 건축을 규제함으로써 녹화를 증진한다는 역설을 보인다. 그렇다면 현행 구역 구분은 도시녹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준으로도 활용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해 녹의 등급에 따라 구역이 결정되기도 하고 거꾸로 구역에 따라 녹의 목표치가 달리 설정되기도 하여야 할 것이다.

### 5) 녹화율의 제도화

녹화율의 목표가 법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등 상위법에 원칙규정을 두고 실질적인 비율을 조례등에 구체화시키는 방안이 바람직스럽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내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목표” 녹화율 내지 “권장” 녹화율을 고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중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의 녹화율이 각각 차별화되어 고시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법상의 “도시공원”중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및 근린공원의 녹화율이 각각 차별화되어 고시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법상의 “녹지”중 경관녹지와 완충녹지도 같은 유형의 고시가 필요하다. 특히 종래 형식적 녹지개념 속에서 방치되었던 도시계획법상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한 녹화율(목표치)을 결정하고 고시를 구체화시키는 입법장치가 필요하다.

### 6) 모호한 범주와 관행의 시정

공원과 녹지는 실무상 거의 구분되지 아니한다. 도시녹지와 관련된 통계 처리에서 보듯이 공원은 녹지로 간주되며 경우에 따라, 지적법시행령(제6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녹지는 공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국토이용계획상 많은 경우 농지나 수변구역도 녹지로 구분·관리된다. 이러한 관행을 확장하면 어떠한 녹지들은 연중 대부분의 기간 녹 없이도 녹지로 취급될 수 있다. 빈틈 새에 약간의 잔디가 심어져 있는 주차장도 녹지가 될 수 있고 반환경적인 골프장조차도 녹지로 대접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혼동을 극

복하기 위하여서는 행정청의 재량과 편의에 따라 녹지를 분류·관리하는 관행이 근절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녹지관리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 7) 규제 방식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도시녹지의 정책방향을 녹지에서 녹음으로 전환하고 녹의 등급을 결정하는 한편 구역별 녹화율을 고시하여 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 개발이익 내지 사유재산권등과 관련하여 적지 아니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도시녹화 자체가 또 다른 규제가 되어서는 법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계획 수립에 있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해당 구역의 도시기능과 녹의 등급 내지 녹화율의 결정에 공중(주민과 전문가)참가를 제도화시켜 자발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에, 행정청과 주민 또는 기업 사이에 모두에게 이익이 균등하게 돌아가는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하여 이의 준수를 장려하는 법적 장치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도 반발하거나 불만을 노정하는 당사자들에 대하여서는 보상과 이전 또는 대체(환지·대토)등의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모든 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은 실제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한다. 해당 구역을 도시기능을 특화시키고 녹화시킴으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당사자가 교환 내지 거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4. 조례의 정비

현단계에서 도시공원조례를 통한 녹지의 해제 내지 완화는 시기상조이다. 체계상 상위조례인 도시계획조례가 먼저 정비되어야 한다. 도시공원조례의 개정시에도 도시공원 본연의 취지에 충실하여야 한다. 건축조례에 규정할 사항을 도시공원조례에서 원용하여서도 아니된다. 상위법령인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을 원용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등'을 규정하였음은 도시공원법을 건축법과 같은 유형의 개발법으로 후퇴시켰음을 시사하는데 도시공원조례마저 건축조례를 끌어들이어 점용허가대상을 확장시



김은 입법의 저축을 초래한다. 입법기술적으로도 몇가지 시정이 필요하다. 자연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을 ‘예시’하면서 ‘개념’ 자체를 확장시켜서는 아니된다.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재규정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재규정은 입법의 낭비이다.

녹지보전법(안)등 상위법령의 정비를 기다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녹지보전조례등의 제정·시행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녹지관리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시녹지의 보전과 확충을 위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과 실험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만, 조례입안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이 최대한 감안되어야 한다. 환경관련 조례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동소이한 녹지관련 조례들이 전국을 망라함은 의미가 없다. 녹지보전조례(안)는 기존의 도시계획조례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녹지보전조례(안)의 제정이 곤란할 경우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공원조례를 정비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쉽다면 역사유적 내지 경관보전조례(안)나 마을만들기조례(안)과 같은 실험적인 방법들을 원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제 2 절 녹지체계의 조성

### 1. 녹지(축)의 복원

자연환경보전법은 녹지축을 ‘생태통로’로 이해한다. 즉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은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을 실현하기 위하여 “산·하천·습지·농지·도서·해양 등에 있어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자연의 조성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제4호). 자연환경보전법의 이러한 취지가 녹

지축에 구현되어야 한다. 녹지축과 연결되지 아니한 단편적인 녹지는 순환 구조를 결여한다. 녹지보전법(안) 내지 국토이용관련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 안에 자연환경보전법과의 연결장치(계획간 통합)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녹지보전법(안)등에서는 생태계의 복원과 녹지(축)의 복원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상 몇 가지 조치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전제한다. 예컨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5호). 이러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자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본문). 이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은 “중요 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단편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의 조성”을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으로 규정하였다(동법시행령 제45조제1호).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단서). 요컨대, 생태계의 복원과 연결 및 조성을 녹지(축)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이 녹지보전개념을 제시하고 녹지보전법(안) 및 녹지보전조례(안)등이 생태계와 생태통로 개념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 2. 녹지공간의 확대와 보전

녹지 내지 도시녹지를 확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공익(보전이익)과 사익(사유재산권)의 조화가 필요하다. 녹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땅이나 습지 등을 녹지(지역)로 지정하기 위하여 사유재산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해당 토지등이 국공유지가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는 ‘매수청구’등의 방안을 상정할 수 있지만 계획당국 또는 사업주체가 현실적으로 모든 대상지를 매수하기 어렵다. 그린벨트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사유재산을 오래도

록 묶어 놓을 경우 녹지의 확장은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녹지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처지의 토지소유자등에 대하여 사업이익 내지 보전이익이 돌아 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녹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녹지보전법(안)등에 해당 토지등을 대상으로 한 '환지'나 '대토'와 같은 방안을 원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 또는 토지소유권등의 변동등을 거치지 아니하면 서도 녹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된 장치가 일본의 녹지협정 또는 미국(뉴욕주·텍사스주)의 녹화협정제도이다. 이러한 협정들은 녹지 후보지의 이해관계자(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점유자등)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등과 이해관계자 사이에 체결되는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의 일종이다. 녹지협정에는 (1) 녹지협정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구역(녹지협정구역) (2) 녹지보전 또는 녹화에 필요한 것으로서 a. 보전 또는 식재하는 수목등의 종류 b. 수목등을 보전 또는 식재하는 장소 c. 보전 또는 설치하는 담 또는 목책의 구조 d. 보전 또는 식재하는 수목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e. 기타 녹지의 보전 또는 녹화에 관한 사항 (3) 녹지협정의 유효기간 (4) 녹지협정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등이 규정될 수 있다.

## 〈부 록〉

### 1. 日本國 都市綠地保全法

제정 1973년 9월 1일 法律 제 72호

개정 1999년 12월 22일 法律 제160호

도시녹지보전법을 이에 공포한다.

#### 〈목 차〉

제 1 장 총칙(제1조·제2조)

제 1 장의 2 녹지의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제2조의 2)

제 2 장 녹지보전지구(제3조-제13조)

제 3 장 녹지협정(제14조-제20조)

제 3 장의 2 시민녹지(제20조의 2-제20조의 5)

제 3 장의 3 녹지관리기구(제20조의 6-제20조의 11)

제 4 장 벌칙(제21조-제24조)

부 칙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률은 도시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공원법(1956년 법률제79조) 그 밖의 도시에 있어서 자연적 환경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과 함께 양호한 도시환경 형성을 도모하며 보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994법40·일부개정)

제 2 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임무등)

1.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도시의 녹지가 주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간주하여 도시에 있어서 녹지의 적절한 보전과 녹화의 추진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의 실시에 있어서 도시의 녹지가 적정히 확보될

〈부 록〉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도시의 주민은 도시의 녹지가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 1 장의 2 녹지의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1994법40·추가)

#### 제 2 조의 2 (녹지의 보전 및 녹화의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1. 시정촌(市町村)은 도시 녹지(수림지, 초지, 수변지, 암석지 또는 그 상황이 이와 유사한 토지가 단독, 또는 일체가 되었다든지 또는 이에 인접하고 있는 토지가 이와 일체가 되어 양호한 자연적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의 적정한 보전 및 녹화의 추진에 관한 조치로서 주로 도시계획법(1968년 법률제100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강구되는 사항을 종합적 내지는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시정촌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기로 한다.
  - (1) 녹지 보전 및 녹화의 목표
  - (2)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 (3)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중 필요한 것
    - 1) 녹지 배치의 방침에 관한 사항
    - 2) 녹지보전지구내의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
      - a. 녹지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 b.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 및 매입한 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c. 기타 녹지보전지구내의 녹지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3) 녹화 추진을 중점적으로 취해야 할 지구 및 당해 지구에 있어

서의 녹화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진 《당해》시정촌의 건설에 관한 기본구상에 따라 도시계획법제18조의 2제1항의 시정촌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에 적합하도록 함과 동시에,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1966년법률제101호)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교녹지보전구역을 그 구역으로 하는 시정촌에 있어서는 동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교녹지보전계획에, 긴키(近畿)권 보존구역 정비에 관한 법률(1967년법률제103호)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교녹지보전구역을 구역으로 하는 시정촌에 있어서는 동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구역정비계획에 각각 적합한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 1999년 법률제160호로 2001년1월16일부터 < > 부분의 줄임으로 「환경기본법(1993년법률제91호)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경기본법과의 조화를 이루도록」라는 부분이 부가되고 《 > 부분은 삭제된다.

4. 시정촌이 기본계획에 제2항제3호 2)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항에 대하여 먼저, 수도부현의 지사와 협의하여 그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지방자치법(1947년법률제67호)제252조의19제1항의 지정도시(이하「지정도시」라 한다.) 및 동법252조의 22제1항의 중핵시(이하「중핵시」라 한다.)에 있어서는 예외이다.
5. 시정촌은, 기본계획을 정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도도부현의 지사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6. 전2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1994법40·추가, 1994법49·1995법68·1999법78·일부개정)

**제 2 장 녹지보전지구**

제 3 조 (녹지보전지구에 관한 도시계획)

1.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에서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토지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녹지보전지구를 정할 수 있다.
  - (1) 무질서한 시가지화의 방지, 공해 또는 재해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차단지대, 완충지대, 또는 피난지대로서 적절한 위치, 규모

〈부 록〉

및 형태를 갖춘 것

- (2) 신사, 사원등의 건조물, 유적등과 일체가 되어 또는 전승 내지는 풍속습관과 연결되어 당해지역에 있어서 전통적 또는 문화적 의의를 가진 것
- (3)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되고 나아가 당해지역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 1) 풍치 또는 경관이 수려할 것
  - 2) 동식물의 생식지 또는 생육지로서 적정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2.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교녹지보존구역 내 및 긴키권 보전구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교녹지보전구역내의 녹지보전지구에서, 그러한 근교녹지보전구역내에 있어서 근교녹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관한 도시계획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제5조제1항 및 긴키권 보전구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정해진 바에 의하도록 한다.(1994법40·일부개정)

제 4 조 (표식의 설치등)

- 1. 도도부현은 녹지보전지구에 관하여 도시계획이 정해졌을 때에는 그 지역내에, 녹지보전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 환경보전지구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전항의 표식을 거부하거나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 3. 누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식을 설치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전한다든지 오손하거나 또는 손괴시켜서는 안된다.
- 4. 도도부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통상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한다.
- 5.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6.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도도부현지사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1951년법률제219호)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 (녹지보전지구에서의 행위의 제한)

1. 녹지보전지구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도도부현지사의 허가없이 해서는 안된다. 단, 공익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행위 중 당해 녹지 보전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중에서 정령으로 정해진 것, 당해 녹지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이 정해진 때 이미 착수된 행위, 또는 비상재해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로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2) 택지조성, 토지의 개간, 토석채취, 광물의 채굴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
  - (3) 목축의 별채
  - (4)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 (5) 전각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당해 녹지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정령으로 정해진 것
2. 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과 관련된 행위가 당해 녹지 보전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항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3. 도도부현지사는 제1항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녹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에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4. 녹지보전지구내에서 제1항 단서의 정령으로 정해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동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도도부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녹지보전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이 정해질 때 당해 녹지보전 구역 내에서 이미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행위에 착수하고 있던 자는 그 도시계획이 정해진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도도부현지사에게



〈부 록〉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녹지보전지구내에서 비상재해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로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이내에 도도부현지사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7. 도도부현지사는 제4항의 통지 또는 제5항 당해녹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지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8. 국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항만법(1950년법률제218호)에 규정하는 항무국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 있어서는 같다.)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당해국의 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도도부현지사와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9.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제9항까지 그리고 전항 후단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1)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교녹지보전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
  - (2) 긴키권의 보전구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제1호의 정령으로 정해진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 (3) 기본계획으로 정해진 당해 녹지 보전지구내의 녹지보전과 관련되어 필요한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
  - (4) 제20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시민녹지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당해 시민 녹지내의 녹지보전과 관련되어 필요한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
  - (5) 통상의 관리행위, 경이한 행위 그 밖의 행위로서 정령으로 정해진 것(1994법40·1995법68·일부개정)

#### 제 6 조 (원상회복명령등)

1. 도도부현지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부수된 조건을 위반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자, 또는 이러한 자로부터 당해 토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당해 기간을 정하여 당해 녹

지의 보전에 대한 피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또는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대처할만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 또는 이에 대처할만한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는「원상회복등」이라 한다.)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과실없이 당해 원상회복등을 명할 자를 확지할 수 없을 때, 도도부현지사는 그 자의 부담으로 당해원상회복등을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그 명한 자 내지는 위임한 자에게 이를 시킬 수가 있다. 이 경우, 상당의 기한을 정하고 당해 원상회복등을 해야 할 내용 및 그 기한까지 당해 원상회복등을 하지 않을 때에는, 도도부현지사 또는 명한 자, 내지는 위임한 자가 당해 원상회복등을 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상회복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1993법89·일부개정)

#### 제 7 조 (손실의 보상)

1. 도도부현은 제5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통상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허가의 신청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 (1) 제5조제1항의 허가신청에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밖의 행정청의 허가, 기타 처분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 법률(법률에 기초한 명령 및 조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허가, 기타 처분을 받을 수가 없어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받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 기타 처분의 신청이 각하되었을 때, 또는 각하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때.
  - (2) 제5조제1항의 허가신청에 관련된 행위가 사회적 통념상 녹지보전 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이 정한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될 때.
2.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대한

〈부 록〉

여 준용한다.

#### 제 8 조 (토지의 매입)

1. 도도부현은 녹지보전지구내의 토지로 당해 녹지의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로부터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 토지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므로 당해 토지를 매입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매입하도록 한다.
2. 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매입을 희망하는 시정촌 또는 20조의 6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녹지관리기구로 제20조의 71호에 열거하는 업무중 도시계획내의 녹지의 매수 및 매수한 녹지보전에 관한 일을 행하는 것을 당해토지의 매입상대로서 정할 수가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토지매입의 상대로 인정된 시정촌 또는 전항의 녹지관리기구가 당해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한다.
4.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을 하는 경우 토지의 가격은 시가에 의한 것으로 한다.(1994법40·1995법68·일부개정)

제 9 조 (매입한 토지의 관리) 도도부현, 시정촌은 전조제2항의 녹지관리기구가 동조제1항 또는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이 법률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또한 제2조의2 제2항제3호b에 열거한 사항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사항에 따라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1994법40·1995법68·일부개정)

제10조 (국가의 보조) 국가는 도도부현이 행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조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 그리고 시정촌이 행하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994법40·일부개정)

#### 제11조 (보고 및 입입검사등)

1. 도도부현지사는 녹지보전지구내의 녹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필요한 한도내에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자로부터 당해토지, 건축물 기타 공작물 내지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계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실시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2. 도도부현지사는 제5조제1항 내지는 제3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당해직원이 녹지보전지구내의 토지 내지는 건물 내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열거한 행위의 실시상황을 검사한다든지, 내지는 이러한 행위가 당해녹지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3. 전항에 규정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검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대도시등의 특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무는 지정도시 및 중핵시에 있어서는 당해지정도시 또는 중핵시(이하 이 조에 있어서 「지정도시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이 장의 규정중 도도부현에 관한 규정은 지정도시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정도시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1994법40 · 1994법49 · 1999법87 · 일부개정)

제13조 (공해등 조사위원회의 제정)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불복이유가 광업, 채석업 또는 자갈채취업과의 조정에 관한 것일 때에는 공해등 조사위원회에 제정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행정불복심사법(1962년법률제160호)에 의한 불복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행정불복심사법제18조의 규정은 전항이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잘못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교시된 경우에 준용한다.

### 제 3 장 녹지협정 (1995법68 · 개정)

제14조 (녹지협정의 체결등) 도시계획구역내의 상당규모인 일단의 토지 또는 도로, 하천등에 인접하는 상당한 구간에 이르는 토지(이러한 토지

<부 록>

중에서 공공시설용으로 제공되는 토지 기타의 정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의 소유자 및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임시설비 그외 일시사용을 위해 설정된 것임이 분명한 것은 제외. 이하「차지권등」이라 한다.)을 가진 자(토지구획정리법(1954년법률제119호)제98조제1항(대도시지역의 주택 및 주택지 공급의 촉진에 관한 특별차지권(1975년법률67호)제83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인, 제17조의2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18조의2 제1항, 제2항 그리고 5항에 있어서도 같다.)의 규정에 의해 가환지로서 지정된 토지에 있어서, 당해토지에 대응하는 종전의 토지소유자 및 차지권등을 가진 자. 이하「토지소유자등」이라 총칭한다.)는 시가지의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전원의 합의에 의한 당해토지구역에서의 녹지의 보전 또는 녹화에 관한 협정(이하「녹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당해토지(토지구획정리법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환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토지에 대응하는 종전의 토지)의 구역내에 차지권등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차지권등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토지소유자이외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된다.

2. 녹지협정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녹지협정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구역(이하 「녹지협정구역」이라 한다.)

(2) 다음에 열거하는 녹지의 보전 또는 녹화에 관한 사항 중에 필요한 것

- a. 보전 또는 식재하는 수목등의 종류
- b. 수목등을 보전 또는 식재하는 장소
- c. 보전 또는 설치하는 담 또는 목책의 구조
- d. 보전 또는 식재하는 수목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e. 기타 녹지의 보전 또는 녹화에 관한 사항

(3) 녹지협정의 유효기간

(4) 녹지협정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3. 녹지협정에 관해서는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도시계획구역내

의 토지 중에서 녹지협정구역에 인접하는 토지로, 녹지협정구역의 일부가 됨으로써 시가지의 양호한 환경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녹지협정구역의 토지가 되는 것을 당해녹지협정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등이 희망하는 것(이하 「녹지협정구역인접지」라 한다.)을 정하는 일이 가능하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협정은 시정촌장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1994법40·1995법68·일부개정)

제15조 (인가의 신청에 관한 녹지협정의 열람등)

1. 시정촌장은 전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협정의 인가신청이 있을 경우, 건설성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공고하고 당해녹지협정을 당해공고일로부터 2주간 관계인에게 알람하도록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동항의 열람기간 만료의 날까지 당해녹지협정에 대해서 시정촌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999년법률제160호에 2001년 1월 6일부터-의 부분은 「국토교통성령」에서 개선한다. (1994법40·1995법68·일부개정)

제16조 (녹지협정의 인가)

1. 시정촌장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협정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녹지협정을 인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 (1) 신청수속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때
  - (2) 토지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것.
  - (3) 제14조제2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 (4) 녹지협정에 있어서 녹지협정구역인접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경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 기타 녹지협정구역인접지에 대하여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2. 시정촌장은 전항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당해 녹지협정의 copy를 당해 시정촌사무소에 준비된 공공의 열람에 제공함과 동시에, 녹지협정구역이라는 내용

<부 록>

을 당해구역내에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 1999년법률제160호로, 2001년1월6일부터-의 부분은 「국토교통성령」에서 개선한다. (1994법40·1995법68·일부개정)

제17조 (녹지협정의 변경)

1. 녹지협정구역내에서 토지소유자등(당해녹지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는 제외.)은 녹지협정에서 정해진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전원의 합의로서 그 내용을 정하여 시정촌장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2. 제2조의 규정은, 전항의 변경인가에 준용한다.

제17조2 (1994법40·1995법68·일부개정)

1. 녹지협정구역상의 토지(토지구획정리법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환지로 지정된 토지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에 대응하는 종전의 토지)로 당해녹지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차지권등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차지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던 토지(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환지로서 지정된 토지에 대응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토지에 대한 가환지로서 지정된 토지)는 당해녹지협정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2. 녹지협정구역내의 토지로 토지구획정리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환지로서 지정된 것이, 동법 제86조제1항의 환지계획 또는 대도시지역에서의 주택 및 주택지 공급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2조제1항의 환지계획에 있어서 당해토지에 대응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로 정해지지 않고, 거기다가 토지구획정리법 제91조제3항(대도시구역에서 주택 및 주택지 공급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대응하는 종전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지분을 제공하도록 정해진 토지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 당해토지는, 토지구획정리법제103조제4항(대도시지역에 있어서 주택 및 주택지공급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3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공고가 있던 날이 종료한 때에 당해녹지협정구역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3. 녹지협정구역인접지 구역내의 토지와 관련된 토지소유자등이 전항의

의사를 표시한 것과 관련된 토지구역은 그 의사표시가 있던 때로부터 녹지협정구역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한다.

4.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용한다.
5. 녹지협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녹지협정에 관련되었던 자가 그 때에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차지권등을 갖고 있던 당해녹지협정구역내의 토지(토지구획정리법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환지로서 지정되었던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토지에 대응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던 후에 토지소유자가등이 된 자(당해녹지협정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하지 않은 자가 가진 토지의 소유권을 계승한 자 및 전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는 제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1994법40·추가, 1995법68·일부개정)

제19조 (녹지협정의 폐지)

1. 녹지협정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등(당해녹지협정의 미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은 제14조 제4항 또는 제17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녹지협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과반수의 합의로 그 내용을 정하고 시정촌장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2. 시정촌장은 전 항의 인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지 않으면 안된다.(1994법40·1995법68·일부개정)

제19조의2 (토지공유자등의 취급) 토지 또는 차지권등이 수명의 공유로 되어있는 경우,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전조제1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합하여 1인의 소유자 또는 차지권등을 가진 자로 간주한다.(1994법40·추가)

제20조 (녹지협정설정의 특칙)

1.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상당규모의 일단의 토지(제14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해진 토지는 제외)로 1명의 소유자이외에 토지소유자등이 없는 토지소유자는 시가지의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촌장의 인가를 받아 당해토지구역을 녹지협정구역으로 하는 녹지협정을 맺을 수 있다.



〈부 록〉

2. 시정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협정의 인가신청이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당해녹지협정이 시가지의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녹지협정을 인가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시정촌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녹지협정은 인가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내에, 당해녹지협정구역내의 토지에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 등이 있게 된 때로부터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공고가 있던 녹지협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녹지협정이 된다.(1994법40·1995법68·일부개정)

### 제 3 장의2 시민녹지 (1995법68·추가)

제20조의 2 (시민녹지계약의 체결등)

1. 지방공공단체 또는 제2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녹지관리기구로 제20조의7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중에서 시민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것을 행하는 자는,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기초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는 계약(이하「시민녹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당해 토지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녹지(이하「시민녹지」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다.
  - (1) 시민녹지계약의 목적이 되는 토지구역
  - (2)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중 필요한 것
    - a. 공원길, 광장 기타 시민녹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b. 시민녹지내의 녹지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 (3) 시민녹지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 (4) 시민녹지의 관리기간

- (5) 시민녹지계약에 위반했을 경우의 조치
2. 시민녹지계약의 내용은 기본계획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시민녹지의 관리기간은 1년이상으로 건설성령으로 정해진 기간이상이어야 한다.
  4. 지방공공단체 또는 제1항의 녹지관리기구는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교녹지보전구역, 긴키권의 보전구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교녹지보전구역 또는 녹지보전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체결하는 시민녹지계약체결에서 제1항제2호b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당해 시민녹지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구역이 제1호에서 열거하는 것일 경우에는 동호에서 정하는 자와 협의하고, 제2호에서 열거하는 것일 경우에는 동호에서 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도도부현이 당해도도부현의 구역(지정도시구역 및 중핵시의 구역(중핵시의 구역에 있어서는 녹지보전지구의 구역에 한정한다.)은 제외.)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정도시가 당해지정도시 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또는 중핵시가 당해중핵시 구역내 녹지보전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시민녹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그 예외이다.
    - (1)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교녹지보전구역 및 긴키권의 보전구역 정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교녹지보전구역(녹지보전지역은 제외)내의 토지구역 : 도부현지사(당해 토지가 지정도시의 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지정도시의 장)
    - (2) 녹지보전지구내의 토지구역 : 도도부현지사(당해토지가 지정도시의 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지정도시의 장, 당해토지가 중핵시의 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중핵시의 장)
  5. 지방공공단체 또는 제1항의 녹지관리기구가 시민녹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시민녹지구역임을 알리는 내용을 당해구역내에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 1999년법률제160호로, 2001년 1월 6일부터 - 의 부분은「국토교

〈부 록〉

통성령」으로 개정한다.(1995법68·추가, 1999법87·일부개정)

제20조의3 (국가등의 원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시민녹지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시민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하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전 조제1항의 녹지관리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언, 지도 기타의 원조를 하도록 힘쓴다.(1995법68·추가)

제20조의4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등의 특례)

1.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교녹지보전구역(녹지보전지구는 제외)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시민녹지계약에서 정해진 당해시민녹지내의 녹지보전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에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긴키권의 보전구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교녹지보전구역(녹지보전지구는 제외)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시민녹지보전구역에서 정해진 당해시민녹지내의 녹지보전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에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1995법68·추가)

제20조의5 (도시의 미관풍치 유지를 위한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특례) 차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녹지관리기구가 관리하는 시민녹지내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으로 도시의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1962년법률제142호)제2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보존수 또는 보존수림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동법 규정에 적용에 대해서는, 동법제5조제1항중「소유자」는 「소유자 및 도시녹지보전법(1973년법률제72호)제2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수목의 녹지관리기구」이고, 동법제6조제2항 및 제8조중 「소유자」는 「도시계획녹지보전법제2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녹지관리기구」, 동법제9조중「소유자」는 「소유자 또는 도시녹지보전법 제2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녹지관리기구」로 한다.(1995법68·추가)

### 제 3 장의3 녹지관리기구(1995법68·추가)

#### 제20조의6 (지정)

1. 도도부현지사는 도시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1896년법률제89호)제34조의 법인으로, 차조 각 호에서 열거하는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그 신청에 의하여 녹지관리기구(이하「기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 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경우, 당해기구의 명칭, 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공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3. 기구가 그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내용을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4. 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당해신고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안된다.(1995법68·추가)

#### 제20조의7 (업무) 기구는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1) 시민녹지의 설치 및 관리 또는 시민계획구역내의 녹지의 매입 및 매입한 녹지를 보전하는 일
- (2) 녹지의 보전 및 녹화의 추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일
- (3) 녹지의 보전 및 녹화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조언을 하거나 지도하는 일
- (4) 녹지의 보전 및 녹화의 추진에 관한 조사 및 연구하는 일
- (5) 전각호에 열거하는 업무에 따르는 일을 수행하는 일(1995법68·추가)

#### 제20조의8 (지방공공단체와의 연휴) 기구는 지방공공단체와의 밀접한 연휴로 전조제1호에 열거하는 업무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1995법68·추가)

#### 제20조의9(개선명령) 도도부현지사는 기구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1995법68·추가)

<부 록>

제20조10 (지정의 취소등)

1. 도도부현지사는 기구가, 전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지 않으면 안된다.(1995법68·추가)

제20조11 (정보의 제공등)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는 기구에 대하여, 그 업무 실시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 또는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1995법68·추가)

**제 4 장 별 칙**

제21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1994법40·일부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
-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따르는 조건을 위반하는 자

제23조 (1994법40·일부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
-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자
-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입입검사 또는 입입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 (4) 제20조9의 규정에 의한 도도부현지사의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자

제24조 (1994법40·1995법68·일부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내지는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전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

과한다.

**부칙 초(抄)**

제 1 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1974년 정령 제2호로 1974년 2월1일부터 시행)

**부 칙(1993년11월12일법률제89호) 초**

제 1 조 (시행일) 이 법률은 행정수속법(1993년법률제88호)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 1994년10월1일)

제 2 조 (자문등이 행해진 불이익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전에 법령에 기초하여 심의회 기타 합의제의 기관에 대한 행정수속법제13조에서 규정하는 청문,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수속 기타의 의견진술을 위한 수속에 상당하는 수속을 집행할 것을 자문 기타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자문 기타 청구와 관련된 불이익처분의 수속에 관해서는 그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관계법률의 규정에 관계없이, 역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역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따르는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행해진 청문(聽聞), 청문(聽問) 또는 청문회(불이익처분에 관한 것은 제외) 또는 이를 위한 수속은 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관계법률의 상당규정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정령에의 위임)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 정해진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 록〉

### 부 칙(1994년6월24일법률제40호) 초

제 1 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1994년 정령 제328호로 1994년10월20일부터시행)

제 2 조 (1인녹화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전에 도시녹지보전법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공고가 있던 녹화협정에 대한 개정후의 동법제20조제4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중「3년」이라 한 것을「1년」으로 한다.

### 부 칙(1995년4월19일 법률제68호) 초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1995년 정령 제291호로 1995년8월1일부터시행)

제 2 조 (녹화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전에 개정전의 도시녹지보전법(이하「구법」이라 한다)제16조제2항(구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의 공고가 있던 녹화협정은, 개정후의 도시녹지보전법(이하「신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신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의 공고가 있던 녹지협정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1994년 10월20일전에 구법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구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의 공고가 있던 녹화협정이 녹지협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역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전에 행해진 구법 제14조제4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신법 제14조제4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으로 본다.

### 부 칙(1999년 7월16일법률제87호) 초

제 1 조 (시행일) 이 법률은 2000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규정은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250조 다음의 5조, 절명 그리고 2관 및 관명을 부가한 개정규정(동법제250조9제1항에 관한 부분(양의원의 동의를 얻는 일에 관한 부분에 한함)에 한한다.)제40조중 자연공원법부칙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동법 부칙 제10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44조의 규정(농업개량助長法 제14조3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제외) 및 제472조의 규정(시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제외) 및 부칙제 7조, 제10조, 제12조, 제59조단서, 제60조제4항 및 제5항, 제73조, 제77조, 제157조제4항에서 제6항까지, 제160조, 제163조, 제164조 및 제202조의 규정 공포일



## 2. 日本國 都市綠地保全法施行令

제정 1974년 1월 10일 政令 제3호  
개정 1975년 1월 9일 政令 제2호  
1999년 12월 27일 政令 제431호

도시녹지보전법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 도시녹지보전법시행령

내각은 도시녹지보전법(1973년법률제72호)제4조제6항(동법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제5조제1항단서 및 제9항제3호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정령을 규정한다.

제 1 조 (수용위원회 재결의 신청수속) 도시녹지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6항(법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법(1951년법률제219호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성령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동조제3항각호(제3호는 제외)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수용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2 조 (법제5조제1항단서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제5조제1항단서의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행위로 한다.

- (1) 고속자동차국도 또는 도로법(1952년법률제180호)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수선 내지는 재해복구(이러한 도로와 이 도로 이외의 도로(도로운송법(1951년법률제183호)에 의한 일반자동차도는 제외.)의 개축(소규모의 확장, 포장, 구배(기울기)의 완화, 선형의 개량, 기타 도로의 현상에 심한 변형을 미치지 않는 것에 한정함.), 유지, 수선 내지는 재해복구에 따르는 행위
- (2) 도로운송법에 의한 일반자동차로의 조설(일반자동차로와 이 이외의 도로(고속자동차국도 및 도로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또

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3) 하천법(1964년법률제167호)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천 또는 동법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하천의 개량공사 시행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4) 수질원공단개량법(1961년법률제218호)제18조제1항(동항제4호는 제외한다.)또는 제2항(동항 제3호는 제외.)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따르는 행위(전호에 열거하는 것은 제외.)
- (5) 사방법(1897년법률제27호)에 의한 사방공사의 시행 또는 사방설비의 관리(동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준용되는 것을 포함.)에 따르는 행위
- (6) 산사태방지법(1958년법률제30호)에 의한 산사태방지공사의 시행 또는 산사태방지지설의 관리에 따르는 행위
- (7) 급경사지의 붕괴에 의한 재해방지에 관한 법률(1969년법률제57호)에 따라 급경사지붕괴방지공사의 시행 또는 급경사지붕괴방지지설의 관리에 따르는 행위
- (8) 지방공공단체 또는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가 임시석탄광해복구법(1952년법률제295호)에 의해 시행하는 복구공사에 따르는 행위
- (9) 삼림법(1951년법률제249호)제41조에서 규정하는 보안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르는 행위
- (10) 토지개량법(1949년법률제195호)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에 따르는 행위(수면의 매립 및 간척은 제외.)
- (11) 지방공공단체 또는 농업, 임업 내지는 어업을 하는 자가 조직하는 단체가 행하는 농업구조, 임업구조, 또는 어업구조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에 따르는 행위(수면의 매립 및 간척은 제외.)
- (12) 일본철도건설공단 또는 본주사국연락교(본섬과 시고쿠를 연결하는 다리)공단이 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역, 조차장, 차고 기타 이러한 류의 것(이하「역등」이라 함.)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13) 철도사업법(1886년법률제92호)에 의한 철도사업자 또는 색도사업자가 행하는 철도사업 또는 색도사업으로 일반수요에 부응하는 용

〈부 록〉

- 도로 쓰이는 시설의 건설(철도사업에 있어서는 역등의 건설을 제외.)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14) 궤도법(1921년법률제76호)에 의한 궤도의 부설(역등의 건설은 제외.)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15) 석유파이프라인사업법(1972년법률제105호)에 의한 석유파이프라인사업용으로 쓰이는 도관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16) 해안법(1956년법률제101호)에 의한 해안보전시설에 관한 공사의 시행 또는 해안보전시설의 관리에 따른 행위
- (17) 항만법(1050년 법률제218호)에 의한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철도 및 궤도(역등은 제외.)에 한함.) 항행보조시설, 항만공해방지시설(공해방지용완충지대에 한함.) 내지는 항만환경정비시설의 설치 내지는 관리 또는 임항교통시설(도로 및 교량에 한정.)의 개축(소규모의 확폭, 포장, 구배의 완화, 선형의 개량 기타 당해시설의 현상에 커다란 변경을 미치지 않는 것에 한함.), 유지, 수선 또는 재해복구에 따르는 행위
- (18) 어항법(1950년법률제137호)에 의한 외곽시설, 계류시설, 수역시설, 운송시설(철도(역등은 제외.)에 한함.)항행보조시설 내지는 어항환경정비시설의 설치 내지는 관리 또는 운송시설(도로 및 다리에 한함.)의 개축(소규모의 확폭, 포장, 구배의 완화, 선형의 개량 기타 당해시설의 현상에 커다란 변경을 미치지 않는 것에 한함.), 유지, 수선 또는 재해복구에 따르는 행위
- (20) 향로표식법(1949년법률제99호)에 의한 향로표식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21) 항공법(1952년법률제231호)에 의한 항공보안시설로 공공용으로 쓰이는 것 또는 동법제96조에서 규정하는 지시에 관한 업무용으로 쓰이는 레이더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22) 기상, 해상, 지상 또는 홍수 기타 이에 준하는 현상의 관측 또는 통보용으로 쓰이는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23)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유선전기통신설비 또는 무선설비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24) 전기통신사업법(1984년법률제86호)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1종전기통신사업자가 행하는 사업용으로 쓰이는 설비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25)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1957년법률제152호)에 의한 유선방송전화업무용으로 쓰이는 설비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26) 방송법(1950년법률제132호)에 의한 방송사업용으로 쓰이는 방송설비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27) 유선텔레비전방송법(1972년법률제114호)에 의한 유선텔레비전방송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28) 전기사업법(1964년법률제170호)에 의한 일반전기사업, 정전기사업 또는 특정전기사업용으로 쓰이는 전기공작물의 설치(발전용으로 쓰이는 전기공작물의 설치는 제외.)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29) 가스사업법(1954년법률제151호)에 의한 가스공작물의 설치(동법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일반가스사업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간이가스사업용으로 쓰이는 가스공작물의 설치에 한하고, 액화석유가스이외의 원료를 주원료로 하는 가스제조용으로 쓰이는 가스공작물의 설치는 제외.)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30) 수도법(1957년법률제177호)에 의한 수도사업 또는 수도용수공급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1958년법률제84호)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용으로 쓰이는 수관, 수로 또는 배수지, 하수도법(1958년법률제79호)에 의한 하수도의 배수관 또는 이러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펌프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31) 경찰서의 파출소 또는 주재소 또는 도로교통법(1960년법률제105호)에 의한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32) 시정촌이 행하는 소방법(1948년법률제86호)에 의하여 소방요으로 쓰이는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33) 도도부현 또는 수방법(1949년법률제193호)에 의한 수방관리단체가 행하는 수방요으로 쓰이는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34) 문화재보호법(1950년법률제214호)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중요문화재, 동법제56조10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중요

<부 록>

유형민속문화재, 동법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매장문화재, 동법제69조1항에 의해 지정되거나 또는 동법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또는 동법제83조3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전통적 건조물군보존지구내에 소재하는 전통적건조물군의 보존에 따르는 행위

- (35) 도시공원법(1956년법률제79호)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36) 자연공원법(1957년법률제161호)에 의한 공원사업 또는 도도부현립자연공원과 이에 상당하는 사업의 집행에 따르는 행위
- (37) 도시계획법(1968년법률제100호)제4조제15항에 규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행하는 행위 (1975정2·1975정293·1999정431·일부개정)

제 3 조 (법제5조제9항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제5조제9항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이다.

- (1) 다음에 열거하는 공작물(건축물이외의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 있어서도 같다)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a. 가설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b. 수도관, 하수도관 기타 이러한 류의 공작물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c. 다음에 열거하는 옥외광고물의 표시 또는 계출을 위해 필요한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항만법에 규정된 항무국을 포함.)가 공공적 목적을 갖고 표 시하거나 또는 계출하는 옥외광고물
    - 2)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옥외광고물 또는 건설성령으로 영업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 고 여겨지는 옥외광고물
  - d.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으로 그 신축, 개축, 또는 증축에 따른 부분의 높이가 1.5m이상인 것
- (2) 면적이 10평방미터이하인 토지 형질의 변경으로, 높이가 1.5m를 넘는 경사면이 생기는 절토 또는 성토를 동반하지 않는 것
- (3) 다음에 열거하는 목축의 채벌

- a. 제벌(除伐), 간벌, 정지등 목죽의 보육을 위해 통상 행해지는 목죽의 벌채
  - b. 마르거나 손상된 목죽 또는 위험한 목죽의 벌채
  - c. 자가생활용으로 쓰기 위해 필요한 목죽의 벌채
  - d. 가식한 목죽의 벌채
  - e. 높이가 1.5m를 넘지 않고, 1.5m높이에서 가지의 주위가 1.5m를 넘지 않는 독립목의 벌채
  - f. 측량, 실지조사 또는 시설의 보수에 지장이 있는 목죽의 벌채
- (4) 면적이 10평방미터이하의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 (5) 전각호에서 열거하는 것 이외,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
- a. 법령 또는 이에 기초한 처분에 의한 의무의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 b. 건축물이 있는 택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단,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제외
    - 1)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2) 건축물이외의 공작물 중 당해택지에 있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물건장 기타의 건설성 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외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3) 높이가 1.5m를 넘을 위험이 생기는 절토 또는 성토를 동반한 토지형질의 변경
    - 4) 높이가 5m를 넘는 목죽의 벌채
  - c.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 단,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는 제외
    - 1)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단, 물치, 작업실등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으로, 그 신축, 개축, 증축과 관련된 바닥면적의 합계가 90평방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2) 용배수시설(폭원이 2m이하인 용배수로는 제외.) 또는 폭원이 2m를 넘는 농도 또는 임도의 설치
    - 3) 택지의 조성(1)의 단서에 규정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의 것은 제외함.) 또는 토지의

〈부 록〉

개간

4) 삼림의 개벌(皆伐) 또는 택벌(擇伐). 단, 임업을 위해 행하는 것은 제외.

5)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d. 삼림법제34조제2항의 허가를 허가 받아 이루어지는 행위  
(1994정329·1995정292·일부개정)

제 4 조 (법률제14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토지) 법 제14조제1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토지는 도로, 철도, 하천, 공원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용으로 쓰이는 시설로, 건설성령으로 정해진 것에 쓰이는 토지 또는 농지, 채목방목지 및 삼림이다.

제 5 조 (법제20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규모) 법제20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300평방미터이다.(1995정292·추가)

**부 칙 초**

제 1 조 (시행일) 이 정령은 법시행일(1974년2월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년9월19일정령제280호) 초**

제 1 조 (시행일) 이 정령은 석탄광해배상등 임시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일(1996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년12월27일정령431호) 초**

제 1 조 (시행일) 이 정령은 2000년3월21일부터 시행한다.

### 3. 日本國 都市綠地保全法施行規則

제정 1974년 1월31일 건설성령 제1호  
개정 1994년10월20일 건설성령 제30호  
개정 2000년1월17일 건설성령 제9호

도시녹지보전법(1973년법률제72호)제15조제1항(동법제17조제2항에 의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제16조제1항제3호((동법제17조제2항에 의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제2항((동법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의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그리고 도시녹지보전법시행령(1974년정령제3호)제1조, 제3조제1호 및 제5호,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리고 도시녹지보전법을 실시하기 위해, 도시녹지보전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도시녹지보전법시행규칙

제 1 조 (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신청서의 양식) 도시녹지보전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제1조의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양식은 별기 양식에 의한다.

제 2 조 (녹지보전지구에 있어서 행위의 허가신청등의 수속) 도시녹지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동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도도부현지사(지방자치법(1947년법률제67호)제252조19제1항의 지정도시 및 동법제252조의22제1항의 중핵시에 있어서는 각각 그의 장)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1995년경8·일부개정)

제 3 조 (령제3조제1호 c.2)의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옥외광고물) 영제3조1호c.2)의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옥외광고물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도로운송법(1951년 법률 제183호)에 의한 일반승합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쓰이는 정류소표식(안내표식을 포함함)



<부 록>

- (2) 사업을 위하여 자기주소, 사업장, 또는 정류소에 있어서 자신의 씨명, 명칭, 점명 또는 상표, 자신의 사업내용을 표시하는 옥외광고물(전호에 열거하는 것은 제외)로 당해주소, 사업장 또는 정류소마다의 표시면적의 합계가 0.3평방미터 이하이고, 높이는 3m이하인 것
- (3) 토지 또는 물건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토지, 또는 물건에 표시하거나 제출하는 옥외광고물로 당해토지, 또는 물건마다의 표시면적의 합계가 0.3평방미터 이하이고, 높이는 3m이하인 것

제 4 조 (령 제3조제5호b.2)의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령제3조제5호b.2)의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은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도로(사도는 제외.)에서 용이하게 들여다볼 수 없는 물간장 또는 당해건축물의 높이를 넘지 않는 높이의 물간장(빨래를 말리는 장소)
- (2) 소화설비
- (3) 건축기준법(1950년법률제201호)제2장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설비(소화설비 및 당해건축설비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지붕의 최상단으로부터의 높이가 2m를 넘는 것(피뢰침은 제외.)은 제외한다.)
- (4) 수신용의 공중선계(그 지지물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비슷한 것
- (5) 깃대 기타 이와 비슷한 것
- (6) 지하에 설치한 공작물(건축물은 제외.)
- (7) 높이가 5m이하인 기타 공작물(건축물은 제외)

제 5 조 (령제4조의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으로 쓰이는 시설) 령 제4조의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케도, 수로, 녹지 및 광장으로 한다.

제 6 조 (녹지협정의 공고) 법 제15조제1항(법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촌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 (1) 녹지협정의 명칭
- (2) 녹지협정구역
- (3) 녹지협정인접지가 정해졌을 때에는 그 구역
- (4) 녹지협정의 종람장소(1994년령30·1995년령21·일부개정)

제 7 조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의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녹지협정구역은 그 경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된다.
- (2) 보전 또는 식재하는 수목등의 종류는 녹지협정구역내 토지의 풍토에 적합하고, 당해수목등의 보전 또는 식재에 의하여 지역주민등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3) 수목등을 보전 또는 식재하는 장소는 중정등 오로지 특정인의 감상등의 용도로 이용되는 장소여서는 안된다.
- (4) 보전 또는 설치하는 담 또는 목책의 구조는 당해녹지협정구역내 토지등의 상호 개방성을 크게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단, 생울타리는 그 예외이다.
- (5) 보전 또는 식재하는 수목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지치기, 정지, 병해충방제 기타 이와 비슷한 사항으로 식목등의 보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어야 한다.
- (6) 기타 녹지보전, 녹화에 관한 사항은 수경시설에 관한 사항(공장입지법(1959년법률제24호)제4조제1항의 제조업등에 관한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 식재 및 잔디의 규모, 배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조명시설에 관한 사항 및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녹지협정구역내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 (7) 녹지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상 30년이하이지 않으면 안된다.(1994년경30·1995년경21·일부개정)

제 8 조 (법제16조제1항제4호의 건설성령으로 정한 기준)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건설성령으로 정한 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녹지협정구역인접지의 구역은 그 경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 (2) 녹지협정구역인접지의 구역은, 녹지협정구역과 일체성을 가진 토지 구역이지 않으면 안된다.(1994년경30·추가, 1995년경21·일부개정)

제 9 조 (녹지협정의 인가등의 공고) 제6조의 규정은 법 제16조제2항(법제17조제2항, 법제17조제4항, 법 제18조제4항 또는 법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준용한다.(1994년경30·舊제8조續下·일부개정, 1995년경21·일부개정)

〈부 록〉

제10조 (법제20조2제3항의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법 제20조2제3항의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1995년2월21일·추가)

제11조 (시민녹지의 공고) 법 제20조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보, 게시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 (1) 시민녹지의 명칭
- (2) 시민녹지의 구역
- (3) 시민녹지의 관리기간
- (4) 시민녹지내 녹지보전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설이 정해졌을 때에는, 그 시설(1995년2월21일·추가)

#### 부 칙 초

제 1 조 (시행일)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1974년2월1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0년1월17일건설성령제9호)

제 1 조(시행일) 이 성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성령을 시행할 때에, 이미 있었던 성령에 의한 개정 전 양식에 의한 용지는, 당분간 이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 4. 日本國 首都圈近郊綠地保全法

제정 1966년 6월30일 법률 제101호  
개정 1968년6월15일 법률 제101호  
1999년12월22일 법률 제160호

(미시행 권말「중앙성청등개혁관계법시행법」제1161조 참조)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을 이에 공포한다.

###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

제 1 조 ( 목 적 ) 이 법률은 수도권의 근교정비지대에 양호한 자연환경을 가진 녹지를 보전하는 일이, 수도권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현재 및 장래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나아가 수도권의 질서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조건임을 감안, 그 보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교정비지대의 무질서한 시가지화를 방지하고, 아울러 수도권의 질서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 의 )

1. 이 법률에서「근교정비지대」란 수도권정비법(1956년법률제83호)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근교녹지」란, 근교정비지대내의 녹지에 있어서 수림지, 수변지 내지는 그 상황이 이와 유사한 토지가 단독으로 혹은 일체가 되어, 또는 이에 인접한 토지가 이러한 것과 일체가 되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거나 또는 상당규모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제 3 조 ( 근교녹지보전구역의 지정 )

1. 내각총리대신은 근교녹지중에서 무질서한 시가지화의 위험이 크거나, 또는 이를 보전함으로써 얻어지는 수도 및 그 주변지역 주민의 건전한 심신의 보전 및 증진 또는 이러한 지역의 공해 내지는 재해방지의 효과가 현저한 근교녹지의 토지구역을, 근교녹지보전구역(이하「보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내각총리대신이 보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공공단체

<부 록>

및 국토심의회 의 의견을 듣고 또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내각총리대신이 관계지방공공단체로부터 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회답하도록 한다.

4. 보전구역의 지정은 내각총리대신이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5. 전2항의 규정은 보전지역의 변경에 따라 준용한다.(1974법98·1978법55·1999법87·일부개정)

#### 제 4 조 (근교녹지보전계획)

1. 내각총리대신이 보전구역을 지정할 때, 당해보전구역에 대하여 근교녹지보전에 관한 계획(이하「근교녹지보전구역」이라 한다.)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근교녹지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 (1) 보전구역내에서의 행위의 규제, 기타 당해근교녹지의 보전에 관한 사항
  - (2) 보전구역내에서 당해근교녹지 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 (3) 근교녹지특별보전지구(보전구역내의 녹지보전지구로 보전구역내에 있어서 근교녹지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시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 (4) 근교녹지특별보전지구내에서의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
3. 근교녹지보전계획은 환경청장관과 협의하고, 또한 수도권정비법이 정하는 수속에 의하여, 근교정비지대의 정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동법제 21조제3항의 정비계획으로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1971법88·1973법72·1974법98·일부개정)

#### 제 5 조 (근교녹지특별보전지구에 관한 도시계획)

1. 보전구역내의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토지구역에 대해서는, 전조제2항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계획에 근교녹지특별보전지구를 정할 수 있다.
  - (1) 근교녹지특별보전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을 정함으로써 얻어지는 수

도 및 그 주변지역 주민의 건전한 심신 유지, 내지는 증진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의 공해 및 재해방지의 효과가 특히 현저한 것.

(2) 특히 양호한 자연환경인 것.

2. 건설대신은 근교녹지특별보전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을 정하거나 또는 그 결정 내지는 변경에 동의하고자 할 때, 먼저 국토청장관의 의견 및 공업입지상의 관점에서 본 통상산업대신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면 안된다.(1968법101·1971법88·1973법72·1974법98·1999법87·일부개정)

제 6 조 (지정준비를 위한 토지의 입입등)

1. 국토청장관은 보전구역지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들어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필요한 한도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직접 입입하거나 또는 그가 명한자 내지는 위임한자를 입입시킬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입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그 내용을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소재하거나 또는 담, 목책등으로 둘러싸인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들어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입입자는 먼저, 그 내용을 토지점유자에게 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일출전 및 일몰후는 토지점유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입입해서는 안된다.
5.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입입을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7.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통상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한다.
8.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국토청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 록〉

9.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국토청장관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1951년법률제219호)제9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1968법101·1974법98·일부개정)

제 7 조 삭제 (1973법72)

제 8 조 (보전구역에서의 행위의 신고)

1. 보전구역(녹지보전지역은 제외.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음.)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도현지사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2) 택지조성, 토지의 개간, 토석채취, 광물의 굴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3) 목축의 별채
  - (4)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 (5) 전각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당해근교녹지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정령으로 정한 것
2. 도현지사는 전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당해근교녹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를 한 자에게, 필요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3. 국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도도부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4.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1) 근교녹지보전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행위
  - (2) 통상의 관리행위, 경이한 행위, 기타의 행위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
  - (3) 보전구역이 지정되거나 또는 그 구역이 확장되었을 때 이미 착수된 행위
  - (4) 비상재해를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 (5) 전각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공익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따르는 행위 중, 당해근교녹지보전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한 것 (1973법72·1974법98·일부개정)

제9조에서 13조까지 삭제

제14조 (비용의 부담 및 삭제)

1. 보전구역내의 근교녹지보전에 필요한 비용은 도현의 부담으로 한다.
2. 국가는, 도현이 행하는 도시녹지보전법(1973년법률제72호)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동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 그리고 지정촌이 실시하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 중, 근교녹지특별보전지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한다.(1968법101·1973법72·1994법40·일부개정)

제15조 삭제(1973법72)

제16조 (대도시의 특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도현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1947법률제67호)제252조19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이조에서「지정도시」라 함.)에서는 지정도시가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이 법률중 도현에 관한 규정은 지정도시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정도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1999법87·일부개정)

제17조 (근교녹지특별보전지구내의 근교녹지보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한 배치) 국가는 도현이 근교녹지특별보전지구내의 근교녹지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금사정 및 당해도현의 재정상태가 허락하는 한, 배려하도록 한다.(1973법72·일부개정)

제1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자
-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신고를 한 자(1973법72·구제21조 조상·일부개정)

제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내지는 그 대리인, 사용인



<부 록>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전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1973법72·구제22조 조상·일부개정)

### 부 칙 초

제 1 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1966년정령제378호로 1966년12월15일부터시행)

### 부 칙 (1972년6월3일법률제52호) 초

제 1 조 (시행기일등)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1972년정령제235호로1972년7월1일부터시행)

... ..

제16조 (토지조정위원회 또는 중앙공해심사위원회가 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률의 시행전에 이 법률에 의한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해 토지 조정위원회 또는 중앙공해심사위원회가 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정령으로 별단의 결정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법률의 상당규정에 의해, 공해등공해조정위원회가 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2. 이 법률을 시행할 때, 이미 이 법률에 의한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해 토지조정위원회 또는 중앙공해심사위원회에 대한 신청 기타의 수속은, 정령으로 별단의 결정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법률의 상당규정에 의해, 공해등공해조정위원회에 대한 수속으로 본다.

### 부칙(1973년9월1일법률제72호) 초

(시행기일)

제 1 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1974년정령제2호로1974년2

월1일부터시행)

... ..

제 6 조(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전에, 이 법률에 의한 개정전의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 긴키권의 보전구역정비에 관한 법률 또는 광업등에 의한 토지이용의 조정수속등에 관한 법률(이러한 법률에 기초한 명령을 포함함.)규정에 의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광업등에 따른 토지이용의 조정수속등에 관한 법률(이러한 법률에 기초한 명령을 포함.)의 상당규정에 의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로 본다.

... ..

제8조(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전에 한, 이 법률에 의한 개정전의 수도권 근교녹지보전법 또는 긴키권 보전구역 정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74년6월26일법률제98호) 초**

제 1 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

제53조(경과조치)

1. 이 법률의 시행시에 이미 이 법률에 의한 개정전의 국토종합개발법, 수도권정비법, 수도권의 근교정비지대 및 도시개발구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수도권의 기성시가지에서의 광업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 쓰쿠바연구학원도시건설법, 긴키권정비법, 긴키권의 근교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의 정비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긴키권 보존구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비와호종합개발특별조치법, 중부권개발정비법, 신산업도시건설촉진법, 과소지역대체급조치법, 아마미군도진흥개발특별조치법, 오카사하라제도부흥특별조치법, 아마미군도진흥특별조치법 및 오카사하라제도부흥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오카사하제도의 복귀에 따른 법령적용의 잠정조치등에 관한 법률, 방재를 위한 집단이전촉진사업에 따른 국가의 재정상의 특별조

〈부 록〉

치등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법,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 감정사특례시험 및 부동산감정사보통례시험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수질원개발공단법(이하「국토종합개발」이라 총칭한다.)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이 내린 허가, 승인, 지정, 기타의 처분 또는 통지, 기타의 행위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국토종합개발법등의 상당규정에 기초하여 상당의 국가기관이 내린 허가, 승인, 지정, 기타의 처분 또는 통지 기타의 행위로 본다.

2. 이 법률이 시행될 때에 이미 이 법률에 의한 개정전의 국토종합개발법등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에 낸 신청, 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국토종합개발법등의 상당규정에 기초하여, 상당 국가기관에 대해 낸 신청, 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제54조 (경과조치) 이 법률이 시행될 때, 이미 효력을 가진 수도권정비위원회규칙, 건설성령 또는 자치성령으로, 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국토종합개발법등의 규정에 의해 총리부령으로 정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이 법률의 시행후는 총리부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부칙(1978년5월23일법률제55호) 초**

제 1 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서 열거하는 규정은 당해각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생략

- (2) 제1조(태풍상습지대대책심의회에 관한 부분은 제외.) 및 제6조부터 9조까지의 규정, 제10조중 아마미군도진흥개발특별특별조치법제7조 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서 제32조까지의 규정, 1979년3월31일까지 사이에 정령으로 정한 날(1979년정령제32호로1979년3월31일부터시행)

**부 칙(1999년7월16일법률제87호) 초**

제 1 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0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규정은 당해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250조 다음에 5조, 절명 및 2관 그리고 관명을 추가하는 개정규정(동법제250조9제1항에 관한 부분(양원의원의 동의를 얻는 일에 관한 부분은 제외.)에 한함.), 제40조중 자연공원법부칙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동법부칙제10항에 관한 부분에 한함.) 제244조의 규정(농업개량조장법제14조3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제외.) 및 부칙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59조단서, 제60조제4항 및 제5항, 제73조, 제77조, 제157조제4항에서제6항까지, 제160조 및 202조의 규정 공포일

## 5. 日本國 首都圏近郊綠地保全法施行令

제정 1967년2월2일 정령 제13호  
개정 1969년6월13일 정령 제158호  
1991년9월25일 정령 제304호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을 이에 공포한다.

###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시행령

내각은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1966년법률제101호)제6조제9항(동법제7조제5항 및 제11조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8조제4항제2호 및 제5호 그리고 제9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기초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제 1 조 (수용위원회 재결의 신청수속)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이하「법」이라 함.)제6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1951년법률제219호)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동조제3항각호(제3호는 제외.)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수용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1974년정 3·일부개정)

제 2 조 (법제8조제4항제2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 제8조제4항제2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행위로 한다.

- (1) 다음에 열거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a. 지하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b. 건축물의 개축 또는 증축으로, 그 개축 또는 증축에 따른 부분의 높이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m 및 10평방미터 이하인 것
- (2) 다음에 열거하는 공작물(건축물이외의 공작물을 말함. 이하 이호에 있어서 같음.)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a. 가설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b.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c. 다음에 열거하는 옥외광고물의 표시 또는 게재를 위해 필요한 공

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적 목적을 갖고 표시하거나 또는 게재하는 옥외광고물

2)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옥외광고물 또는 총리부령으로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정한 옥외광고물

d. 전기공급을 위한 전선로, 유선전기통신을 위한 선로 또는 공중선계(그 지지물을 포함.)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신축, 개축 또는 증축에 따른 부분의 높이가 20m를 넘는 것은 제외.)

e.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으로, 그 신축, 개축 또는 증축에 따른 부분의 높이가 5m이하인 것

(3) 다음에 열거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a. 면적이 60평방미터이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높이가 5m를 넘는 경사면이 생기는 절토 또는 성토를 동반하지 않는 것

b. 지하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

(4) 다음에 열거하는 목죽의 벌채

a. 벌채, 간벌, 정지등 목죽의 보육을 위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목죽의 벌채

b. 고손된 목죽 또는 위험한 목죽의 벌채

c. 자가용으로 쓰기 위해 필요한 목죽의 벌채

d. 가식한 목죽의 벌채

e. 높이가 15m를 넘지 않고, 1.5m높이에서 가지의 주위가 1.5m를 넘지 않는 독립목의 벌채

f. 측량, 실지조사 또는 시설의 보수에 지장이 있는 목죽의 벌채

(5) 면적이 60평방미터이하의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6) 전각호에서 열거하는 것 이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

a. 법령 또는 이에 기초한 처분에 의한 의무의 수행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b. 건축물이 있는 택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단,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제외

1)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부 록〉

2) 높이가 5m를 넘는 목죽의 벌채

c.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이하 「농업등」이하 함.)을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 단,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는 제외

1)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단, 물치(物置), 작업실등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으로, 그 신축, 개축, 증축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90평방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함

2) 용배수시설(폭원이 2m이하인 용배수로는 제외.) 또는 폭원이 2m를 넘는 농도 또는 임도의 설치

3) 택지의 조성(1)의 단서에 규정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은 제외함.) 또는 토지의 개간

4) 삼림의 개벌(皆伐) 또는 택벌(擇伐). 단, 임업을 위해 행하는 것은 제외.

5)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1974정225·일부개정)

제 3 조 (법 제8조제4항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제8조제4항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행위로 한다.

(1) 고속자동차국도 내지는 도로법(1952년법률제180호)에 의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수선 또는 재해복구(이러한 도로와 이러한 도로이외의 도로(도로운송법(1951년법률제183호)에 의거하는 일반자동차로는 제외.)와 연결하는 시설의 신설 또는 개축은 제외.)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자동차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의 개축(소규모의 확장, 포장, 구배(기울기)의 완화, 선형의 개량 기타 도로의 현상에 현저한 변경을 미치지 않는 것에 한함.), 유지, 수선, 내지는 재해복구에 관한 행위

(2) 도로운송법에 의한 일반자동차의 조설(일반자동차와 이 이외의 도로(고속자동차국도 및 도로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과를 연결하는 시설의 조설은 제외.)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3) 하천법(1964년법률제167호)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하천 또는 동법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하천개량공사의 시행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4) 수질원개발공단법(1961년법률제216호)제18조제1항(동항제4호는

- 제외.)에 규정하는 업무에 따른 행위(전호에 열거하는 것은 제외.)
- (5) 사방법(1955년법률제29호)에 의한 사방공사의 시행 또는 사방설비의 관리(동법에 규정하는 사항이 준용되는 것을 포함.)에 따르는 행위
  - (6) 산사태등 방지법(1958년법률제30호)에 의한 산사태방지공사의 시행 또는 산사태방지시설의 관리에 따르는 행위
  - (7) 삼림법(1951년법률제249호)제41조에 규정하는 보안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르는 행위
  - (8) 토지개량법(1949년법률제195호)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에 따르는 행위(수면매립 또는 간척은 제외.)
  - (9) 지방공공단체 또는 농업등을 하는 자가 조직하는 단체가 행하는 농업구조, 임업구조 또는 어업구조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에 따르는 행위(수면매립 또는 간척은 제외.)
  - (10) 일본철도건설공단이 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역, 조차장, 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역등」이라 한다.)의 건설은 제외.)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11) 철도사업법(1986년법률제92호)에 의해 철도사업자 또는 색도(索道)사업자가 행하는 철도사업 또는 색도사업으로 일반수요에 응하는 용도로 공급하는 시설의 건설(철도사업에 있어서 역등의 건설은 제외.)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12) 궤도법(1921년법률제76호)에 의한 궤도의 부설(역등의 건설은 제외.)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12의2) 석유파이프라인사업법(1972년법률제105호)에 의한 석유파이프라인사업용으로 제공되는 도관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13) 해안법(1956년법률제101호)에 의해 해안보전시설에 관한 공사의 시행 또는 해안보전시설관리에 따르는 행위
  - (14) 향로표식법(1949년법률제99호)에 의한 향로표식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15) 향측법(1948년법률제174호)에 의한 신호소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부 록〉

- (16) 항공법(1952년법률제231호)에 의한 항공보안시설로 공공용으로 쓰이는 것 또는 동법제96조에 규정하는 지시에 관한 업무용으로 쓰이는 레이더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17) 기상, 해상, 지상 또는 홍수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의 관측 또는 통보용으로 쓰이는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18)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유선전기통신설비 또는 무선설비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19) 전기통신사업법(1984년법률제86호)제12조제1항에 규정하는 제1종전기통신사업자가 행하는 사업용으로 제공되는 설비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20)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1957년법률제152호)에 의한 유선방송전화업무용으로 쓰이는 설비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21) 방송법(1950년법률제132호)에 의한 방송사업용으로 쓰이는 설비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22) 전기사업법(1964년법률제170호)에 의한 전기사업용으로 제공되는 전기공작물의 설치(발전용으로 쓰이는 전기공작물은 제외.)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23) 가스사업법(1954년법률제51호)에 의한 가스공작물의 설치(액화석유가스이외의 원료를 주원료로 하는 가스제조용으로 쓰이는 가스공작물의 설치는 제외.)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24) 수도법(1957년법률제177호)에 의한 수도사업 또는 수도용수공급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법(1948년법률제84호)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용으로 쓰이는 수관, 수로 또는 배수지, 하수도법(1958년법률제79호)에 의한 하수도의 배수관 또는 이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펌프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25) 경찰서의 파출소 또는 주재소 그리고 도로교통법(1960년법률제105호)에 의한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26) 시정촌이 행하는 소방법(1948년법률제186호)에 의해 소방용으로 쓰이는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27) 도현 또는 수방법(1949년법률제193호)에 의한 수방관리단체가 행하는 수방용으로 쓰는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28) 문화재보호법(1950년법률제214호)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중요문화재, 동법제56조10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중요유형민속문화재, 동법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매장문화재, 동법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되거나 또는 동법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가지정된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또는 동법제83조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내에 소재하는 전통적건조물군의 보존에 따르는 행위
- (29) 도시공원법(1956년법률제79호)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르는 행위
- (30) 자연공원법(1957년법률제161호)에 의한 공원사업 또는 도현립자연공원의 이에 상당하는 사업의 집행에 따르는 행위
- (31) 도시계획법(1968년법률제100호)제4조제15항에 규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1669정158·1972정437·1975정2·1975정293·1975정306·1981정144·1985정311987정54·1991정304·일부개정)

### 부칙 초

제 1 조 (시행일) 이 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1987년3월20일정령제54호) 초

제 1 조 (시행일) 이 정령은 1987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 6. 日本 金澤市 綠化協定事業取扱要望

제 1 조 (목 적) 이 요강은 본시에 있어서 민유지의 녹화(이하 「민유지녹화」라 한다.)에 관한 협정을 정함으로서 녹색도시선언(1974년 의회결정) 및 가나자와시 녹화추진요강(1974년 7월 결정)에 기초하여 지역의 녹화를 추진하고 녹화사상의 보급과 녹음이 풍성한 생활환경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시의 임무 등) 본 시는 도시에 있어서 녹화가 시민의 건강에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간주하여 민유지녹화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한다.

2. 시민 및 사업자는 민유지의 녹화가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함과 동시에 본 시가 추진하는 민유지녹화의 추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한다.

제 3 조 (녹화협정의 대상) 시민 및 사업자는 자신의 지역에 대한 녹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를 정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녹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 (1) 크게는 마을회의, 또는 단지를 단위로 하는 구역(이하 「주택지」라 한다.)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소유자와 상호협의를 의하여 당해 주택지에 대한 녹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 주택녹화협정
- (2) 사립의 교육시설, 복지시설 그 밖의 공익시설의 관리자가 당해 공익시설의 구역에 대한 녹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공익시설녹화협정
- (3) 상점가가 그 구성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상점가 구역에 대한 녹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상점가녹화협정
- (4) 택지면적이 약 500평방미터 이상인 사업소의 관리자가 당해 사업소의 구역에 대한 녹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소녹화협정
- (5) 택지면적이 약 1,000평방미터 이상인 공장의 관리자가 당해 공장의 구역에 대한 녹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녹화협정
- (6) 신사나 불각의 관리자가 당해 경내지의 구역에 대한 녹화를 추진하

고자 하는 경우 - 경내지 녹화협정

제 4 조 (녹화협정의 내용) 녹화협정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녹화협정의 명칭
- (2) 녹화협정의 목적이 되는 토지구역
- (3) 식수 등의 종류
- (4) 녹화협정의 유효기간
- (5) 기타 녹화에 관한 사항

2. 녹화협정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으로 한다. 단, 상점가 녹화협정에 대해서는 5년 이상으로 한다. 기간만료의 경우, 특별히 이의가 없을 때에는 다시 같은 기간동안 갱신할 수 있다.

제 5 조 (녹화협정의 인가) 녹화협정은 시장의 인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2. 녹화협정을 체결하고자하는 시민,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이하「녹화협정대표자」라 한다.)는 녹화협정인가신청서(양식 제1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한다.

- (1) 녹화협정선언서(양식 제2호)
- (2) 주택지녹화협정에 있어서는 녹화협정동의서(양식 제3호)
- (3) 녹화사업계획서(양식 제4호)

3. 시장은 전항의 인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녹화를 추진함이 적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녹화협정인정서(양식 제5호)를 녹화협정대표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4. 시장은 녹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민 및 사업자에 대하여 녹화계획의 책정, 수종의 선정, 식재(植栽)의 방법, 병충해의 방제 기타 녹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가 있다.

제 6 조 (식목 등의 관리) 녹화협정을 체결하고 녹화사업을 실시한 시민 또는 사업자는 식목 등을 양호하게 보존관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힘쓴다.

\* 녹화협정 체결자에 대한 녹화사업의 원조실시요강

제 1 조 이 요강은 가나자와시에 있어서 민유지의 녹화에 관하여 녹화협정을 체결한 시민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이하 「녹화협정대표자」라 한다.)

〈부 록〉

에 대하여 녹화사업의 원조를 행함으로써 지역의 녹화를 추진하고 녹화 사상의 보급과 녹음이 가득한 생활환경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녹화협회는 가나자와시 녹화협정사업취급요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나자와 시장으로부터 녹화협정인가를 받은 녹화협정대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 열거하는 녹화협정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해당 각 호에 정해진 녹화사업의 원조를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 (1) 주택지녹화협정 1주택에 대하여 각 가정 당 식수 3그루씩을 배포하는 일.
- (2) 공익지역녹화협정 1공익시설에 대하여 50만엔 이내의 사업비로 식목을 주체로 한 식재공사를 하는 일.
- (3) 상점가녹화협정 1상점가에 대하여 녹화사업비의 1/3에 상당하는 액(이 액수가 15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엔)이내의 사업비로 flower box의 설치 및 식목 등의 식재공사를 하는 일
- (4) 사업소녹화협정 및 공장녹화협정 1사업소 또는 1공장에 대하여 녹화사업비의 1/3에 해당하는 액(이 액이 5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50만엔)이내의 사업비로 식목을 주체로 하는 식재공사를 하는 일
- (5) 경내지역화협정 1경내지에 대하여 50만엔 이내의 사업비로 식목을 주체로 하는 식재사업을 하는 일

제 3 조 녹화협정대표자는 전조 각 호에 열거된 녹화사업의 원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화사업의 원조신청서(양식 제1호)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각 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 (1) 녹화사업계획서(양식 제2호)
- (2)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4 조 이사장은 녹화사업 원조신청서의 제출이 있고, 그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조를 결정하여 원조결정통지서(양식 제3호)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 5 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녹화사업의 원조를 받은 녹화

협정대표자는 원조에 따른 녹화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속히 녹화사업완료 통지(양식 제4호)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이사장은 녹화사업완료통지를 수리했을 경우, 녹화사업이 완료되었는지 판정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화사업확인서(양식 제5호)를 녹화협정대표자에게 송부 하도록 한다.

제 6 조 이사장은 녹화사업의 완료를 판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녹화사업의 성과가 해당 녹화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녹화사업자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전항의 지시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에 대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화사업원조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해당 녹화협정대표자에 대하여 녹화사업원조에 쓰여진 비용 중 그 취소 분에 해당되는 부분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 7 조 녹화사업의 원조를 받은 시민 또는 사업자는 식목 등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형성되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제 8 조 이 요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녹화사업원조의 실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이 요강은 1990년부터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日本 金澤市 斜面綠地保全條例

### 〈목 차〉

-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 제2장 사면녹지의 보전(제5조-제12조)
- 제3장 원조 및 매입(제13조-제15조)
- 제4장 잡칙(제16조·제17조)

###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가나자와의 기복(起伏)있는 지형을 만듦으로써 시민에게 휴식과 쉼터를 가져다 줄 사면녹지로, 동식물의 귀중한 생식지 또는 생육지로서 지켜, 도시의 방재기능을 확보해가면서 시민과 일체가 되어 풍요로운 거리의 녹음으로써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의의) 이 조례에서「사면녹지」란 가나자와의 거리로부터 손쉽게 올라다보고, 내려다 볼 수 있는 대지(臺地), 또는 구릉의 사면녹지로 수림지, 초지 또는 오르막길 등 녹음이 연속되어 개성적이고 양호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시장의 임무) ①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피하면서 사면녹지를 보전, 육성 및 창출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책정, 녹지보전 대책사업, 도시 방재사업 기타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만 한다.

②시장은 전항의 시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민 및 사업자(이하「시민등」이라 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사면녹지보전에 관한 시민의식의 고양을 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시장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나 타(他)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사면녹지의 보전에 관한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 제 2 장 사면녹지의 보전

제 5 조 (구역의 지정) ①시장은 사면녹지로서 보전이 필요한 구역(당해 구역에 인접하거나 일체가 되어 보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구

역도 포함.)을 사면녹지보전구역(이하 「보전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먼저 가나자와시의 전통환경보존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관한 조례(1989년 조례 제49호)제18조에서 규정하는 가나자와시 도시경관심의회(이하 「도시경관심의회」라 함.)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③시장은 보전구역을 지정할 때에 그 내용 및 구역을 고시해야만 한다.

제 6 조 (사면녹지보전기준) ①시장은 보전구역에 사면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면녹지보전기준(이하 「보전기준」이라 함.)을 정하기로 한다.

②보전기준으로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 중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기로 한다.

- (1)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
-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건축물 등」이라 함.)의 규모, 위치, 색채, 의장 및 형태에 관한 사항
- (3) 동식물의 생식환경 및 생육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4) 붕괴방지 기타 도시방재상 필요한 사항
-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보전기준을 정할 때에 그 내용 및 기준을 고시해야만 한다.

④전조 제2항의 규정은 보전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 7 조 (행위의 신고) ①보전구역내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 (1) 택지조성, 토지개간(開墾), 기타 토지의 구획형질변경
- (2) 나무, 대나무의 채벌
- (3) 건축물등의 신축, 개축, 증축, 이전, 제거, 대규모적인 수리 또는 모양, 색채의 변경.
- (4) 토석류의 채취
- (5) 물건의 퇴적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해야만 하는 행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로써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부 록>

- (1) 도시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 제58조 2의 규정에 의한 건축 등의 신고
  - (2) 가나자와시에 있어서 건축환경의 보존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 (3) 가나자와시 고마치거리풍경 보존조례(1994년 조례 제1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 (4) 가나자와시 용수보존조례(1996년 조례 제7호) 제7조규정에 의한 신고
  - (5) 풍치지구 내에서의 건축 등의 규제에 관한 조례(1970년 이시가와(石川)현 조례 제21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 ③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 통상의 유지관리행위 또는 경미한 행위 중, 사면녹지보전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행위
- (2) 비상재해시에 응급조치로써 취해진 행위

제 8 조 (국가 등에 대한 특례) 국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요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신하여, 우선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협의해야만 한다.

제 9 조 (조언, 지도, 또는 권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고, 당해 신고에 관련된 행위가 보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사면녹지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조언, 지도, 또는 권고를 해야만 한다.

제10조 (보고 등)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언, 지도, 또는 권고를 받은 자는 당해 조언, 지도 또는 권고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에 따라 실시조사를 하도록 한다.

제11조 (협정의 체결) 일정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상호간에 당해 구역 사면녹지의 보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사면녹지보전협정의 인정) 시장은 전조의 협정으로, 그 내용이 사면녹지의 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을, 사면녹지보전협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 3 장 원조 및 매입

제13조 (전문가의 파견) 시장은 시민이 보전 구역 내에서 스스로 사면녹지를 보전하는 경우, 시민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면녹지보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의 원조) ①시장은 전조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보전구역내의 사면녹지 보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전구역 내에서의 녹화추진, 재해방지 기타 필요한 지도등의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원조를 할 수가 있다.

②시장은 시민에 의한 사면녹지보전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제15조(매입) 시장은 보전구역내의 사면녹지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구역내의 토지(당해 토지위에 있는 목죽(木竹)을 포함.)를 매입할 수 있다.

### 제 4 장 잡칙

제16조 (의견의 청취) 시장은 사면녹지의 보전 및 원조, 매수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경관심의회 또는 가나자와시 자연환경보전조례(1993년 조례 제1호)제6호에서 규정하는 가나자와시 자연환경보전심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문헌

- 변병설外, 친환경적 국토관리방안(환경부:2001)
- 홍준형, 환경법(박영사:2001)
- 오준근, 도시계획관련법제의 체계적 정비방안(한국법제연구원:2000)
- 이상문, 광역녹지축의 설정과 관리계획(환경부:2000)
- 새천년 새서울 가꾸기 : 2000 새서울 행동계획(Action Plan)(서울특별시:2000)
- James F.Berry & Mark S.Dennison, The Environmental Law and Compliance Handbook(McGraw-hill:2000)
- 丸田頼一, 都市綠化計劃論(東京都 丸善:1998)
- Richard L. Revesz, Foundations of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Oxford : 1997)
- Richard Burnett-Hall, Environmental Law (Sweet & Maxwell : 1995)
- 飯島伸子, 環境社會學 (有斐閣 : 1993)
- Jan G. Laitos & Joseph P. Tomai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Law (West Publishing Co. : 1992)